

전발연 2005-R-18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연구

2005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박재규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안완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애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자문 김선남 • 원광대학교 교수
 송경숙 • 전북성매매여성인권센터 소장
 정미례 •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조경욱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목적

- 성매매특별법 내용에 대한 성인 남성의 이해를 조사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홍보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인남성과 성매매 종사 여성에게 성매매의식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
- 성인 남성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및 활동내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남성 및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과 행위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의 분석틀 구성 및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 구성
- 전주, 익산, 군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500명을 면접 조사함
- 성인 남성의 표본선정은 지역별로 직업과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
- 전주, 익산, 군산 지역에서 성매매여성 120명 면접조사함
-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비롯하여 각종 주점과 안마시술소, 티켓다방, 증기탕 등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조사함
- 조사기간은 남성의 경우 2005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 동안 진행하였고,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3일간 진행
- 자료분석은 성인남성 502명과 성매매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편집과 코딩을 거쳐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성인 남성의 경우 20-50대에 걸쳐 전복인구 구성 비율과 비슷하게 조사
- 교육수준은 직업을 고려한 유의표집인 관계로 비교적 높은 편임
- 성인 남성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비슷하게 나타남
- 성인 남성의 기혼과 미혼의 비율은 66%와 28.5%를 차지하였고, 사별이나 이혼, 그리고 별거상태에 있는 남성이 5.4%를 차지함
-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32.6%로 다소 많았으며, 가족생활 평가에서 못산다고 평가한 사람은 10% 수준인데 비해 잘 사는 사람이 23.8%로 많음
- 성매매여성의 경우 33.3%가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며, 43.3%는 각종 주점에서 일하고, 10%는 티켓다방에서, 13.4%는 안마시술소 및 다방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성매매여성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다소 높은 편인데,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임
- 대부분이 미혼상태이며, 기혼이 14.2%, 사별이나 이혼상태가 6.7%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 47.4%로 높게 나타남
- 성매매여성의 평균소득은 314만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소비가 많아 실질적 소득은 많지 않은 편임

4.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성매매

- 성매매예방과 관련된 교육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최근 언론 홍보에 대한 접촉은 다소 있었음
- 성매매예방 관련 강연을 받은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는 젊은 연령층, 기능 생산직 종사자,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 종사자, 가정생활이 어려운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은 언론에서 보도된 성매매방지법 위반자 구속 소식을 제외하면 남성의 홍보활동 경험은 매우 제한적임
- 성매매단속이나 홍보활동이 중단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젊은 20-30대 남성과 미혼남성, 소득이 적은 남성이 많은 편임

5.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관련 채팅은 20% 수준으로 많지 않았으나, 여성노출이나 동영상 보거나 포르노사이트 접속의 경우는 1/2로 많았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젊은 남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 미혼남성, 기능생산직 및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많음
- 위성방송에서 여성노출장면을 보거나 성매매 홍보전단을 받았거나 동료나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듣거나 서로 이야기한 경우가 과반수로 많은 편임

6.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 분석

-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특별단속을 인식하고 있는 남성은 약 60% 수준을 차지한 반면 40% 수준은 모르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 성매매방지법이나 특별단속을 잘 모르는 경우는 30-40대, 교육수준이 낮고,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고, 자영업이나 기능생산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많은 편임
-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남성이 54%를 차지한 반면 반대는 20% 수준임
-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한 남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미혼남성이, 기능생산직과 자영업 종사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소득이 낮은 남성이 많은 편임

7.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

- 성매매집결지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하는 편이지만 성매매여성의 피해자 규정과 보호조치, 성매매알선 중개업자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남성이 각각 약 60%와 70%로 많은 편임
-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중에는 젊은 남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미혼남성이, 소득이 많은 남성, 자영업과 경영관리 판매서비스직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축소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은 14.0%로 적었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가족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또한 28%로 많지 않음.
- 반면 성매매방지법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었기에 성매매여성의 생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한 남성은 59%로 많았고, 성매매방지법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60%를 차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나 처벌강화 필요성을 인정한 남성이 77.7%와 63.4%로 많았음

8. 남성의 성매매의식과 행위 변화

- 성매매의식의 경우 지난 1년 사이에 약간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성매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남성이 많았지만, 아직도 성매매의 업무성에 대한 인식, 성매매의 접근성, 성매매의 자발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임
- 성매매행위 분석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이 45.4%를 차지하였으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1.3%로 감소하였음
- 성구매 장소 또한 변하고 있는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매매집결지 성구매가 60%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48.6%로 감소하였지만, 안마시술소의 경우는 20%에서 29%로 증가하였고, 특히 전화방이나 보도방, 숙박 시설이나 해외에서 성을 구매한 경우가 증가함
- 성구매 원인에서도 변화가 발견되고 있는데, 회식이나 친구와 어울리다가 성을 구매한 경우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반면에 성적 욕구 해소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성을 구매한 경우가 증가함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계속하는 사람 중에는 젊은 남성이, 종교가 없는 남성, 미혼상태의 남성, 기능생산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 성매매예방 홍보물을 보고 난 후 부정적 느낌을 받은 남성,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지 않은 남성, 성매매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그리고 성매매 유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성매매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나이가 많고 종교를 갖고 있는 남성, 기혼상태에 있는 남성, 성매매예방 홍보물을 보고 난 후 긍정적 느낌을 갖는 남성,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거나 혹은 성매매방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성매매 유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9.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언론매체, 함께 일하는 친구나 동료로부터 얻고 있으며, 성매매방지법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81.6%로 많았고, 정부의 특별단속에 대한 인식 또한 70%로 많음
- 성매매방지법이나 특별단속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아주 적거나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거나 기혼, 이혼 및 사별상태에 있는 여성, 그리고 노래방이나 주점,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음
- 성매매여성의 64.2%가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아주 낮거나 혹은 아주 높은, 미혼 여성, 소득이 많고,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음
- 성매매여성의 60% 정도가 성노동자 요구에 동의하고 있음

10. 여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인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고, 정부의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에 대하여 성매매여성은 잘 알고 있음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에 동의하는 여성이 58.4%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또한 많은 편임
- 정부의 성매매방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 시위에 나선 성매매업주나 여성을 지지하는 여성이 71.7%를 차지하였고,
-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에 동의하는 여성이 80%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와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비교적 많음

1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유입 당시 평균 연령이 23.4세이며 일부 여성은 10대 후반에 유입되었고, 성매매 종사 경력은 3.9년으로 짧았는데 주요 원인은 성매매가 젊은 여성의 유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경향은 특히 성매매집결지와 주점에서 높게 나타났고, 노래방의 경우 경력이 비교적 길었는데 결국 나이 많은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장소로 간주할 수 있음

- 현 업소에서 일한 경력은 평균 14개월로 짧았는데, 그 원인 또한 젊고 신규 성매매여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있기 때문임
- 성매매여성의 유입원인 분석에 의하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여성이 44.2%, 가출로 인한 생계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이 33.4%, 자신이 원하는 물건구입 및 지나친 소비에 따른 빚을 갚으려는 여성도 16.7% 차지

12.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 평가

- 성매매 중단이 가능한 여성은 23.3%인 반면 76.7%는 중단 의사가 없었고, 이들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고, 기혼상태이며, 안마시술소 및 주점이나 노래방,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음
-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 소득원이 없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가족부양 및 부채를 갚아야 하는 책무 때문으로 밝혀짐
- 현재 성매매를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 교육수준이 낮고,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이, 고소득의 여성이 많은 편임
- 향후 성매매 중단계획 분석에 의하면, 중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여성이 24.2%, 현재의 일을 계속하겠다는 여성이 30.8%, 현재 구상 중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중단하겠다는 여성이 45%를 차지하였고, 현재의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 생계를 담당하지 않은 여성,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 소득이 아주 많거나 혹은 아주 적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
- 여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사업은 아직 홍보되지 못한 상황이며, 사업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13. 지역사회자원 실태 및 활용방안

- 지역사회 행정조직 자원으로는 전라북도의 여성가족과를 비롯하여 성매매 업무 협의기구로서 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가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는 '전주시성매매방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지방 검찰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전라북도 교육청이 각각 성매매방지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시민사회조직 자원으로는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조직 내에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인 용감한 여성들, 성매매여성쉼터인 민들레, 여성 자활지원센터,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센터인 두드림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밖에 37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으며, 여성사회단체의 경우 또한 202개 단체에 44만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음

II. 정책건의

1.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한 성매매 홍보활동 강화

- 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 - 전북도청의 경우 유일하게 복지여성국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라북도 차원의 성매매 예방 사업을 구상하거나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위상이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 사회지도자의 성매매근절 운동 점화 - 전라북도 각 기관의 장이 참여하고 있는 수요회를 중심으로 추가로 정치지도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지도자의 성매매근절 선포식과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마다 실천함
-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활동 - 전북성매매여성인권센터를 기점으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릴레이식으로 홍보활동에 참여
- 성매매방지 홍보용 차량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 - 성매매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서 차량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도민에게 배포
-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일회성 홍보활동 및 단속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

2.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강화

- 학교와 직장에서 성매매예방 교육 강화 -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교육 활성화와 각 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성매매예방 및 피해관련 교육 도입
- 언론매체를 통한 성매매방지법 홍보활동 강화 - 정부의 성매매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직 많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성매매방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입찰 제한 -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과 함께 성매매근절을 위해서 성매매방지법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정부사업이나 물품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한
-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병행 -성매매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동시에 단순 성구매자의 경우 처벌보다 심화교육을 통해 상습적인 구매자가 되지 않도록 훈육

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

-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유예조치 검토 필요성 - 불법인 성매매가 성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지자체와 집결지 업주/여성이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추진함
- 성매매여성의 건강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사업 지속 - 성매매여성의 건강검진 의무화 폐지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성을 구매한 남성의 경우 또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 자활지원센터에 입소한 탈성매매여성에게 취업 및 창업 준비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룹 홈(Group home) 시설 확대 제공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3
제 2 절 연구의 목적	7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한계	8
제 2 장 성매매 관련 문헌검토	11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	13
1. 성매매방지법에 나타난 주요 개념 이해	13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14
제 2 절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 방향	17
1. 금지주의 시각	17
2. 규제주의 시각	19
3. 비범죄주의 시각	20
제 3 절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23
1. 여성주의(Feminism) 관점	23
2. 기능주의적 관점	27
3. 사회주의적 관점	28
4. 사회생물학적 관점	30
제 4 절 성매매여성 보호주의와 관련 요인 검토	31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권리 옹호 논쟁	31
2.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
제 5 절 한국사회 성매매 주요 유형별 특성	42
1. 전통형 성매매	42
2. 산업형 성매매	42
제 3 장 연구방법론	47
제 1 절 연구방법	49
1. 문헌연구	49
2. 실태조사	49
3. 분석방법	52
4. 자료수집 진행 절차	5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54
1.	연구의 범위	54
2.	연구의 주요 내용	54
제 4 장	성인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유인환경 노출 분석	57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9
1.	인구-사회적 특성	59
2.	경제적 특성	62
제 2 절	성매매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66
1.	성매매예방에 관한 교육 경험 분석	66
2.	성매매방지법 전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경험 분석	79
제 3 절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85
1.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85
2.	기타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98
제 5 장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111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113
1.	성매매예방 시행과 특별단속의 인식	113
2.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 분석	122
제 2 절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분석	127
1.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평가	127
2.	성매매방지법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135
3.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 및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	144
제 6 장	남성의 성매매 의식과 행위변화 분석	153
제 1 절	남성의 성매매 의식변화 분석	155
1.	성매매 인식에 대한 주요 차원 결정	155
2.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 변화	157
제 2 절	성인 남성의 성매매 행위 변화 분석	164
1.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행위 분석	164
2.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 분석	168
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변화에 관한 분석	173
4.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	181

제 7 장	성매매여성의 특성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183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일반적 특성	185
1.	성매매여성 조사지역 및 업종 분포	185
2.	성매매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	187
3.	성매매여성의 경제적 특성	189
4.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과 관련된 제반 특성	191
제 2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202
1.	성매매방지법의 인식 분석	202
2.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 분석	206
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지지 분석	210
4.	성매매여성의 성노동자 요구 분석	215
제 3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220
1.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해 분석	220
2.	성매매방지법의 효과 및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237
제 8 장	여성의 성매매 참여와 사회복귀 태도	247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249
1.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 분석	249
2.	성매매 종사 경력 분석	251
3.	성매매여성의 현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4
4.	여성의 성매매 유입 원인	258
제 2 절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262
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2
2.	성매매 지속 및 그 원인 분석	265
3.	성매매여성의 향후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69
4.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을 위한 예상 소득액 분석	273
5.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사업 평가	277
제 9 장	결론 : 연구결과의 요약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28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28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3
2.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285
3.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285
4.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 분석	287

5.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	288
6. 남성의 성매매의식 및 행위변화 분석	290
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293
8.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294
9.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296
10.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 평가	297
제 2 절 지역사회자원 실태와 활용방안	300
1. 지역사회 행정조직 자원	300
2. 지역사회 시민사회조직 자원	302
제 3 절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306
1.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통한 성매매 홍보활동 강화	306
2.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 강화	309
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	311

■ 참고문헌	313
--------------	-----

표 목 차

<표 2-1>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 분류	22
<표 3-1> 성인남성 조사대상 표본추출 방법	50
<표 3-2> 성매매여성 조사대상 표본 추출 방법	51
<표 3-3> 성인 남성의 성매매 태도, 의식 그리고 행위에 관한 조사내용	55
<표 3-4> 성매매여성 대상 조사 내용	56
<표 4-1>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59
<표 4-2> 응답자의 교육수준 분포	60
<표 4-3> 응답자의 종교 분포	61
<표 4-4> 응답자의 혼인상태 분포	61
<표 4-5> 응답자의 시민사회활동 내용 분석	62
<표 4-6> 응답자의 직업 분포	63
<표 4-7>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64
<표 4-8> 응답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	64
<표 4-9> 응답자의 배우자 취업 현황	65
<표 4-10> 성인 남성의 성매매 예방 교육 경험 분석	67
<표 4-1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강의 교육 관련성 분석	68
<표 4-12>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68
<표 4-13>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68
<표 4-14>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69
<표 4-15>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강의 관련성 분석	69
<표 4-16>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69
<표 4-17>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 수준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70
<표 4-18>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1
<표 4-19>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1
<표 4-20> 성인 남성의 종교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1
<표 4-21>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2
<표 4-22>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2
<표 4-23>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2
<표 4-24>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73
<표 4-25>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4
<표 4-26>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4
<표 4-27>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4

<표 4-28>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5
<표 4-29>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5
<표 4-30> 성인 남성의 소득수준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5
<표 4-31>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76
<표 4-3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7
<표 4-3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7
<표 4-3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7
<표 4-3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8
<표 4-3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8
<표 4-3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8
<표 4-3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79
<표 4-39> 성인 남성의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경험 분석	80
<표 4-40>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본 이후 느낌 분석	81
<표 4-4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1
<표 4-42>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2
<표 4-43>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2
<표 4-44>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3
<표 4-45>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3
<표 4-4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4
<표 4-47>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84
<표 4-48>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경험 분석	86
<표 4-49> 성인 남성의 연령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분석	87
<표 4-50>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분석	88
<표 4-51> 성인 남성의 종교와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88
<표 4-52>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89
<표 4-53> 성인 남성의 직업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89
<표 4-54> 성인 남성의 소득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90
<표 4-55>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 수준과 인터넷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차이분석	90
<표 4-56> 성인 남성의 연령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분석	91
<표 4-57>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1
<표 4-58> 응답자의 종교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2
<표 4-59>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3
<표 4-60> 응답자의 직업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3
<표 4-61> 응답자의 소득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3
<표 4-62>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94
<표 4-63>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채팅 대화 경험 관련성 분석	94
<표 4-64>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5
<표 4-65>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5

<표 4-66>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6
<표 4-67> 응답자의 직업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7
<표 4-68> 응답자의 소득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7
<표 4-69>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97
<표 4-70>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경험 분석	98
<표 4-7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위성 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관련성 분석	99
<표 4-72>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0
<표 4-73> 응답자의 종교와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0
<표 4-74>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1
<표 4-75> 응답자의 직업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1
<표 4-76> 응답자의 소득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2
<표 4-77>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102
<표 4-78> 성인남성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분석	103
<표 4-79>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4
<표 4-80>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4
<표 4-81>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4
<표 4-82> 응답자의 직업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5
<표 4-83> 응답자의 소득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5
<표 4-84>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105
<표 4-85> 성인 남성의 연령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6
<표 4-86>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7
<표 4-87> 응답자의 종교와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7
<표 4-88>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8
<표 4-89> 응답자의 직업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8
<표 4-90> 응답자의 소득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9
<표 4-91>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109
<표 5-1>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및 특별단속 이해 정도	114
<표 5-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5
<표 5-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5
<표 5-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5
<표 5-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6
<표 5-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6
<표 5-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7
<표 5-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117
<표 5-9>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18
<표 5-10>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19
<표 5-11>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19
<표 5-12>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20

<표 5-13>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21
<표 5-14>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21
<표 5-15>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121
<표 5-16>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123
<표 5-17>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분석	123
<표 5-18>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방지법지지 관련성	124
<표 5-19>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4
<표 5-20>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5
<표 5-21>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5
<표 5-22>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6
<표 5-23>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126
<표 5-24>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분석	128
<표 5-25>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29
<표 5-26>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29
<표 5-27>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29
<표 5-28>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30
<표 5-29>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31
<표 5-30>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31
<표 5-31>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131
<표 5-3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3
<표 5-3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3
<표 5-3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3
<표 5-3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4
<표 5-3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4
<표 5-3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134
<표 5-3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	135
<표 5-39>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136
<표 5-40>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7
<표 5-41>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7
<표 5-42> 성인 남성의 종교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8
<표 5-43>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9
<표 5-44>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9
<표 5-45>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39
<표 5-46>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140
<표 5-47>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1
<표 5-48>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1
<표 5-49>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1
<표 5-50>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2

<표 5-51>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3
<표 5-52>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3
<표 5-53>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143
<표 5-55>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와 근절 대책에 대한 평가	145
<표 5-56>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6
<표 5-57>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6
<표 5-58>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7
<표 5-59>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7
<표 5-60>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7
<표 5-61>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8
<표 5-62>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148
<표 5-63>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49
<표 5-64>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 단속 희망	150
<표 5-65>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0
<표 5-66>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0
<표 5-67>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1
<표 5-68>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2
<표 5-69>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152
<표 6-1> 성매매 의식 내용,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	156
<표 6-2>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정당성 의식 변화	157
<표 6-3>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성구매 정당성 의식 변화 분석	158
<표 6-4>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 의식 변화	159
<표 6-5>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여성 성구매 가능성 변화 분석	159
<표 6-6>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업무성 의식 변화	160
<표 6-7>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남성의 성구매 필요성 의식 변화 분석	161
<표 6-8>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접근 용이성 의식 변화	161
<표 6-9>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남성의 성구매 접근 용이성 변화 분석	162
<표 6-10>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매매 자발성 의식 변화	163
<표 6-11>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성매매 자발성 의식 변화 분석	163
<표 6-12>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경험 분석	164
<표 6-1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빈도 분석	165
<표 6-14>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장소 분석	166
<표 6-1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동기 분석	167
<표 6-16>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이후 느낌 분석	168
<표 6-17>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경험 분석	169
<표 6-18>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인 남성의 성구매 행위 변화 분석	170
<표 6-19>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장소 분석	171
<표 6-20>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동기 분석	172

<표 6-21> 남성의 개인적 특성과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175
<표 6-22> 남성의 경제적 특성과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176
<표 6-23> 남성의 성매매예방 사전 인지와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178
<표 6-24> 성매매방지법 인식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180
<표 6-2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빈도 분석	181
<표 7-1> 성매매여성의 조사지역 분포	186
<표 7-2> 성매매여성의 업종 분포	187
<표 7-3> 성매매여성의 연령 분포	187
<표 7-4>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188
<표 7-5> 성매매여성의 결혼지위	188
<표 7-6> 성매매여성의 가정생계 담당 실태	189
<표 7-7>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 분포	190
<표 7-8>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처 분석	191
<표 7-9>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2
<표 7-1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3
<표 7-11>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3
<표 7-12>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4
<표 7-1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194
<표 7-14>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195
<표 7-15>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195
<표 7-1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196
<표 7-1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196
<표 7-18>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197
<표 7-19>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197
<표 7-2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198
<표 7-21>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198
<표 7-22>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199
<표 7-2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200
<표 7-24>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200
<표 7-25>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201
<표 7-26>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분석	202
<표 7-2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203
<표 7-28>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4
<표 7-29>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4
<표 7-3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5
<표 7-31>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5
<표 7-32> 성매매여성의 일자리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206
<표 7-3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 특별 단속 인식 수준 분석	207

<표 7-34>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208
<표 7-35>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208
<표 7-36>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209
<표 7-37> 성매매여성의 일자리 업소와 성매매방지 특별 단속 인식 분석	210
<표 7-38>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0
<표 7-39>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1
<표 7-40>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2
<표 7-41>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3
<표 7-42>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3
<표 7-4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4
<표 7-44> 성매매방지법 정보습득 경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215
<표 7-45> 성매매여성의 성 노동자 요구 수준 분석	216
<표 7-4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217
<표 7-4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217
<표 7-4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218
<표 7-4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219
<표 7-50> 성매매여성의 성매매행위 처벌강화 내용 이해 분석	221
<표 7-5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221
<표 7-5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222
<표 7-5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223
<표 7-5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223
<표 7-55>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 이해	224
<표 7-5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225
<표 7-5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225
<표 7-5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226
<표 7-5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내용 분석	227
<표 7-60>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 불가 내용에 대한 이해 분석	228
<표 7-6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 불가 분석	229
<표 7-6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인지 분석	229
<표 7-6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분석	230
<표 7-6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사실인지 분석	230
<표 7-65>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 이해 : 선불금의 무효	231
<표 7-6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선불금 무효 내용 인지 분석	232
<표 7-6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232
<표 7-6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233
<표 7-6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233
<표 7-70>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 이해 :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234
<표 7-7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235

<표 7-7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235
<표 7-7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236
<표 7-7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236
<표 7-7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38
<표 7-7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38
<표 7-7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39
<표 7-7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40
<표 7-7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240
<표 7-80>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도 성매매 근절 불가 분석	241
<표 7-8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근절 불가 인식 관련성 분석	242
<표 7-8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근절 불가 인식 분석	242
<표 7-8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근절 불가인식 관련성 분석	243
<표 7-84> 성매매방지법의 준비부족이 성매매여성의 반대 시위 초래 분석	244
<표 7-85>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여성의 방지법 반대시위 분석	245
<표 7-86>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중점단속은 다른 지역의 성매매 활성화 기여	246
<표 7-8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 분석	246
<표 8-1> 성매매여성의 첫 성매매 유입 연령 분석	250
<표 8-2>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첫 성매매 유입 연령 분석	250
<표 8-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251
<표 8-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252
<표 8-5>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253
<표 8-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 종사 기간 관계 분석	253
<표 8-7> 성매매여성의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4
<표 8-8> 성매매여성의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5
<표 8-9>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6
<표 8-1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257
<표 8-11> 성매매여성의 이전 업소 및 현재 업소 분석	258
<표 8-12>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참여 원인 분석	259
<표 8-1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260
<표 8-14>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261
<표 8-15>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261
<표 8-16>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가능성	262
<표 8-17>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3
<표 8-18>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3
<표 8-19>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4
<표 8-20>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264
<표 8-2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5
<표 8-22>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지속 원인 관계 분석	266

<표 8-23>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7
<표 8-24>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7
<표 8-25>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8
<표 8-2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269
<표 8-2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0
<표 8-28>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1
<표 8-29>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업소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1
<표 8-3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2
<표 8-31>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273
<표 8-32> 성매매여성의 직업 전환 시 소득 보장 요구 금액 분석	274
<표 8-3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전직시 소득보장 요구 금액 분석	275
<표 8-34>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전직시 소득보장 금액 분석	275
<표 8-35>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전직시 소득보장 금액 분석	276
<표 8-36> 성매매여성의 여성가족부 여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사업 인식	277
<표 8-3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인식 관계 분석	278
<표 8-38> 성매매여성의 가족여성부 여성매매여성 사회복귀 프로그램 평가	279
<표 8-3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평가 관계 분석	279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그 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한국사회의 성문화 및 성산업과 관련된 무수한 담론과 성매매를 둘러싼 찬반 진영 사이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시켰다. 특히, 성문화 담론의 경우는 성매매에 따른 사회문제, 성의 사물화, 인간존중의 파괴, 성매매 현상의 사회적 필요악 혹은 경제발전 기여,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풍선효과’, 그리고 공창제의 도입 등에 집중되었다(변화순 외, 2004; 이기숙, 2005; 한상희, 2005).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서 표출된 사회적 갈등 현상은 성매매방지법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려는 성매매업주와 성매매여성이 중심이 된 ‘성 노동자’ 권리 요구와 그 요구를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공권력 및 성매매 금지 및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사이에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송경숙, 2004; 박민, 2004). 이처럼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과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까지 성매매 관련 논의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 제정과 그에 필요한 논리와 정당성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여성문제 전문가와 여성시민단체는 성매매 실태를 비롯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고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 관련자 및 매수자 처벌강화,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임을 강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실태와 인권유린 현상에 대한 연구는 성매매종사 여성의 규모, 유입경로 및 발생원인, 성매매 종사자의 일상생활과 인권유린 현상 등을 강조하였다. 즉, 이들 연구는 성매매 여성의 경우 사이버 문화의 유혹이나 가출, 친구 알선, 그리고 인신매매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매매에 한번 빠져든 여성의 경우 성매매 자본권력에 의한 예속화 및 노예화로 인해 자율적인 사회복귀가 어렵고, 비록 성매매구조로부터 벗어난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회복귀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김현선, 2002; 박영란, 2004; 변화순, 2002; 2004).

다른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성구매 행위자의 처벌 강화에 관한 연구는 성매매 발생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실태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성매매에 관련된 중간업주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성시민단체는 성매매 행위를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였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북여성단체연합, 2002;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 9월과 2002년 1월에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북동 성매매 업소 화재와 그에 따른 성매매 여성의 죽음, 이들이 생전에 기록으로 남긴 한 맺힌 절규는 그 동안 여성단체가 주장했던 성매매 현장의 처절한 착취구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현상 표출은 결국 여성단체가 주장해 왔던 ‘새로운’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사실상 1961년 정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긴 하였지만 경제발전과정에서 오히려 성산업의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혹은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윤락행위방지법이 더 이상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여성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발생한 성매매 업소 화재와 그에 따른 성매매여성의 희생과 인권유린은 강력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여성단체 또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여성단체는 또한 성매매집결지에 상담소를 개설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업무와 탈성매매 지원활동을 전개하였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도 축적하였다(전북성매매여성인권센터, 2002).

성매매여성의 희생과 여성단체의 노력,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여성단체와 학계, 정부의 노력에 의해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6개월 후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매매특별법 혹은 성매매방지법으로 치칭되는 이들 법률의 제정은 성매매여성의 희생과 여성시민단체가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의 성노예화 혹은 인권유린 참상에 대한 폭로는 법률

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폭제가 되었고, 성매매 여성의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성매매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여성의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정부 책임을 새롭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한국사회 성매매역사를 새롭게 다시 써야 하는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공개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던 공간(성매매집결지)이 축소·폐쇄되거나 혹은 그 지역의 성매매 종사 여성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즉, 정부의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공연하게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던 성매매집결지의 업소와 종사자가 각각 36.2%와 50.9% 줄어들어 성산업 규모가 축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여성부, 2005). 또한 정부는 인권유린 형태의 성매매알선이나 청소년 성매매 그리고 변형된 성매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사회복지 사업이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아직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부에 의하면, 탈성매매 여성 가운데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혹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기업의 접대문화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공공기업은 클럽카드(법인카드의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등의 향락업소 사용 승인거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런 변화는 일반 대기업으로 확산되어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여성부, 2005; 이기숙, 2005).

이상과 같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성매매방지법이 담고 있는 몇 가지 적극적인 조치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성매매처벌법은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혹은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크게 강화시켰으며, 성매매 관련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4; 박재규, 2004). 즉,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윤락행위방지법과 달리 ‘성’을 둘러싼 판매와 구매행위를 동시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과 성 구매자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여성부, 2005). 성매매방지법은 또한 성매매를 개인

의 윤리적 타락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의 전환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피해자 개념 도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 마련에 기여하였다(이기숙, 2005).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사회적 인식을 크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법 시행을 위한 사전홍보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준비도 철저하지 못한 까닭에 시행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설이 미흡하여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과거 공개적인 성매매 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어 기존 성매매가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성매매 행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성매매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단속정책은 성매매업주와 여성의 조직적인 저항을 유발시켜 새로운 사회갈등을 낳고 있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집행되고 있는 단속 정책은 성매매 집결지의 위축 및 축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반면 산업형 성매매업소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를 양산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초래하고 있다(김은경, 2005; 윤덕경, 2005; 조진경, 2005; 정경숙, 2005).¹⁾ 더욱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업주와 중간관리자의 통제 및 예측력은 아직도 성매매 탈출 여성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²⁾

1) 성매매집결지를 빠져나온 여성 종사자 상당수가 티켓다방, 단란주점, 출장마시지, 이발소, 인터넷 등과 같이 은밀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여업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음성적인 성매매의 경우 건강검진 등 당국의 최소한의 관리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전북중앙일보, 2005. 9. 5).

2) 예를 들면, 성매매업주들은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연락처 등이 기록된 신상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성매매여성들은 해당 업소에서 탈출한다고 할지라도 성매매업주 및 소개업자의 추적과 협박 때문에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매매업주들은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와 컴퓨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피해여성들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송경숙, 2004; 정경숙, 2005).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성매매방지법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과연 우리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이나 행위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성매매 수요를 단절시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업주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에 저항하는 한편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성매매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방지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만연함에 따른 사회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성매매에 관한 의식변화 및 성매매 수요와 공급을 근절시키는데 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와 자활사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는데 성매매방지법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 성매매 관련 의식이나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경험적 조사 연구가 부재한 까닭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일반 남성과 성매매종사 여성의 경우 성매매 관련 의식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분석 및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매매특별법 내용에 대한 성인 남성의 이해를 조사하며,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홍보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둘째,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인남성과 성매매 종사 여성에게 성매매의식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무엇인가 대한 검토

셋째, 성인 남성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자원의 유형 및 활동내용에 대한 조사와 분석, 실제 성인과 성매매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분석,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네트워크를 위한 전략 모색

넷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남성 및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의식개선과 행위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한계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 이후 성인 남성과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의식과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역사회자원의 경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며, 그리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의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 구성 차원에서 성매매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함께 한국사회 성매매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각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간략하게 검토하며,

제3장에서는 연구의 방법론으로 성인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표본 추출, 자료수집, 그리고 연구내용 등을 소개하며,

제4장에서는 전북지역 성인 남성의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성인 남성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하여 성매매예방 교육이나 성매매 유인 환경 노출 실태를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보다 더 받았거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전북지역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을 비롯하여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 및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며,

제6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남성의 성매매의식이나 성매매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며,

제7장에서는 전북지역 성매매 종사 여성의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한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이해 등을 분석하며,

제8장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매매유입 경로 및 원인, 성매매업소 종사기간, 그리고 탈성매매 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건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성매매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자원 내용을 검토한 다음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성매매의식 개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전북지역 남성과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의식이나

행위 등을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 첫 번째 한계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어 성인 남성의 경우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밝히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실태가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료수집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일차적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 때문에 익명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매매경험을 밝히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 연구결과가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불법성 때문에 더욱 더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특정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과장하는 인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제 2 장

성매매 관련 문헌검토

-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
- 제 2 절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 방향
- 제 3 절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제 4 절 성매매여성 보호주의와 관련 요인 검토
- 제 5 절 한국사회 성매매 주요 유형별 특성

제 2 장 성매매 관련 문헌검토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는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196)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212호), 이른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그해 9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성매매역사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성매매 관련 접근이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기에 앞서 성매매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종합·규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방지법에 나타난 주요 개념 이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³⁾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위에서 규정한 지배·관리 하에 둔 것

(2) (1)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1)(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1)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 받는 행위.

(4) (1) 내지 (3)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끝으로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2)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2.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비교할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첫 번째 특성은 성매매 알선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처벌수준 또한 크게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윤락행위란 성매매여성의 경우 개인적 타락이라 개인적 문제에서 성매

으로 본다. ①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②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매가 기인된 것으로 이해한 반면, 성매매는 개인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행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크게 강화시켰다. 예를 들면, 성매매 강요행위의 경우 윤락행위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벌금 1,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서 징역과 벌금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윤락행위 여성은 처벌대상이지 결코 보호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국가에 묻고 있다. 예를 들면, 위계나 위력,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나 고용 등으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책무도 함께 갖고 있음을 규정하였다.

세 번째 특성은 불법적인 원인 채권의 무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불법원인 발생 채권임을 알면서 양수 인수한 경우 포함)라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성매매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강요하였거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사에 참작할 것을 의무화시켰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성매매여성 조사 시 선불금 등은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 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 특성은 금지행위를 대폭 확대시켰다는 사실이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모집, 직업소개, 알선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시켰다. 특히, 윤락행위방지법에서는 다루지 않은 광고 제작이나 공급과 광고물 배포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벌금을, 후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다섯 번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즉, 외국인 여성의 경우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을 경우(신고, 고소, 고발 포함)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외국인 여성에게 지원시

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혹은 배상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 번째 성매매 관련 범죄수익의 몰수와 보상금 지급제도의 도입이다. 즉, 성매매 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관련 광고행위 등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관련 주요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혹은 고발한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아울러 두고 있다.

제 2 절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 방향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한국사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정책 성격상 ‘금지주의’로 간주할 수 있다. 비록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제정된 『윤락해위방지법』이 금지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만이 오히려 부각되었다. 즉, 성매매여성의 처벌만이 있고 성구매자 및 성매매 알선 업주 등에 대한 처벌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면서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주 혹은 성매매자본에 함몰되어 심각한 인권탄압과 착취를 겪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성매매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23일부터 1달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성매매를 금지시켰고, 현재도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국과 같이 금지주의 시각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성매매를 일정 지역에서 금지하지 않는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 국가는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범죄화를 막자는 의도의 ‘폐지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비록 일부 국가의 경우 이처럼 규제주의 및 폐지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을지라도 성매매의 착취 고리에 관여하고 있는 중간 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각국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는 금지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강제결혼, 강제와 기만에 의한 인신매매, 신부를 통신으로 판매하는 관행과 포주들의 행위에 대해 특정 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한 인권유린을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성매매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금지주의, 규제주의, 그리고 폐지주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금지주의 시각

금지주의 정책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성을 사고파는 사람,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또는 일부 금지하는 입

장이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미국의 일부 주,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이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대만 등 일부를 제외하면 많지 않은 실정이다(변화순 외, 2001).

한국사회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경우 성매매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제정되었지만 성을 사고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벌금형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업주에 대한 구속정도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즉, 비록 한국사회가 윤락행위방지법을 통해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을 추구하였지만,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성매매자본에 의한 성매매여성의 착취구조만 악화시켜 왔다. 특히 근산지역 성매매업소의 화재사건은 그 동안 성매매여성이 겪은 성매매자본의 착취와 인권유린 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였고,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성매매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그 결과 2004년 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사회는 성매매방지법을 갖게 됨으로써 강력한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의 타이베이 역시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타이베이의 경우 1994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에서 섹스산업, 섹스관광지의 대명사로 인식되던 곳이었는데 1995년부터 성매매 산업 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대만 타이베이는 성매매 금지주의를 제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장필화 외, 2001)

제1단계 작업은 성매매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성매매여성과 경찰 및 관련 공무원의 유착관계의 단절이었다. 즉, 경찰과 시공무원에게 책임지역을 할당할 다음 지역 내 있는 불법 퇴폐, 유흥업소를 찾아내 보고하도록 하며, 퇴폐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의 명단을 파악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내 불법 퇴폐업소를 누락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무책하면 상급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강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제2단계 작업은 1달간 유예 기간을 준 다음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였다.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주택가 주변의 업소를 적발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적으로 그 조치를 상업지역으로 확대시켰다. 적발된 업소의 단전단수 조치를 비롯하여 단전단수 기간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공사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성매매근절을 위해 사창과 공창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1997년부터 사창가에도 적용하였고, 업주에 대해서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적용하였다. 시민의 경우 퇴폐업소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1999년 3월 합법적 공창제도를 향후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지난 2001년 3월 27일 이후부터 공창과 사창 지역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타이베이도 공창 폐지와 함께 성매매여성의 전업을 위한 대안 서비스로서 직업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드 발급, 가족부양보조, 취업 및 창업 등을 지원하였다.

일본은 전쟁 직후 형성된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성매매방지 목적에서 1956년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성구매자 처벌규정이 없고 성매매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풍속영업 규제법으로 일정구역에서 성매매를 인정 허용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매매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환경에서 1999년 ‘청소년 성매매 포르노 처벌법’이 제정되어 18세 이하의 성매매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법집행을 강행하고자 조례를 규정하는 등 성매매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은 반면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 착취자만을 처벌하는 성구매금지법을 1991년 제정하였다(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단 성을 적극적으로 파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처벌을 하며, 이것은 산업형 매매춘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성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변화순 외, 2001).

2. 규제주의 시각

규제주의 정책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성매매여성만이 영업을 하게하며, 공인 성매매 장소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에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변화순 외, 2001). 그러나 규제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도 노상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규제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서독, 아일랜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성매매행위를 당국이 지정한 한정된 장소에

서 하도록 용인하고, 의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거나 공공연하게 눈에 띄지 않은 집안에서만 허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각 시의 자격증법에 성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등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일정한 공간에서 한 명 이상의 성판매자가 장사를 하는 행위, 호객행위 등은 불법이며, 거리와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불법이다. 남성 고객은 성적 서비스를 살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체포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강요한 사람, 또한 그 이익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최소 10년에서 최고 14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는 성구매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운영하는 특별수사대의 성매매 혐의 차량에 사진을 발송하거나 성구매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남성 구매자를 기소하기보다는 교육시킴으로써 수요자의 감소 효과를 추구하는 존 스쿨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장필화 외, 2001).

스위스의 규제주의 정책은 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부과세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거리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동일한 구역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쾰른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성판매자들을 위해 이동식 은신처(Flora Dora)를 제공하며, 폭력적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찰이 체포하도록 돕고 콘돔이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비범죄주의 시각

비범죄주의 정책은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거나 혹은 일정한 형식으로 규제하던 것을 폐지하는 경우이다. 특히, 비범죄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특별한 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거래형태로 용인하지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범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학교, 병원 등의 특정 지역, 특정시간 특정유형은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어 대체적

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은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호주의 킴스랜드주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비범죄주의 국가로서 15세 이하의 판매자에게서 성을 산 구매자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사회에 편입시키고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은 거리에서 성매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별 지역에서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정차를 금지하게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성매매방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비범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한정시켜 처벌하지 않을 뿐, 거리 성매매, 호객행위, 성매매 광고, 1명 이상의 여성이 모여 일하는 장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또한 비범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포주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에 의해 성을 파는 사람에게 법적 보조가 무료로 제공되며, 무료보상 소송도 가능하다. 비록 노르웨이가 비범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평등성을 해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간주하여 여성매매와 성매매에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금지주의, 규제주의, 비범죄주의 등 성매매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는 각기 독특한 방법을 통해 성매매를 축소내지 혹은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 분류

분 류	주요 특성	세부 내용	해당 국가	비고
금지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성구매만 금지	스웨덴	
		성판매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구매와 판매 모두 금지	한국, 중국, 태국, 미국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규제주의	일정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갖고, 활동지역을 규제함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	네덜란드	특정지역, 특정시간 불법간주, 캐나다 거리 성매매 처벌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지역 허용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캐나다, 미국 네바다주	
비범죄주의	성매매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규제도 합법적 인정도 없음)	주로 호객,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함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퀸즐랜드 주	특정지역, 특정시간 불법간주, 세금징수

자료 : 장필화 외(2001).

제 3 절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검토

세계 각국은 자국이 처한 입장에서 성매매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정책만큼이나 성매매를 이해하는 이론적 입장도 다양한 편이다. 성매매와 관련된 주요 논의로는 여성주의, 기능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생물학적인 설명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 논의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였다.⁴⁾

1. 여성주의(Feminism) 관점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견해는 성매매 여성을 “정서적인”성욕을 가진 남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착취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페미니스트들 역시 성매매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각과 비스한 편이다. 즉,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마돈나와 창녀 사이에 그어진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 사이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사실상 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아내가 경제적 부양을 위해 남편에게 의존하는 결혼도 일종의 성매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희생자로 보면서, 전통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거나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에서도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도덕적 여성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등이 있다(조국, 2004).

4) 이하에서 제시하는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시각은 변화순·황정임에 의한 ‘98연구보고서 240-17, 『산업형 매매출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8), pp. 24-36과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조국 편,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서울: 사람과 생각, 2004), pp. 14-21에 근거하고 있다.

1) 도덕적 여성주의 : 보수적·도덕주의적 입장

도덕적 여성해방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란 강요된 것이건 자발적인 것이건 간에 비도덕적인 것이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⁵⁾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지배적 이해방식인 “보수적·도덕주의적 접근(conservative moral approach)”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도덕, 가족, 사회안전 등에 대한 전통적·보수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이를 기초로 성병 파급이나 각종 범죄가 확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은 도덕의 타락을 초래하고, 가정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도덕주의적 접근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없지만, 과거 70-80년대 우리 사회의 성매매 반대운동에서도 이런 견해가 강력하게 전제된 바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매매 반대 여성운동가, 특히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한 경우의 관념이나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관념 속에서는 이러한 도덕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 노동선택으로서 성매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모든 인간은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이며,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전통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성매매를 파악한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적 시각에 의하면 돈을 위한 성매매가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성매매는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러한 시각도 기본적으로는 강요된 성매매를 반대하는 한편 한 개인이 돈과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몸을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

5) 이러한 입장은 법철학적으로는 (형)법의 도덕 형성력을 강조하는 “법도덕주의(legal moralism)”와 관련되어 있다. 법도덕주의의 기본 사고에 대해서는 Patrick Devlin, *The Enforcement of Morals* 4-17(1965) 참조.

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선택을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멸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reemanm 1989-90).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에 대한 보수적·도덕주의적 시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낙인을 제거하고 성매매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성매매는 여성 비하나 남성의 여성지배의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고 경제적 독립의 길을 열어주는 여성해방주의적 시도인 것이다. 즉 여성의 성과 몸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성매매를 통하여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성에 대한 표현을 제약하고 있는 사회적 장벽을 깨뜨리고 자신의 실체를 반영하는 자아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홍실(The Red Thread, De Rode Draad)”이 있는데, 이는 1985년 네덜란드에서 조직된 전·현직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으로 『국제성매매자권리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 Rights)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① 성매매는 노동이며, ②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야 하며, ③ 여성의 선택을 최대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④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산물로서 성매매

성매매를 ‘선택’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여성주의는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파악한다. 즉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구조 그 자체가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경제적 지위에 위치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부장제도는 여성의 노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노동을 노동으로 인지하지 않거나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한 결과로서 성매매 제도가 만들어지고, 빈곤한 여성의 경우 성매매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론적으로 볼 때 성매매는 다른 형태의 노동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여성이 없다면 성매매 여성도 없을 것이라고 보며, 바로 돈 때문에 빈곤한 여성은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점을 강조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실업, 차별, 저임금 등이 여성으로 하여금

가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성매매로 내몰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성은 대부분의 여성이 팔아야 하는 상품이고, 성매매는 결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매매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것은 여성을 성매매로 내몰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부장제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면서 여성의 노동을 이용하는 정부는 최대의 포주이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주의 단체인 『영국성매매자단체』(English Collective of Prostitutes, ECP)는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노동기회와 사회복지의 증대, 여성 임금의 증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급진적 여성주의 :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급진적 여성주의는 성매매를 남성지배가 관철되는 비대칭적 관습으로 파악하는 성향이 있어 성매매에서의 선택이나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성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는 성의 상품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남성이 여성의 성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보고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는 관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이런 시각에서 심지어 급진적 여성해방주의는 성매매란 강간, 가정폭력,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이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한다. 특히 이들은 남녀 사이의 성적 불평등에 따라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복종이 제도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매매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남성지배와 여성의 대상화(objectific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Freeman, 1989-1990; Thompson, 1990).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성매매 과정에서 성구매 남성이 사는 것은 단지 고립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여성 그 자체, 여성의 성적 자아이기며, 성매매는 결국 “성노예제”라는 것이다. 또한 “성교를 통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성적 착취”인 것이다.

이러한 성매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된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WHISPER(Women Hurt in the Systems of Prostitution Engaged in Revolt)가 있다. 특히, WHISPER는 성매매는 강제-공포, 폭력, 인종주의, 빈곤-의 연속체 상에서 구축된 남성 지배체제 하에서 강요되는 성적 학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성에게만 차별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착취와 폭력의 체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모든 법률을 철폐하고, 포주와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2.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생물학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 성기능(생식)에 의거한 양성 사이의 노동분업이 다른 사회적 기능에까지 확대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정신생활상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애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전자가 여성의 것으로 그리고 후자는 남성의 것으로 인식되었다(Gane, 1983; Truong, 1990, 재인용).

기능주의자들에게 있어 생물학적 환원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성적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덧붙여 인간의 이성적 행위는 사회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 안에 존재하는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Durkheim, 1951).

인간의 성행동에 관한 기능주의의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명제는 첫째, 사회생물학자가 규정한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생물학적인 신체의 구조에 의해서 수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 사회적 영역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적이며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태어났지만,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집합의식’이 인간의 성충동을 규제하고 일정한 제도에 끼워 넣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면, 섹스상태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상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리노프스키는 원시사회의 연구를 통해서 섹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물학적 욕구로서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이므로 그것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방향잡기 위해서는 강력

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성을 규제하는 수단이 집합의식 혹은 문화이다 (Malinowski, 1932).

성매매에 관한 기능주의 연구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제도가 어떠한 점에서든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혼은 혼인의 준비로 인해서 기능적이며, 성매매는 결혼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이상한 욕망의 해소, 혹은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생물적 충동의 해소라는 점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사회의 각종 성과 관련된 제도(결혼, 구혼, 성매매)와의 기능상의 관계, 또는 일부일처제외의 성의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결과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동은 병리학과 성적 이탈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가늠된다.

페미니스트들은 기능주의자의 성매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Truong, 1990). 첫째, 성별역할과 생물학적인 구조와의 관계성에 관한 진화론적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의 사회적 기능을, 오로지 생물학적인 욕구와 도덕의 억압적인 기능으로 설명함으로써 성매매제도가 지니는 성간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능주의의 성별역할론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서구의 산업화사회에 있어서의 중산계급을 기반으로 한 무역사적이고 특정계급과 문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기능주의자는 여성의 정서적인 역할의 연장 선상에서 성매매를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정서적 역할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 사회주의적 관점

엥겔스(Engels, 1981)에 의하면, 일부일처제는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을 뿐 남성에게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성에 이중적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 즉, 성은 자손의 번식과 사유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여성의 종속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성매매를 노동의 사회적 분업과 이것이 누적됨으로써 재산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들에서 이해하고 있다.

일부일처제는 여성을 재생산자의 위치로 떨어뜨림으로써, 여자의 일을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을 보살피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남녀사이의 불균형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을 소유물과 교환하는 시스템이 발생하였다. 즉, 여성은 임금노동자처럼 자신의 신체를 팔지 않고, 결혼을 통해 영구의 노예상태로 남성에게 자신의 육체를 팔아 넘긴다는 점에서 성매매와 차이가 있다. 게다가, 부르주아의 남성에 대한 성적행동에 관한 사회적 규범은 느슨하고, 또한 그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섹스를 돈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부터도 이익을 얻는다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는 창조성과 자유와 행복을 인간해방의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는데 이들은 종교적 의미에 입각한 사랑과 동등한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성매매는 '사랑에 의한 축복과 신성함이 없는 섹스'이며 사랑이 없는 섹스는 악덕이고, 따라서 쾌락과 창조성이 없는 착취적인 노동관계도 또한 악이라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룸펜프롤레타리아트',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계급으로서 범주화한 사회주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성매매 여성은 궁핍, 빈곤, 그리고 자본제적 관계에서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낙인화하고, 이를 범죄시하는 도덕주의적 입장, 둘째,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생물학적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의 장점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밝히려고 하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성행위에 관한 사회적 규칙을 재산관계의 탓으로 돌림에 의해서, 그것들과 생물학적인 섹스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르주아와 노동자계급을 불문하고 성생활의 문제를 부르주아의 문제라고 보는데 있다. 둘째, 생산성과 생산노동을 협회의 개념으로 이해하므로 여성이 수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즉 생물학적인 재생산, 가사노동 및 정신면의 양육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Truong, 1990).

여성해방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의 문제점을 인간의 성적 욕구를 계급에 의거하는 욕구의 표현으로 왜곡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부르주아의 남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성행위는 재산제와 남자의 성적충동사이의 긴장상태의 결과라고 간주하는데 반해 노동자계급의 성적방종의 소외의 결과로 본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재생산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를 사회적인 억압과 투쟁의 범위 내에 머물게 하는 앵겔스의 개념은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용하고 있다.

4. 사회생물학적 관점

사회생물학은 다윈에 의해서 발달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려는 접근이다. 즉, 생물학상의 기능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연결시켜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인 사회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때문에 사회생물학은 사회다윈니즘이라고 부르고 있다. 19세기 초에 시작된 이 학설은 생물학적인 기능의 차이에 의해서 여자는 가정에서 자식들을 기르고, 남자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와 ‘적응’의 개념에 기초를 둔 사회생물학은 여성은 남성보다 지능이 낮으며 사회적으로 덜 진화했다는 것이다(Truong, 1990).

사회생물학은 성매매를 여성의 입장에서는 범죄로 남성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성행동의 하나로 설명한다. 전자는 성매매를 ‘자기의 육체를 파는 도덕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로 여기는 반면 후자는 성매매는 ‘남자의 성충동에 응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라고 주장한다.

첫째, 범죄학에서 볼 때 에리스(1927)는 체포된 성매매 여성들의 손의 형태나, 턱, 머리의 크기 등의 신체적 특징을 조사했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체질이 생물학적으로 퇴화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성의 대상으로서 이용하는 비도덕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Truong, 1990, 재인용). 그는 경찰에 잡힌 성매매 여성의 가계를 관찰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성매매 여성이었으므로 성매매에는 세습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여성은 성행동에 수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성교가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임신, 육아, 수유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제한되며, 남성은 다수의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 지배적인 역할이 더 한층 강해진다. 남자는 모든 여자에게 흥미를 보이며 가능한 한 여자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만, 여자는 자기를 임신시킨 남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있고, 자신과 자식을 남자가 부양해 주도록 성교를 허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입장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복잡한 사회적, 생물학적관계는 남자의 성충동에 의해 이뤄지고, 인체를 정태적으로 받아들이며, 여성을 남성의 유

혹자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성적관계를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환원하는 것은 남자의 성충동에 바탕을 둔 일부다처제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또한 여자는 남자에게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한계를 보인다.

이미 일부다처, 혹은 복수의 배우자를 가지는 사회적 시스템은 생물학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의 제반규제와 일부다처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일환이고, 가부장적 사회제도의 산물이라는 상황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여성의 몸과 직접 관계된 일이라고 간주한다면 다른 종류의 성매매, 예를 들면 동성애 성매매나 유아 성매매 등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여성성 특유의 문제로 간주되어 사회 문제로 확대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사회관행을 상당히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평이한 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합리화될 위험성이 크다. 이것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돈을 가진 노인 남자들이 처녀를 사거나, 또한 성매매가 강간사건을 줄인다고 하는 이론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사회생물학은 그것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억압과 착취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 4 절 성매매여성 보호주의와 관련 요인 검토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권리 옹호 논쟁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Pro-prostitutionist)은 우선 성매매라는 개념보다는 성 노동(sex work), 성 노동자(sex worker)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덜 낙인화하며, 성과 화폐를 교환하는 노동의 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성매매는 짧은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보수를 주며, 작업환경에 대해 상당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어떤 직업에 비해 조건이 좋다고 한다. 여성들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할 수 있다는 다른 유형의 노동보다 더 좋은 거래 일 뿐만 아니라 성매

매 여성이 아내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결혼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다.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가 일종의 성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진정으로 남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 고객들의 필요에 민감하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여성의 권리조직인 COYOTE(Call Off Tired Ethics)에서는 성매매는 혼외 성관계, 익명적 성, 여가적 성, 그리고 성으로 느끼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또한 여성들이 한명의 파트너만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성의 산업화는 ‘인간의 자아로부터 빼낸 상품을 제작,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상품-섹스-의 생산이며, (원래 섹스화되거나 매매되지 않는 자아를) 시장교환의 목적으로 바꾸어졌다. 성의 산업화는 대량상품의 생산이다’라는 특징 묘사는 성의 착취 양식을 소외이론과 관련시킨 것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매매를 찬성하는 운동진영이 주장하는 이론은 남성지배적 사회구조에서 손님(남자)은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자로서 표현되고, 그들도 또한 억압적인 성도덕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성관련 업자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섹스자본가이고, ‘화이트칼라 유객꾼’이라 비난한다(Jaget, 1980; James, 1983; 제1회 세계매춘여성회의, 1985, 재인용; 제2회 세계매춘여성회의, 1986; Truong, 1990, 재인용). 이렇게 하여, 그들의 목표는 남자의 성적욕망을 상품화 하는 자본가와 국가에 의한 경제적 착취로 옮겨진다.

남성적으로 왜곡된 사고와 행동을 극복할 것을 지향하는 반성매매 운동의 핵심은 성매매란 남자의 성욕충족을 위한 악덕의 산물이고, 여자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여성운동이 성매매 여성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의 정절과 일탈로 보는 대립적 관점을 없애고 싶다는 바람에서 나왔다. 그러나 성매매의 현실은 당초, 생각되어지고 있었던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여성운동이 억압받는 성매매 여성을 인식한 한편, 자기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성매매 여성 사이에 틈을 만든 것이다.

2.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문제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 모두가 고려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 요인을 성매매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⁶⁾

1) 사회-문화적 요인

성매매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가부장제적 성문화, 남성놀이문화, 과소비향락문화, 성상품화와 성개방화, 기업의 절대관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가부장제적 성문화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통제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가부장제⁷⁾에서 일부일처제를 발전시켜 여성의 성을 규제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특히, 가부장제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된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부과되는 성역할과 이를 근거로 형성되는 성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성행위의 패턴과 속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변화순·황정임, 1998). 남녀가 유아시절부터 내면화되는 성역할과 성적 정체성의 차이는 향후 사회와 가정에서의 각기 차별화된 역할로 이분화시키고, 여성의 모성역할을 중시하여 여성의 성이 전적으로 생식기능과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남성의 역할과 남성성은 적극적, 명령적, 공격적인 반면, 여성의 역할과 여성성은 소극적, 수동적, 순종적, 방어적이라는 이분법적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남성의 성본능이 지배, 공격, 정복, 폭력 등의 행위를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함으로써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게 하였다. 심지어 이러한 주장의 핵심적인 학자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여성을 남성의 성기를 갖지 못한 불완전한 성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여성에게는 근본적으로 남근 선망의 성심리의 특성이 잠재한다는 이론을 주

6) 이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합적 분석·논의의 준거는 변화순·황정임에 의한 '98연구보고서 240-17,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8), pp. 31-106과 pp. 223-236에 근거하고 있다.

7) 가부장이란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의 일컬으며, 가부장제란 가장의 가족성원에 대한 지배를 지지하는 체계를 뜻한다. 이러한 지배는 구체적으로 물질 기반을 지닌 성별분업의 생산과 재생산 관계에서 남성들 간의 위계관계,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이 통제하는 가부장적 성문화는 결혼과 가족제도, 성역할과 성적 정체성, 그리고 남성중심의 사회질서 속에서 나타난다(이영자, 1991).

장하여 가부장제의 성문화를 합리화시키기조차 하였다.

가부장적 성문화는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이라는 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으로는 기본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남성들의 성적 욕구 분출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는 달리 여성에 대해서는 성적 순결을 중시하고, 성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폐쇄적이거나 억압적인 반면, 남성에 대해서는 성에 대한 접촉과 향유가 통과 의례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결국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기제가 필요하며, 성매매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용인되었다(변화순·황정임, 1998).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접근에서 남성의 경우는 성적 자유가 보장되고, 남성의 성적 욕구가 본래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에 반해서 여성의 경우는 성의 개방성 여하에 따라 정숙한 여성과 타락한 여성으로 분류되었다. 더욱이, 타락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성적 욕구의 해소처로 용인되어 왔다.

사실상 부계와 부권을 존중하는 가부장제에서 결혼은 사유재산권과 가장권을 가진 남성에게 여성이 전적으로 의존케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남녀 간의 불평등한 결합을 합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로서 남녀 간의 성적교류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전제하였다. 즉,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의 가부장적 성문화는 남성만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매매를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하며, 나아가 성매매 현장에 가담케 하였다.

둘째,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남성놀이문화를 들 수 있다.

남성들은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자아실현의 한계, 업무상의 스트레스, 가족관계에서의 소외 등⁸⁾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과 출구를 찾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남성들로 하여금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들만의 다양한 놀이문화를 형성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자리는 직장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활동이면서 직장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게도 하며, 공식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김효선, 1987). 특히, 공식적 업무수행 장소로써의 긍정적 평가 사례로는 ‘직장 구조의 비

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변화순·황정임, 1998, p.70 및 변화순, “남성의 사회적 연결망,” 『남성과 한국사회』(사회문화연구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7) 참조.

공식적 성격의 강화’, ‘남성들간의 정서적 친밀성이나 유대를 견고하게 함’ 및 ‘직장생활에서의 갈등을 감정저거 배설의 형태로 해소하게 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평가 예로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가족관계에서의 역할이나 정서적 교감이 줄어들어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성들은 자신들의 놀이문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쌓였던 스트레스나 감정을 토로하면서 갈등을 해소한다. 이러한 놀이문화의 극적인 면이 성매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결국 가부장적 권위의식의 굴절된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남성적 우월감은 놀이문화 속에서도 여성을 비인간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상을 단지 욕구충족을 위한 성적 도구로만 대하는 매우 몰염치한 현상이 지속되게 했다 할 것이다.

셋째, 과소비·향락문화를 들 수 있다.

과소비라는 용어 규정이 명확하게 이뤄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과소비에 대한 논의는 산업사회론 및 자본주의론의 거시적 시각으로부터 개발독재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 지하경제에 주목하는 입장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진행되어 왔다.⁹⁾

소비 자체는 본래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과시하는 수단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과소비와 관련된 제 문제를 유발케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회일반 모두에게 소비풍조를 일반화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과시적 과소비 풍조는 결국 물질주의적이거나 황금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사회에 만연케 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성까지도 판매하는 사회적 현상을 초래케 하였다.

나아가, 과소비 풍조는 향락과 관련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극점으로 치닫게 하였으며 마치 성매매는 과소비의 한 귀결로 당연하게 용인되게 되었다. 즉, 과소비 풍조는 업소를 통해 향락적 차원에서 최상의 서비스인 성매매의 대가로 고가의 돈을 치러도

9) 특히, 이러한 여러 시각의 과소비 문제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GNP를 상회하는 불로소득이 존재하고 이것이 단지 극소수 가진 자에게로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소비문화라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여 지하경제를 조장하고, 수출 경쟁력을 명분으로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농민에게는 저곡가를 강요하는 반면, 재벌에 대해서는 융자를 비롯한 각종 조세 및 인허가 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초래된다고 보았다(변화순·황정임, 1998; 이근석, 1989).

된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로 생각해 하였다. 성을 살 수 있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부의 상징으로서 상대적 만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일반인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복되어야 할 심리적 문제로서 일반인 스스로가 그러한 향락 문화에 진입케 하였다. 또한, 성을 판매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 과소비 대열에서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성을 향락 문화의 도구로 제공하게 되었다.

넷째, 성의 상품화와 개방화를 들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품적 성격의 지배를 받는다. 즉, 소비와 성이 자본주의 상품 경제의 주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양식을 결정짓는 자율적인 요소가 된다(변화순·황정임, 1998; 이영자, 1991).

대개의 경우 소비사회에서 성은 생산체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소재와 매개물로 이용되어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성적 환상을 일으키게 한다. 이로 인해 상품의 대부분은 그 자체의 고유성과는 무관하게 성적 또는 에로틱한 상징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비 내지 홍보 전략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와 선전을 통해 이뤄지며, 사용되는 언어와 이미지는 성욕을 조장한다. 이로 인해 개개인이 갖게 되는 성욕 자체는 자의적인 욕구이기에 앞서 선정적인 선전과 이익증대를 위한 상업주의 광고에 의해 조성 내지 조작되고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성의 상품화는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귀결시키는 가부장적 전통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성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이 전제된 사회 속에서 각종 광고와 선전은 당연히 여성을 성적 측면에서 다루고 부각시키고자 한다. 즉, 각종 소비상품과 광고는 흔히 여성의 성적 매력과 에로티즘을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품보다는 광고와 선전에 출연한 여성의 성과 육체를 소비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과 같은 성의 상품화 과정은 성의 개방화와 직결되어 전개되었다. 성에 대한 폐쇄적인 경로가 전통적인 미덕쯤으로 여겨지던 성문화는 상품화 과정을 통해 성의 개방화를 촉진시키게 되었으며,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성산업으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어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는 수요를 창출하는 성산업의 발달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상품화와 성개방화는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 폐쇄적인 성문화를 갖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책임성은 도외시되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쾌락적이고 도구적이고 퇴폐적인 것으로 왜곡되어 기성세대에게는 음성적인 성매매 문화가 청소년 세대에게는 성개방화를 조장하게 되었다. 즉, 성개방화는 성에 대한 쾌락적 추구하고 성의 중요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무감각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고,¹⁰⁾ 이로 인해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의 접대관행을 들 수 있다(변화순·황정임, 1998). 기업의 접대 관행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특혜를 따기 위해 관리를 접대하거나 수출 상담 등을 위해 외국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것은 기업행위의 일 부분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에 대한 청탁이나 바이어 접대는 술과 여자에 의해 대접하는 방식이 하나의 관례로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기업이 접대성경비로 지출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1997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1995)을 근거로 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이에 의하면 1995년 접대성 경비의 규모는 금융·보험업 및 수도사업·농수산업을 제외하면 1조 6천241억으로 추산되었다.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접대성경비의 규모는 무려 2조5천186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26.4%나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접대성 경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변화순·황정임, 1998).

첫째, 당장의 특혜나 이득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경우 접대는 대개 공식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비공식적이거나 음성적인 뇌물성 접대로 나타난다.

둘째, 당장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의례적,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10) 논의와 별개처럼 보일 수도 있는 해외입양 문제는 잘못된 성문화의 무책임성과 매우 깊은 결과적 측면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성관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결과인 임신과 출산 측면에서의 무책임한 결과는 해외입양아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17대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입양아는 3,851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입양이 2,287명, 국내 입양이 1,564명이었다. 또 입양자들은 주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http://www.yonhapnews.co.kr>(2005년 10월 9일 검색).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험성 접대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정기적인 인사치레, 떡값, 보험료 등의 용어로 불리며 가장 공식적인 접대성 경비지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크게 보아서 기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차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품위유지나 정보 취득 및 사전에 친분관계를 형성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접대 관행은 접대비로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공식적인 방법과 사적 공간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접대 관행의 일환으로 여성의 성이 이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의 접대관행이 성매매를 조장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경제개발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 미명 하에 모든 수단이 용인되면서 그 극적 수단인 한 가지로 여성의 성이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의 접대관행이 소수 기업이나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행위의 한 방법으로 접대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접대를 위해 소수 기업이나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 이제는 보편화,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접대 관행이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요인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크게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성’과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에의 제한성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에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실제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0년 40.8%, 1996년에는 40.6%로 감소하였다.

종사자의 지위나 임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고용주는 전체 고용주의 1/4정도이고, 상시고용인원도 전체 중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급가족 종사자에서는 여성이 90%에 이르고, 일시 고용에서도 4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취업한 여성들의 많은 수가 임

시고용이나 무급 가족 종사자와 같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이다. 또한 임금에서도 남녀간 평균임금격차는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변화순·황정임, 1998).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의 제한성, 즉 제한된 취업기회,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을 상품으로 교환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성매매 현상으로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더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성의 3차 서비스 산업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하여 화폐로 환원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접대, 안마, 면도 등- 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성매매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변화순·황정임, 1998).

둘째, 불균형적인 경제성장(경제성장정책)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즉, 경제개발이 모든 정책 입안·결정·집행에서 최고의 우선 순위로 전제되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은 국가주도, 대외의존성, 성장위주, 대기업중심이라는 특징을 통해 전개되었다(변화순·황정임, 1998; 이근식, 1989).

1980년대 이후의 3차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증가도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개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수출중심의 산업화 정책은 저임금과 함께 저곡가정책을 추진하여 농촌의 황폐화, 주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도시개발 내지 재개발 붐 등은 땅값 상승 및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어 사회에 매우 큰 불로소득을 초래하여 지하경제를 형성케 하였다.¹¹⁾

증가한 서비스 산업들의 대형화와 기업화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잉여 노동력을 흡수케 하였다. 즉, 식품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 등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는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 내지는 창출을 가능케 하였다. 더욱이 서비스 접객업소들의 증가는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경쟁력 확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저임금을 강요하게 되었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업을 잃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힘든 여성들은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 등으로 인한 노동윤리 및 근로의식의 저하와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11) 불로소득을 정상적인 금융저축의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 그 정체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자금회전이 빠른 3차 서비스 산업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점은 결국 앞에서 논의했던 과소비, 성장품화 내지 성개방화 등과도 연결돼 그 역기능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제도적 요인

성매매를 방조 내지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기존의 법제 및 행정체계,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차원 등 매우 다양한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¹²⁾

첫째, 기존의 관련 법제 가운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등에 의해 규제되는 업소들 가운데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업소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 내 성매매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지 않은 법이 있었다. 또한 성매매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나 시설 설비를 변경하는 등 성매매를 조장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제도 미약한 수준이었다. 1-2차에는 경고 조치 정도를 하고, 3차가 되어서야 업소가 폐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였다.

둘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이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적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티켓다방은 물론이고,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적으로 목욕장업에는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증기탕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업종 -가족탕의 불법 영업이나 출장 등의 방법으로- 들이 생겨나고 있다. 성매매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신축적인 규제조항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셋째, 성매매에 대한 일관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즉, 성매매가 일어날 만한 업소들은 각기 관련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각 법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풍속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들은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일관된 법 집행이 필요하였다.

넷째,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을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각 법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 규정상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개

12) 이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고찰에 대해서는 변화순·황정임, 1998, pp. 81-106 참조. 이하의 제도적 요인에 대한 논의는 변화순·황정임, 1998, pp. 230-233.

의 관련된 법에서는 18-20세 미만의 여성들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숙박영업, 이용업이나 증기탕업 등에 출입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업소를 출입하고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었다.

다섯째, 성매매에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져 있지 않았다. 검찰이나 경찰은 감독, 관리와 단속하는 기능에,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 속한다. 즉, 관리·감독과 단속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결국 각 부서간의 책임성 부재와 성매매 관련자가 범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단속과 보호라는 서로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각 부서들의 공조체계 내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

제 5 절 한국사회 성매매 주요 유형별 특성

성매매 유형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며, 현대사회연구소는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¹³⁾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전통형 성매매

전통형 성매매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만을 하는 형태로 1960-70년대에 가장 성행했었고, 지금도 특정지역에 집촌화되어 있는 소위 ‘윤락가’로 불리는 용산, 청량리 588, 천호동, 영등포, 용주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형 성매매 여성은 1998년 현재 48개 특정지역에 5,128명이 있으며, 여기엔 10개의 기지촌에 있는 758명의 성매매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 산업형 성매매

산업형 성매매는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성행했던 성매매 형태로, 성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전통형 성매매와 달리 주업이 있는 업소(업종)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3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차 서비스산업에는 음식숙박업,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기업 또는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여성들의 취업률을 보면 1983년에는 21.2%, 1986년 22.9%, 1989년에는 23.3%로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 업종이 여성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여성다움을 하나의 서비스로 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소비되기 때문이다(이은진, 1992). 여성다움을 하나의 서비스로 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13) 현대사회연구소(1984)가 분류하고 있는 성매매 유형 6가지는 가장 저급한 형태인 거리의 성매매, 조직화된 매음굴의 성매매, 성매매 그 자체가 직업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성매매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상당한 부수입을 올리는 성매매, 콜걸, 상층의 독립된 성매매, 마사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 성매매 등이다.

서비스 전달을 위해 자신의 성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성 자체를 서비스 상품화하는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음식 및 숙박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음식을 팔고,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면서 그곳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에 의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등의 식품위생업소, 증기탕, 이발소 등의 위생接客업소, 유사의료업 중 하나인 안마시술소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곳들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소위 2차라고 불리며, 업소에 따라 업소 안에서 혹은 밖에 나가서 이루어진다. 성매매를 제공하는 여성의 지위가 달라지는데 업소 종업원이 성매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위생接客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업종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숙박업은 1977년에 23,134업소에서 1980년에 25,336개로 늘어났고, 140개 업소에서 1985년에는 362개로 5년 사이에 2.5배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1990년에도 702개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70·80년대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욕장업은 1980년도에 3,807개 업소였던 것이 1985년 현재 9,87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장업 중 증기탕의 경우 1990년에 71개 업소였으나 1998년 초반 현재 149개로 나타나서 1990년도 이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식품接客업소를 살펴보면 1980년에 126,222개 업소였던 것에서 1985년에는 218,739개, 1990년에 304,632개 업소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고, 1997년 현재는 584,338개 업소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1977년 91,497개 업소였던 것이 20년이 지난 1997년 현재 477,486개 업소로 5.2배 증가하였다. 다방은 1994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5년부터는 주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4년에 생긴 단란주점은 12,133개 업소로 출발해서 3년 사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1997년 현재 23,300개 업소로 나타났다. 유흥주점의 경우는 1985년 3,432개 업소였다가 1990년에 18,821개 업소로 5년 사이에 6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냈는데 1994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마시술소는 유사의료업에 속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및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되었다. 안마시술소는 1990년 224개, 1994년 341개 업소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5년 416개 업소로, 1997년에는 535개 업소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호스티스(식품위생법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안마사, 면도사, 마사지건, 종업원 등이 있다. 업소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는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이 손님을 접대하다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 다방에서는 차를 배달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는 손님의 흥을 돋우는 일을 하는 것이 주업이다. 그러나 다방에서는 티켓을 끊고 나가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는 업소내의 술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장소에 가서 성매매를 하게 된다.

(1) 다방에서는 시간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티켓’을 끊고 나가서 성매매를 하게 된다. ‘티켓다방’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티켓을 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티켓은 다방을 비운 시간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시간 동안 티켓을 끊어준 손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는 등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방을 비운 시간만큼의 돈이 티켓 비용이 되는 것이고,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여성이 그 비용을 갖게 된다.

(2) 립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은 부녀자를 유흥접객원으로 둘 수 있도록 명시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여성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8조 6항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위 호스티스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이들인데 접대한 손님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 성매매를 2차라고 부르는 것도 술자리로 1차를 하고 이들과 성매매 행위를 하는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방처럼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고, 1차 접대 후 자신이 속해 있는 마담에게 말을 하고 나가며, 성매매 비용은 여성이 갖는다.

(3) 단란주점은 법적으로는 여성 종업원들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웨이트리스는 고용할 수 있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유흥접객원은 둘 수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단란주점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있다.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형태는 유흥주점과 동일하고 단지 마담이 아닌 업주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다르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여성들을 부르기도 한다. 이를 ‘보도’라고 하는데 일종의 인력 공급책으로 특정 장소에 여성들을 모아두고 있다가 업소

에서 연락이 오면 필요한 수만큼의 여성들을 공급한다. 보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웨이 터나 거리에서 손님을 끄는 일을 했던 등의 전직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동력을 갖추고 있어서 여성들을 업소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일을 하며, 여성들이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갖는다. 보도는 업소에 여성接客원들을 많이 두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행위인 현 상황에서 손님이 나이 어린 여성을 원할 경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들이 보도와 연결되어 있다. 보도는 유흥주점보다 단란주점의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유흥주점은 법적으로 유흥接客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담들에 의해 업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마담한테 소속되어 있는 유흥接客원들이 우선적으로 손님 접대를 하다 보면 보도를 이용할 경우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도를 통해 업소에 공급된 여성들은 성매매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일을 나갔을 때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손님을 접대해서 받는 팁만으로는 보도 운영책들에게 주는 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경기가 좋아서 많은 업소를 나가게 되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성매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4) 이발소, 증기탕, 안마시술소에서는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면도, 안마,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발소에서는 여성 종업원들이 주로 면도사로 일하면서 손님에게 면도나 안마를 해 주고, 증기탕에서는 여성입욕보조자로 일하면서 손님을 목욕시키고, 안마를 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서비스는 물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마시술소에는 맹인 안마사와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데 맹인 안마사들은 안마를 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 여성 종업원들이 없을 때는 여성 맹인 안마사들이 성매매를 하기도 했지만 손님 안내를 주업으로 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생기면서 이들에 의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업소가 이용료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성매매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여성 종업원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업주가 가져간다.

이러한 업소들은 주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업소)과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다른 다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와 달리, 업소 안에서 주업과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들 업소에서 제공되는 안마, 목욕, 면도 등의 서비스 자체가 성적욕구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고, 1인용 목욕탕(증기탕), 칸막이(이발소), 방(안마시술소) 등과 같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손님과 여성 종업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매매 행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접대했던 손님과의 관계 혹은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여부가 결정되는 다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형 성매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 산업형 성매매는 각 업소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업소의 서비스 특성과 결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업소에서건 성매매는 그 업소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주업(업소별 제공되는 서비스)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주업을 보호막으로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론

- 제 1 절 연구방법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성매매 관련 논의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고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 업주와 구매자 처벌 강화,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화재에 통해 드러난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 실태와 성매매여성의 희생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성매매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문헌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국사회 성매매 현실을 비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성매매 정책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2. 실태조사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인 남성과 성매매 종사 여성의 성매매 관련 의식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내용 및 정보교류 등을 검토하며,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3가지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자료는 성인 남성의 성매매 관련 의식과 행위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성인남성 표본 추출설계는 <표 3-1>과 같이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지역에서 성인 남성의 직업과 연령 변수를 고려하였다.

전주지역의 경우 전체 표본규모는 220명이며, 그 가운데 30-40대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20대가 많고,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하였다. 그리고 응답

자의 직업 분포는 사무직, 전문/관리직, 그리고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비율을 비슷하게 할당하였으며, 기능 단순노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하였고, 그밖에 학생, 군인 등 성매매와 관련된 직업 종사자를 기타 범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군산과 익산지역 표본은 각각 140명씩 동일하게 할당하였고, 이들 표본의 연령 및 직업은 전주지역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표 3-1> 성인남성 조사대상 표본추출 방법

지역	직 종(업)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 계
전주시 (220)	사 무 직		15	20	15	5	55
	전문/관리직		15	15	20	10	60
	판매/서비스		15	20	20	10	65
	기능/단순노무		10	10	5	-	25
	기 타		-	5	5	5	15
군산시 (140)	사 무 직		10	10	10	5	35
	전문/관리직		5	10	10	10	35
	판매/서비스		5	5	10	10	30
	기능/단순노무		5	10	5	-	20
	기 타		5	5	5	5	20
익산시 (140)	사 무 직		5	15	10	5	35
	전문/관리직		5	10	10	10	35
	판매/서비스		5	5	10	10	30
	기능/단순노무		5	10	5	-	20
	기 타		5	5	5	5	20
합 계	사 무 직		30	45	35	15	125
	전문/관리직		25	35	40	30	130
	판매/서비스		25	30	40	30	125
	기능/단순직		20	30	15	-	65
	기 타		10	15	15	15	55
	합 계		110	155	145	90	5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태도 및 경험 등을 조사하기 위한 표본설계를 <표 3-2>와 같이 하였다.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표집은 우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제한하였고, 지역적으로 전주, 군산, 익산 등 도시지역으로 한정시켰다.

전주지역 표본은 전체 표본의 2/3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전주지역만이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성매매집결지가 있고, 영업 중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경우 성매매 태도 및 경험이 다른 직종의 성매매 여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표본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전체 표본에서 1/3을 차지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전주지역 타 직종의 성매매여성 규모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20명, 티켓다방 및 노래방에서 10명, 그리고 안마시술소 증기탕에서 10명 등 전체 40명을 할당하였다.

다른 한편, 군산과 익산지역 성매매 종사 여성의 표본크기는 전체적으로 혹은 직종별로 전주에 비해 그 규모가 1/2 수준으로 설계하였다.

<표 3-2> 성매매여성 조사대상 표본 추출 방법

	직 종(업)	표본의 크기
전주시 (80)	성매매집결지(선미촌)	40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20
	티켓다방, 노래방 등	10
	안마시술소, 증기탕 등	10
군산시 (20)	다란주점, 유흥주점 등	10
	티켓다방, 노래방 등	5
	안마시술소, 증기탕 등	5
익산시 (20)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10
	티켓다방, 노래방 등	5
	안마시술소, 증기탕 등	5
합계 (120)	성매매집결지	40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40
	티켓다방, 노래방 등	20
	안마시술소, 증기탕 등	20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또한 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분석은 성인 남성과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것이다. 성인 남성의 경우 최종적으로 506명이 조사되었으나 편집과 코딩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누락된 4명 조사자료를 제외한 502명의 응답 자료를 유효자료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 여성의 경우도 편집과 코딩을 걸쳐 최종적으로 120명의 응답 자료를 유효자료로 결정하였다. 이들 자료 각각은 윈도우용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인남성과 성매매 종사 여성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은 먼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모든 변수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분포 분석을 하였고, 성인 남성의 성매매 태도 및 행위 변화에 어떤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매매 관련 교육, 성역할 의식, 등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요인 가운데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 여성의 경우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분포 분석을 하였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성매매 태도에 따라 성매매 행위에 있어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에서 교차분석을 하였다.

다른 한편,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분석은 각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즉 성매매 의식강화를 목적으로 그 동안 전개한 활동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수집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성인 남성에게 대한 자료 수집은 2005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료 수집은 2005년 8월 31일까지 9월 21일까지 23일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표집설계는 앞의 <표 3-1> 및 <표 3-2>와 같으며, 성인 남성의 경우 최종 선택은 응답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려하여 면접자가 선정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직종을 고려하여 면접자가 선정하였다.

성인 남성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료 수집은 각기 상이한 면접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먼저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과 행위 변화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공개적으로 면접원을 모집하였다. 면접원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과거 면접조사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여성을 면접원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성인 남성에게 대한 성매매 경험을 면접 조사해야 하는데 여성의 경우 면접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면접은 연구진이 면접자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전주 성매매집결지 여성에 대한 조사는 성매매 집결지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연구진이 성매매 집결지의 각 업소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를 작성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의 성매매방지 활동에 대한 자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들 단체가 전개한 활동에 관해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나 행사에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여 수집한 자료, 그리고 시민단체 임원과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성매매 현상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 한정시켰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편리성과 전북 지역 가운데 도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전주, 군산, 익산지역에 한정시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조사시점 동안에 초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인 남성이나 혹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태도 및 행위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변화는 무엇에 의한 것인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성인 남성, 성매매 종사 여성, 그리고 성매매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각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관심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연구내용을 분리해서 검토하였다.

먼저 성인 남성의 경우 본 연구는 <표 3-3>과 같이 성매매예방에 관한 교육내용을 비롯하여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경험, 성매매방지법 주요 내용이해, 성매매와 관련된 의식 및 그 변화, 성매매 환경 노출 경험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행위 변화, 그리고 일반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표 3-4>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즉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인 남성과 같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과 지지 등을 비롯하여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특히 성매매방지법이 추구하고 있는 성매매 근절에 대한 기대효과와 파생적 문제,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참여와 관련된 첫 연령, 원인, 현업소 종사기간, 이전 종사 업소, 그리고 성매매 중단 가능성과 그 시점, 성매매를 중단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때 소득 보장 요구액,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의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인지와 평가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성매매여성 소득 및 그 지출구조도 함께 검토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의 활동과 교류 등을 조사하였다. 즉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성매매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의 경우 성매매방지법 실천과 성매매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 기관과 단체 사이에 어떤 전략적 제휴가 형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표 3-3> 성인 남성의 성매매 태도, 의식 그리고 행위에 관한 조사내용

분 류	조사 항목	조사내용
성매매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성매매예방 교육	- 성매매예방 관련 각종 강의, 강연 경험 - 성매매예방 관련 언론홍보 및 강의 - 성매매예방 홍보책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 여성단체 거리홍보, 홍보책자 - 정부의 홍보책자 및 언론홍보 - 언론의 성매매단속 뉴스 시청 - 정부의 성매매단속 활동 목격
성매매방지법 이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인지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인식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대한 동의여부 - 성매매방지법 특별단속 인지 - 성매매방지법 시행 기대효과
	성매매방지법 관련 주요 내용 인식	- 성매매의 개인 윤리 타락보다 사회 구조의 문제 - 성매매 피해자 인정으로 보호입법 - 인신매매자 및 중간알선자 처벌강화
성매매 현상 인식	성매매 의식	- 성매매 정당성 - 성매매 업무성 - 성매매 피해성 - 성매매 접근성 - 성매매 자발성 -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
	성매매 의식 변화	- 성매매방지법을 전후한 의식 변화
성매매 환경 노출 및 경험	성매매 유혹 노출 및 경로	- 인터넷 매체를 통한 노출 경험 (동영상 보기, 포르노사이트 접속, 채팅) - 기타 매체를 통한 노출 경험 (위성방송, 홍보 전단, 동료 경험담 등)
	성매매 경험 및 변화	- 경험여부, 원인, 장소, 느낌 -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변화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 연령, 교육수준, 친구모임, - 직업 및 직위, 연간소득, 가족구성 - 혼인상태 등

<표 3-4> 성매매여성 대상 조사 내용

분 류	조사 항목	조사내용
성매매방지법 이해와 기대효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인 인지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인식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대한 동의여부 - 성매매방지법 특별단속 인지 - 성매매방지법 시행 기대효과
	성매매방지법 관련 주요 내용 인식	- 성매매의 개인 윤리 타락보다 사회 구조의 문제 - 성매매 피해자 인정으로 보호입법 - 인신매매자 및 중간알선자 처벌강화 -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 불가 - 성매매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성매매방지법 효과	- 성매매 감소 - 성매매 근절 여부 - 성매매 반대 시위에 대한 견해 - 집결지 단속에 따른 타 지역 활성화
성매매 첫 경험, 관련 요인	성매매 참여	- 첫 성매매 시작 - 성매매 종사 기간 - 현 업소 성매매 종사기간 - 성매매 참여 원인
	성매매 중단 가능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인식	- 성매매 중단 계획 - 직업 전환시 소득 보장 요구액 - 여성부 사회복귀 지원 사업 인지 - 여성부 사회복귀 지원 사업 평가
성매매여성의 소비 구조	성매매여성의 소득	- 월 평균 소득
	소득 지출	- 소득 사용처 및 규모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 종사 업소, 가족생계,

제 4 장

성인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유인환경 노출 분석

-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제 2 절 성매매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 제 3 절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제 4 장 성인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유인환경 노출 분석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적 특성

먼저 본 연구의 성인 남성에 대한 자료수집에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성인 남성 표집설계와 일치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표집설계 <표 3-1>에 의하며, 20대 응답자가 전체 표본 가운데 22.0%(110명)을 차지하였는데 자료수집 결과 22.2%로 거의 차이가 없고, 30대 응답자 또한 전체 표본 가운데 31.0%(155명)을 차지하였는데 자료수집 결과는 30.6%로 비슷하였다.

다른 한편 40대 응답자와 5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40대 응답자가 표본설계의 경우 29.0%를 차지하였는데 자료수집 결과는 30.6%로 약간 많았으며, 50대의 경우는 표집설계보다 1.4% 낮은 16.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표집설계와 실제 자료수집결과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성인 남성의 표본조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일반성 확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빈도		111	153	153	84	501
비율		22.2	30.6	30.6	16.6	100.0

다음으로 <표 4-2>는 응답자의 교육수준 분포를 정리한 것인데, 비교적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19.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26.1%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3.4%로 매우 적었다.

<표 4-2> 응답자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

교육수준	구 분	빈 도	비 율
중학교 이하		17	3.4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130	26.1
전문대 중퇴 혹은 졸업		96	19.2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210	42.1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43	8.6
기 타		3	.6
합 계		499	100.0 %

그리고 <표 4-3>은 응답자의 종교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49.4%로 전체 응답자의 1/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50.6%는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개신교 및 가톨릭이 각각 15.7%와 20.5%를 차지하였고, 불교와 원불교가 각각 9.4%와 2.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를 차지하였다.

<표 4-3> 응답자의 종교 분포

단위 : 명, %

종교 형태	구분	빈도	비율
종교가 없다		248	49.4
개신교		79	15.7
가톨릭		103	20.5
불교		47	9.4
원불교		10	2.0
기 타		15	2.0
합 계		502	100.0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표 4-4>와 같이 기혼자가 66.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이 28.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별거,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성인 남성은 5.4%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의 혼인상태 분포

단위 : 명, %

응답자 혼인 상태										합계
기혼		별거		이혼		사별		미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29	66.1	8	1.6	12	2.4	7	1.4	142	28.5	498 (100.0)

끝으로 응답자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시민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과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기금을 낸 응답자는 9% 정도인 반면 나머지 90% 이상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현재

시민사회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는 4.0%로 매우 낮게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표 4-5> 응답자의 시민사회활동 내용 분석

단위 : 명, %

참여 내용	참여 정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아주 많았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단체 가입	319	67.6	134	28.34	15	3.2	4	.8	472 (100.0)		
과거활동 정도	304	65.0	122	26.1	26	5.6	16	3.4	468 (100.0)		
사회단체 기금제공	294	63.0	130	27.8	27	5.8	16	3.4	467 (100.0)		

2. 경제적 특성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으로 본 연구는 직업분포 및 가족경제생활을 살펴보았는데, <표 4-6>은 응답자의 직업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는 <표 3-1>에 제시한 표본설계와 비교할 경우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자료가 수집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능/생산/숙련직 종사자의 경우 13.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표본설계의 13.0%에 비해 0.9% 많은 것이며,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26.6%를 차지하였는데 이 또한 표본설계의 25.0%에 비해 1.6% 많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 8.9%로서 표본설계의 11.0%에 비해 약간 낮은 것이다.

다른 한편, 조사자료의 직업분포와 표본설계의 직업분포 사이에 차이가 다소 크게 보이는 것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전문관리직 종사자 직업이다. 예를 들면,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 그리고 전문 자유직의 경우 각각 9.3%와 12.1%로서 표본설계의 26.0%에 비해 5% 정도 낮은 것이며,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21.8%를 차지하여 표본설계의 25.0%에 비해 3.2%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에 대한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응답자의 직업분포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7.5%로 나타났다.

<표 4-6> 응답자의 직업 분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직업 유형		
기능/생산직/숙련직	69	13.9
판매/서비스직	108	21.8
자영업(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 등)	37	7.5
사무직/기술직(차장 이하 사무직, 기술직, 교사 등)	132	26.6
경영/관리직/행정(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46	9.3
전문/자유직(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등)	60	12.1
기 타(학생, 군인 등)	44	8.9
합 계	496	100.0

다음으로 <표 4-7>은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나타낸 것인데, 월평균 소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4-6>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표본이 성인 남성을 대표하는 표집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구매 행위의 경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표집설계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는 직업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였다.

응답자의 소득분포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사이에 분포한 응답자가 3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0-200만원과 300-400만원 응답자가 각각 26.6%와 19.2%로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도 13.4%로 높게 많았지만, 반대로 10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2.2%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표 4-7>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 명, %

월평균 소득액	구 분	빈 도	비 율
100만원 미만		11	2.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3	26.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3	38.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6	19.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6	7.2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7	3.4
600만원 이상		14	2.8
합 계		500	100.0

그리고 본 연구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정생활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8>과 같다. 응답자의 가정생활 평가는 <표 4-6>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에 불과하였고, 반면 응답자의 66.2%는 보통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2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8> 응답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 %, 명

가정생활 수준	아주 잘 산다	어느 정도 잘 산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아주 못사는 편이다	합계
비 율	1.2	22.6	66.2	9.8	.2	100.0 (502)

다른 한편, 본 연구는 배우자의 취업상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9>와 같다. 즉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전업주부가 62.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 배우자의 38%는 취업상태에 있었는데 정규직에 취업한 배우자가 22.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비정규직 전일제에 취업한 배우자는 12.6%, 그리고 시간제 취업자는 2.7%로 나타났다.

<표 4-9> 응답자의 배우자 취업 현황

단위 : 비율, 명

취업여부	전업주부	취업(정규직)	취업(비정규직)	취업(시간제)	합계
비율	62.0	22.8	12.6	2.7	100.0 (334)

제 2 절 성매매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분석

1. 성매매예방에 관한 교육 경험 분석

성인 남성의 경우 성매매예방이나 성매매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매매 예방에 관한 교육이나 성매매에 따른 피해 관련 교육을 성인 남성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표 4-10>은 성매매 관련 교육이나 언론의 홍보 경험을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경우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 피해 관련 강의나 혹은 강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각각 12.5%와 10.6%로 낮은 반면에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각각 87.5%와 89.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성매매 예방 관련 언론의 홍보 및 강연을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성매매 예방과 관련된 홍보책자를 읽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각각 45.0%와 30.0%로 앞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각각 55.0%와 69.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사회의 성매매 예방이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비록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이 성매매 근절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그 동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⁴⁾

14) 본 연구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이 성매매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4-10> 성인 남성의 성매매 예방 교육 경험 분석

단위 : 명, %

내 용	경험 여부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 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성매매 예방 관련 강의		63	12.5	439	87.5	502	100.0
성매매 예방 관련 강연		53	10.6	449	89.4	502	100.0
성매매 예방 관련 언론의 홍보 및 강연		226	45.0	276	55.0	502	100.0
성매매 예방 관련 홍보책자 읽기		152	30.3	350	69.7	502	100.0

다른 한편, 본 연구는 성매매 예방 교육은 성매매에 대한 행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고 혹은 받지 않았는지 우선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성매매 예방 강의 교육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 <표 4-11>부터 <표 4-17>에 걸쳐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연령과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성매매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2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30-40대 연령층에서는 적었다.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20대와 50대 남성이 각각 19.6%와 22.6%로서 30-40대 남성 7.2%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종교적 믿음에 따라서도 성매매 예방 교육 경험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종교를 갖고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육받은 경험이 많았다. 즉 교육을 받은 남성 가운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4%로 종교가 없는 사람 9.7%에 비해 약간 많았다.

<표 4-1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강의 교육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예방 교육	연령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받은 경험이 없다	80.4	92.8	92.8	77.4	87.5	439
받은 경험이 있다	19.6	7.2	7.2	22.6	12.5	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2

$X^2=20.906, p<.001$

<표 4-12>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이상	
받은 경험이 없다		90.8	88.5	85.0	87.5(439)
받은 경험이 있다		9.2	11.5	15.0	12.5(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2)

$X^2=3.122, p>.05$

<표 4-13>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받은 경험이 없다		90.3	84.6	87.5(439)
받은 경험이 있다		9.7	15.4	12.5(12.5)
합 계		100.0	100.0	100.0(502)

$X^2=3.685, p<.05$

<표 4-14>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혼인상태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받은 경험이 없다		88.1	88.9	85.2	87.3 (435)
받은 경험이 있다		11.9	11.1	14.8	12.7 (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8)

$X^2=.834, p>.05$

<표 4-15>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강의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 자유직
받은 경험이 없다		92.8	88.0	91.9	86.4	84.0	86.4	87.5(434)
받은 경험이 있다		7.2	12.0	8.1	13.6	16.0	13.6	12.5(6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6)

$X^2=3.836, p>.05$

<표 4-16>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300만 - 400만	400만 이상	
받은 경험이 없다		84.7	88.6	88.5	88.1	87.4(430)
받은 경험이 있다		15.3	11.4	11.5	11.9	12.6(6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2)

$X^2=1.333, p>.05$

<표 4-17>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 수준과 성매매 예방강의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받은 경험이 없다		84.0	89.4	82.0	87.4(437)
받은 경험이 있다		16.0	10.6	18.0	12.6(63)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0)

$\chi^2=3.782, p>.05$

다음으로 <표 4-18>부터 <표 4-24>에 의하면,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 생활수준 등에 따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경험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성매매예방 강연 교육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나이가 많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교육 경험이 많았다. 예를 들면, 성매매예방 강연을 수강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50대 이상 남성이 19.0%로 다른 연령층의 10% 미만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직업에 따라서도 성매매 예방 강연을 수강한 경험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서 많았다. 즉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는 경영/전문직과 전문직/자유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각각 21.7%와 13.6%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 2-8%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서도 성매매예방 강연 교육 경험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정생활이 부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다. 즉 성매매예방 강연을 수강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가정생활이 부유한 남성이 20.2%로 어려운 남성 6.0%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표 4-18>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받은 경험이 없다	90.2	91.5	91.5	81.0	89.4	449
받은 경험이 있다	9.8	8.5	8.5	19.0	10.6	5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2

$\chi^2=7.852, p<.05$

<표 4-19>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단위:%, 명

경험	구분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이상	
받은 경험이 없다		92.2	87.5	88.5	89.4 (449)
받은 경험이 있다		7.8	12.5	11.5	10.6 (5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chi^2=1.797, p>.05$

<표 4-20>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받은 경험이 없다		91.5	87.4	89.4 (449)
받은 경험이 있다		8.5	12.6	10.6 (53)
합 계		100.0	100.0	100.0(502)

$\chi^2=2.267, p>.05$

<표 4-21>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받은 경험이 없다	89.1	81.5	91.5	89.4 (445)
	받은 경험이 있다	10.9	18.5	8.5	10.6 (53)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8)

$\chi^2=2.510, p>.05$

<표 4-22>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숙련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 자유직
	받은 경험이 없다	97.1	93.5	91.9	95.5	78.3	75.0	89.5 (444)
	받은 경험이 있다	2.9	6.5	8.1	4.5	21.7	13.6	10.5 (5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6)

$\chi^2=35.340, p<.001$

<표 4-23>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300만	300만~ 400만	400만 이상	
	받은 경험이 없다	91.7	88.6	91.7	86.4	89.8 (442)
	받은 경험이 있다	8.3	11.4	8.3	13.6	10.2 (5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2)

$\chi^2=1.948, p>.05$

<표 4-24>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강연 교육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경험	구분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받은 경험이 없다		79.8	92.1	94.0	89.4 (447)
받은 경험이 있다		20.2	7.9	6.0	10.6 (53)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0)

$\chi^2=15.245, p<.001$

그리고 성매매 예방을 위한 언론의 홍보 및 강연을 시청한 경험이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그 결과를 <표 4-25>에서부터 <표 4-31>까지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어떤 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남성의 연령, 결혼지위, 그리고 가족생활 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언론의 홍보 및 강연을 시청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20대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46.4%, 그리고 30대가 가장 적은 39.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남성의 결혼과 관련해서 언론의 홍보 및 강연을 시청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미혼 남성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혼자가 44.4%, 그렇지만 이혼 및 사별 남성의 경우는 29.6%로 매우 낮았다.

끝으로 남성의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언론의 홍보 및 강연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남성 중에는 가족생활 수준이 낮은 남성이 54.0%로 중간 수준의 남성 43.8%에 비해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4-25>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단위 : %, 명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	30	40	50	비율	빈도
본 경험이 없다	46.4	60.8	56.2	53.6	55.0	276
본 경험이 있다	53.6	39.2	43.8	46.4	45.0	22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2

$X^2=5.552, p>.05$

<표 4-26>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이상	
본 경험이 없다		60.1	55.2	51.8	55.0 (276)
본 경험이 있다		39.9	44.8	48.2	45.0 (226)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2)

$X^2=2.689, p>.05$

<표 4-27>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본 경험이 없다		55.6	54.3	55.0 (276)
본 경험이 있다		44.4	45.7	45.0 (226)
합 계		100.0	100.0	100.0(502)

$X^2=0.88, p>.05$

<표 4-28>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본 경험이 없다		55.6	70.4	50.0	54.8 (273)
본 경험이 있다		44.4	29.6	50.0	45.2 (225)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8)

$X^2=4.054, p>.05$

<표 4-29>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숙련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본 경험이 없다		55.1	58.3	59.5	53.8	56.6	43.2	55.0 (273)
본 경험이 있다		44.9	41.7	40.5	46.2	43.4	56.8	45.0 (2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6)

$X^2=3.454, p>.05$

<표 4-30> 성인 남성의 소득수준과 성매매 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본 경험이 없다		54.2	53.4	60.4	54.2	55.1 (271)
본 경험이 있다		45.8	46.6	39.6	45.8	44.9 (2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2)

$X^2=1.399, p>.05$

<표 4-31>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예방 언론의 홍보 및 강연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본 경험이 없다	54.6	56.2	46.0	54.8 (274)
	본 경험이 있다	45.4	43.8	54.0	45.2 (22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500)

$\chi^2=1.824, p>.05$

끝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책자를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읽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32>에서부터 <표 4-38>에 거쳐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교육수준과 가족생활 수준에 따라서 홍보책자를 읽은 경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책자를 읽은 남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35.2%로 전문대 및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 25% 수준에 비해 10%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가족생활과 관련해서 성매매예방 홍보책자 읽기 경험은 가정생활이 부유한 남성이 가난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성매매예방 홍보를 위한 책자를 읽은 남성 중에는 가족생활이 부유한 남성이 41.2%로 보통의 생활수준을 갖고 있는 남성 26.6%에 비해 15% 이상, 가족생활이 어려운 남성 30.0%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비록 나머지 변수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차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남성의 결혼지위 및 소득수준 변수가 있다. 즉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책자를 읽은 남성 중에는 미혼이나 기혼남성이 각각 33.8%와 29.8%로 사별 혹은 이혼 남성의 14.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37.3%로서 200만원 미만의 남성 28.5%에 비해 약 10% 정도 많았다.

<표 4-3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단위 : %, 명

구분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율	빈도
읽은 경험이 없다	67.0	68.6	75.2	65.5	69.7	350
읽은 경험이 있다	33.0	31.4	24.8	34.5	30.3	15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2

$X^2=3.353, p>.05$

<표 4-3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단위 : %, 명

구분 경험	교육수준			합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이상	
읽은 경험이 없다	74.5	75.0	64.8	69.7 (350)
읽은 경험이 있다	25.5	25.0	35.2	30.3 (15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502)

$X^2=5.805, p<.05$

<표 4-3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단위 : %, 명

구분 경험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읽은 경험이 없다	71.4	68.1	69.7 (350)
읽은 경험이 있다	28.6	31.9	30.3 (152)
합 계	100.0	100.0	100.0 (502)

$X^2=632, p>05$

<표 4-3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읽은 경험이 없다	70.2	85.2	66.2	69.9 (348)
	읽은 경험이 있다	29.8	14.8	33.8	30.1 (15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8)

$X^2=3.937, p>.05$

<표 4-3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숙련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읽은 경험이 없다	72.5	74.1	62.2	71.2	64.2	70.5	69.8 (346)
	읽은 경험이 있다	27.5	25.9	37.8	28.8	35.8	29.5	30.2 (15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6)

$X^2=3.927, p>.05$

<표 4-3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읽은 경험이 없다	71.5	70.5	68.8	62.7	69.5 (342)
	읽은 경험이 있다	28.5	29.5	31.3	37.3	30.5 (15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92)

$X^2=1.673, p>.05$

<표 4-3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책자 관련성

단위 : %, 명

경험	구분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읽은 경험이 없다		58.8	73.4	70.0	69.6 (348)
읽은 경험이 있다		41.2	26.6	30.0	30.4 (15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500)

$\chi^2=8.811, p<.01$

2. 성매매방지법 전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경험 분석

본 연구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정부 및 여성단체, 관련 기관의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이 어느 정도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간접적 방법으로서 성인 남성의 경험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39>과 같다.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에 대한 남성의 경험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위반자 구속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 시청을 제외하면 다른 활동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 뉴스를 시청한 사람은 61.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여성단체와 정부의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경찰의 성매매 단속활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먼저 여성단체의 성매매예방 거리 홍보활동을 목격하거나 홍보책자를 읽은 사람은 각각 16.9%로 동일하게 낮은 편이다. 그리고 정부의 성매매예방 홍보책자를 읽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2%로 더 낮게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언론을 통해 성매매예방 홍보물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3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남성은 23.5%를 차지하였다.

<표 4-39> 성인 남성의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경험 분석

단위 : 명, %

예방 홍보활동 내용	경험 여부	경험이 있다		경험이 없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율	빈도
여성단체의 거리홍보		85	16.9	417	83.1	502	100.0
여성단체의 홍보책자 읽기		85	16.9	417	83.1	502	100.0
정부의 언론 홍보활동		178	35.5	324	64.5	502	100.0
정부의 홍보책자 읽기		56	11.2	446	88.8	502	100.0
경찰의 단속활동 직접 목격		118	23.5	384	76.5	502	100.0
언론의 성매매방지법 위반자 구속 뉴스 시청		306	61.0	196	39.0	502	100.0

본 연구는 또한 위의 성매매 예방을 위한 여성단체와 정부의 직간접적인 홍보활동이나 단속기관의 활동을 보고 난 후 남성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40>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단체 및 정부의 성매매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성이 보다 많았다. 즉 정부의 성매매 예방 및 단속활동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될 것이라고 느낀 응답자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았다고 응답한 남성과 반대로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한 남성이 각각 16.7%와 5.5%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여성단체 혹은 정부의 성매매 예방활동이나 단속기관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성이 65.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여성단체와 정부의 성매매 예방활동이나 단속기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남성은 34.6%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단속이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와 정부의 성매매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이 각각 19.7%와 14.9%로 나타났다.

<표 4-40>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본 이후 느낌 분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보고 난 후의 느낌		
불쾌한 느낌은 받음	24	5.5
별 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	73	16.7
단속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다 중단될 것이란 느낌	188	43.2
성매매예방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느낌	86	19.7
성매매 단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느낌	65	14.9
합 계	436	100.0

이처럼 정부와 여성단체의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단속활동을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본 연구는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즉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이나 단속기관의 활동 인식이 연령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4-41>와 같이, 나이가 낮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예방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20대와 30대가 각각 59.0%와 44.1%로서 40대와 50대의 32-3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성매매예방 및 단속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40대 이상 남성이 37-42% 수준으로 20대 남성의 2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4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율	빈도
부정적 느낌	18.0	21.3	25.4	24.1	22.2	97
중단될 것 같은 느낌	59.0	44.1	32.3	39.2	43.1	151
효과적으로 추진될 느낌	23.0	34.6	42.3	36.7	34.6	15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36

$\chi^2=17.450, p<.01$

다른 한편, 응답자의 교육수준이나 종교에 따른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이나 단속활동 인식 차이는 <표 4-42> 및 <표 4-43>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종교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정부의 홍보활동 및 단속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종교를 갖고 있는 남성이 38.0%로 종교가 없는 남성의 30.9%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성 중에서는 종교가 없는 남성이 26.6%로 종교가 있는 남성 1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42>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느낌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이상	
부정적 느낌	24.6	19.8	21.9	22.2 (97)
중단될 것 같은 느낌	41.8	36.0	46.5	43.1 (188)
효과적으로 추진될 느낌	33.6	44.2	31.6	34.6 (15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36)

$X^2=5.114, p>.05$

<표 4-43>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부정적 느낌	26.6	18.3	22.2 (97)
중단될 것 같은 느낌	42.5	43.7	43.1 (188)
효과적으로 추진될 느낌	30.9	38.0	34.6 (151)
합 계	100.0	100.0	100.0 (436)

$X^2=4.914, p>.05$

그러나 <표 4-44>에 의하면, 기혼남성과 미혼남성 사이에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성단체 및 정부의 홍보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기혼남성이 39.9%로 미혼남성 21.1%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많았고, 반대로 중단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서는 미혼남성이 60.2%로 기혼남성 37.8%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소득수준에 따른 성매매예방 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45>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성매매예방 홍보 및 단속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중에는 400만원 이상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47.2%로 200만원 미만의 남성 25.8%보다 많았지만, 예방활동이나 단속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200만원 미만 소득의 남성이 53.2%로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35.8%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표 4-44>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부정적 느낌	22.2	40.9	18.7	22.2 (96)
중단될 것 같은 느낌	37.8	22.7	60.2	43.4 (188)
효과적으로 추진될 느낌	39.9	36.4	21.1	34.4 (14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33)

$X^2=25.195, p<.001$

<표 4-45>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300만 - 400만	400만 이상	
부정적 느낌	21.0	20.8	29.6	17.0	22.1 (94)
중단될 것 같은 느낌	53.2	41.1	38.3	35.8	43.4 (185)
효과적으로 추진될 느낌	25.8	38.1	32.1	47.2	34.5 (14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26)

$X^2=13.003, p<.05$

다른 한편, 남성의 직업과 가정생활 수준에 따른 성매매예방 홍보활동과 단속활동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4-46>과 <표 4-47>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가운데 가정생활이 부유한 남성이 40.6%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남성 30.4%보다 10% 정도 많았다.

<표 4-4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숙련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 자유직	
부정적 느낌	25.0	26.0	25.8	17.1	26.6	14.6	22.5 (97)
중단될 것으로 인식	44.2	40.6	45.2	46.2	34.0	61.0	43.4 (187)
계속 추진 인식	30.8	33.3	29.0	36.8	39.4	24.4	34.1 (14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31)

$\chi^2=11.955, p>.05$

<표 4-47>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예방 홍보활동 느낌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부정적 느낌	23.6	22.0	21.7	22.4 (97)
중단될 것 같은 느낌	35.8	45.4	47.8	43.3 (188)
효과적으로 추진될 느낌	40.6	32.6	30.4	34.3 (14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34)

$\chi^2=3.600, p>.05$

제 3 절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개적인 성매매가 점차 어렵게 되면서 은밀하고 사적인 거래에 의한 성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그런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40일 동안 청소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한 결과 572명을 적발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청소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이며, 이들 가운데 82%가 바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머니투데이, 2005.4.14).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성매매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들의 주요 고객은 물론 성인 남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커다란 변화 하는 과거 성매매 제의가 대부분 성이 남성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이제 청소년이 직접 성구매자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며, 향후 성매매를 매개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현상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아직 그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을 성매매의 매개체 역할로 제한시켜 조사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 성매매 유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성매매 유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에서 그 관계를 검토하였다.

1.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인터넷이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혹은 중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여성노출 장면 및 동영상을 보거나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혹은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을 갖고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4-48>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채팅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은 많지 않았지만, 반면에 인터넷을 통해 여성노출 동영상을 보거나 혹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노출 장면을 보았던 남성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먼저 인터넷 성매매 채팅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이 20.4%를 차지한 반면에 경험이 없는 남성은 79.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비록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만이 성매매 채팅 대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현상임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반면에 인터넷을 통해 여성노출 동영상을 보거나 혹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노출 장면을 보았던 응답자는 과반수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자의 경우 여성노출 장면이나 동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2.6%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에는 경험이 많은 남성이 22.2%를 차지하였고, 경험이 다소 적은 남성이 40.4%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또한 51.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에는 경험이 많은 남성이 13.4%를 차지하였고, 약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이 38.1%로 나타났다.

<표 4-48>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경험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노출 경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많은 편이다		합 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여성노출 동영상 보기	50	10.0	137	27.4	202	40.4	111	22.2	500	100.0
포르노사이트 접속	74	14.8	168	33.7	190	38.1	67	13.4	499	100.0
성매매 채팅 대화	184	36.9	213	42.7	81	16.2	21	4.2	499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남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이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표 4-49>에서부터 <표 4-55>까지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이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응답자의 연령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결혼지위,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되었지만, 종교, 소득수준, 가정생활 수준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표 4-49>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남성일수록 인터넷에서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이 많이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20대가 38.4%로 50대 이상의 10.7%에 비해 거의 5배 정도 많았으며, 약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20대 남성이 51.8%로 50대 이상 남성의 40.4%보다 10% 이상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의 젊은 세대가 50대에 비해 인터넷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표 4-50>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인터넷 여성노출 동영상 접속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이 많은 남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29.8%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16.4%에 비해 13.4% 많았다. 반면에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14.5%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7.1%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4-49> 성인 남성의 연령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연 령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8	15.1	10.5	10.7	10.0	50
거의 없다	8.0	21.1	36.8	47.6	27.4	137
약간 있다	51.8	36.8	40.8	31.0	40.4	202
많은 편이다	38.4	27.0	11.8	10.7	22.2	11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chi^2=79.744, p<.001$

<표 4-50>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교육수준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4.5	10.4	7.1	10.0	50
거의 없다	27.6	41.7	21.7	27.4	137
약간 있다	41.4	36.5	41.3	40.4	202
많은 편이다	16.4	11.5	29.8	22.2	11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500

$\chi^2=29.312, p<.01$

<표 4-51> 성인 남성의 종교와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0.5	9.5	10.0	50
거의 없다	23.9	30.8	27.4	137
약간 있다	41.3	39.5	40.4	202
많은 편이다	24.3	20.2	22.2	111
합 계	100.0	100.0	100.0	500

$\chi^2=3.393, p>.01$

그리고 <표 4-52>에 의하면 미혼남성이 여성노출 동영상을 많이 본 반면에 기혼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를 들면, 여성노출 동영상을 많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미혼남성이 40.4%로 기혼남성 15.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약간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서도 미혼남성이 48.2%로 기혼남성 38.4%에 비해 약 10% 정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혼남성 또한 예외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여성노출 동영상을 전혀 본 적이 없는 남성 중에는 기혼남성이 12.8%로 미혼 남성 1.4%에 비해 8배 이상 많았다.

<표 5-53>에 의하면, 기능생산직 노동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노출 동영상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이 많은 남성 중에는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기능생산직 종사 남성이 각각 26.9%와 23.8%로 전문자유직 종사자 13.6%에 비해 10-13% 정도 많았다. 반면에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서는 전문자유직과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각각 58.8%와 50.9%로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기능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는 각각 27.5%와 31.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표 4-52>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2.8	22.2	1.4	10.1	50
거의 없다	33.5	37.0	9.9	27.0	134
약간 있다	38.4	25.9	48.2	40.5	201
많은 편이다	15.2	14.8	40.4	22.4	11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6

$X^2=70.778, p<.01$

<표 4-53> 성인 남성의 직업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숙련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0.1	7.4	13.5	13.1	11.3	2.3	10.1	50
거의 없다	17.4	24.1	18.9	19.2	39.6	54.5	27.5	136
약간 있다	49.3	41.7	48.6	43.8	30.2	29.5	40.3	199
많은 편이다	23.2	26.9	18.9	23.8	18.9	13.6	22.1	10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4

$X^2=39.597, p<.01$

<표 4-54> 성인 남성의 소득과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300만 - 400만	400만 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4.9	10.9	14.6	10.2	9.8	48
거의 없다	21.7	30.7	32.3	23.7	27.6	135
약간 있다	44.8	40.1	34.4	42.4	40.6	199
많은 편이다	28.7	18.2	18.8	23.7	22.0	10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90

$\chi^2=15.853, p>.01$

<표 4-55>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 수준과 인터넷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 차이분석

단위 : 명, %

인터넷 경험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	못사는 편이다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0.9	9.1	14.0	10.0	50
거의 없다	37.8	24.0	22.0	27.1	135
약간 있다	29.4	45.0	38.0	40.6	202
많은 편이다	21.8	21.9	26.0	22.3	11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8

$\chi^2=13.487, p>.01$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4-56>에서 <표 4-62>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결혼지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변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먼저 <표 4-56>에 의하면, 여성노출 동영상 경험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젊은 남성일수록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회가 많은 남성 중에는 20대 남성이 23.2%로 50대 남성 8.3%에 비해 3배 정도 많았고, 약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서도 20대 남성이 49.1%로 50대 남성의

26.2%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이 있는 남성 중에는 50대 남성이 65.5%로 20대 남성의 27.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런 결과는 앞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젊은 남성의 경우 나이 많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4-56> 성인 남성의 연령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율	빈도
전혀 없다	3.6	20.3	18.7	13.1	14.8	74
거의 없다	24.1	28.8	35.3	52.4	33.7	168
약간 있다	49.1	36.6	38.0	26.2	38.1	190
많은 편이다	23.2	14.4	8.0	8.3	13.4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99

$X^2=47.064, p<.001$

<표 4-57>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포르노 사이트 접속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6.4	17.9	12.7	14.8	74
거의 없다	32.9	41.1	31.3	33.7	168
약간 있다	38.2	34.7	39.3	38.1	190
많은 편이다	12.5	6.3	16.7	13.4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9

$X^2=9.631, p>.01$

<표 4-58> 응답자의 종교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포르노 사이트 접속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4.7	15.0	14.8	74
거의 없다	32.7	34.6	33.7	168
약간 있다	35.9	40.2	38.1	190
많은 편이다	16.7	10.2	13.4	67
합 계	100.0	100.0	100.0	499

$X^2=4.664, p>.01$

그리고 <표 4-59>에 의하면, 미혼 남성이 기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많은 남성 중에는 미혼남성이 21.8%로 기혼남성의 9.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약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서도 전자가 51.4%로 후자의 33.1%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반면에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는 기혼 남성이 18.7%로 미혼남성의 5.6%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그밖에 다른 변수의 경우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소득과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60>에 의하면, 소득이 적은 남성이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이 많은 반면 소득이 많은 남성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많은 남성 중에는 월평균 200만원 미만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16.7%로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12.1%에 비해 약간 많았고, 전혀 경험이 없는 남성의 경우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20.7%로 200만원 미만 남성의 9.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표 4-61>에 의하면, 가정생활 수준이 낮은 남성의 경우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가정생활이 어려운 남성이 24.0%로 가정생활이 부유한 남성 11.0%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4-59>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포르노 사이트 접속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8.7	14.8	5.6	14.7	73
거의 없다	38.7	37.0	21.1	33.5	166
약간 있다	33.1	29.6	51.4	38.2	189
많은 편이다	9.5	18.5	21.8	13.5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5

$X^2=41.456, p<.01$

<표 4-60> 응답자의 직업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포르노 사이트 접속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자 유직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3.0	14.8	21.6	16.2	16.2	6.8	15.0	74
거의 없다	24.6	32.4	21.6	33.1	41.9	40.9	33.5	165
약간 있다	47.8	40.7	37.8	40.0	26.7	38.6	38.1	188
많은 편이다	14.5	12.0	18.9	10.8	15.2	13.6	13.4	6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3

$X^2=17.226, p>.01$

<표 4-61> 응답자의 소득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포르노 사이트 접속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300만 - 400만	400만 이상	비율	빈도
전혀 없다	9.7	14.1	20.8	20.7	14.9	73
거의 없다	25.7	38.2	38.5	25.9	33.1	162
약간 있다	47.9	34.0	32.3	41.4	38.7	189
많은 편이다	16.7	13.6	8.3	12.1	13.3	6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89

$X^2=20.356, p>.01$

<표 4-62>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포르노 사이트 접속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	못사는 편이다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5.3	14.3	18.0	14.9	74
거의 없다	38.1	32.8	26.0	33.4	166
약간 있다	35.6	40.1	32.0	38.2	190
많은 편이다	11.0	12.8	24.0	13.5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7

$X^2=7.851, p>.01$

끝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이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63>에서부터 <표 6-69>과 같고, 남성의 연령과 혼인상태,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63>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젊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인터넷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팅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20대 남성이 30.4%를 차지하여 50대 남성의 경우는 15.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인터넷에서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이 없었던 남성 중에는 50대 남성이 84.5%로 20대 남성 69.6%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표 4-63>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채팅 대화 경험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채팅 경험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율	빈도
전혀 없다	27.7	47.1	34.7	34.5	36.9	184
거의 없다	42.0	32.0	50.0	50.0	42.7	213
약간 있다	27.7	15.0	11.3	11.9	16.2	81
많은 편이다	2.7	5.9	4.0	3.6	4.2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99

$X^2=28.316, p<.01$

<표 4-64>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채팅 경험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37.1	31.6	38.7	36.9	184
거의 없다	42.4	46.3	41.5	42.7	213
약간 있다	18.5	20.0	13.4	16.2	81
많은 편이다	2.0	2.1	6.3	4.2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9

$\chi^2=9.346, p>.01$

<표 4-65>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채팅 경험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32.2	41.3	36.9	184
거의 없다	44.5	40.9	42.7	213
약간 있다	16.7	15.7	16.2	81
많은 편이다	6.5	2.0	4.2	21
합 계	100.0	100.0	100.0	499

$\chi^2=9.406, p>.01$

다음으로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인터넷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 차이를 분석한 <표 4-66>에 의하면, 미혼남성의 경우 경험이 많은 반면 기혼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팅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미혼남성이 30.2%로 기혼남성의 15.0%에 비해 2배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기혼남성이 43.4%로 미혼남성의 27.5%에 비해서 15% 정도 많았다.

그리고 <표 4-67>에 의하면, 기술자유직을 비롯하여 자영업, 그리고 생산기술직 종사 남성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이 있는 남성 중에는 전문자유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3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산기술직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가 각각 27.5%와 27.0%를 차지한 반면에 판매서비스직과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각각 13.9%와 14.4%로 적었다. 다른 한편,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는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남성과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각각 85.1%와 8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80.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전문직 자유직 종사자가 63.6%로 가장 적었다.

끝으로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남성일수록 경험이 많은 반면 소득이 많은 남성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인터넷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이 29.2%로 월평균 소득 300-400만원 수준인 남성과 400만원 이상이 남성의 12.5%와 15.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인터넷에서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300-400만원 정도인 남성과 400만원 이상인 남성이 각각 54.2%와 44.8%로서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정도인 남성의 29.8%에 비해 15-25% 이상 많았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 31.3%에 비해서도 13.5 - 23.9% 정도 많았다.

<표 4-66>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채팅 경험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비율	빈도
전혀 없다	43.4	7.4	27.5	36.9	183
거의 없다	41.6	59.3	42.3	42.7	212
약간 있다	11.9	25.9	24.6	16.3	81
많은 편이다	3.1	7.4	5.6	4.0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6

$X^2=29.255, p<.01$

<표 4-67> 응답자의 직업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채팅 경험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 자유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39.1	39.8	24.3	39.7	45.2	9.1	36.9	182
거의 없다	33.3	46.3	48.6	40.5	40.4	54.5	42.6	210
약간 있다	26.1	11.1	16.2	15.3	10.6	31.8	16.4	81
많은 편이다	1.4	2.8	10.8	4.6	3.8	4.5	4.1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3

$X^2=37.421, p<.01$

<표 4-68> 응답자의 소득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채팅 경험	소득의 범주화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300만 - 400만	400만 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31.3	29.8	54.2	44.8	36.8	180
거의 없다	39.6	51.8	33.3	39.7	43.1	211
약간 있다	26.4	13.6	8.3	10.3	16.0	78
많은 편이다	2.8	4.7	4.2	5.2	4.1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89

$X^2=34.747, p<.01$

<표 4-69>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채팅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채팅 경험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부유한 편이다	보통수준이다	가난한 편이다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32.2	38.8	36.7	37.0	184
거의 없다	46.6	41.8	36.7	42.5	211
약간 있다	14.4	15.8	24.5	16.3	81
많은 편이다	6.8	3.6	2.0	4.2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7

$X^2=6.890, p>.01$

2. 기타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체로서 인터넷을 제외한 위성방송이나 성매매 홍보 전단, 그리고 동료 및 친구의 경험담 듣기 등 다른 형태의 노출을 검토하였는데, <표 4-70>과 같이 비교적 많은 남성들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성방송을 통해서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하거나 혹은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들었던 남성이 비교적 많았다.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6.2%가 위성방송에서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3.8%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65.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위의 위성방송에서 여성노출 장면 시청과 동료 및 친구의 경험담 듣기와 비슷하게 성매매 홍보 전단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동료 및 친구와 성매매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한 남성도 각각 57.1%와 58.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인 남성 가운데 대부분이 성매매 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갖고 있어 성매매 유인 환경이 우리사회 주변에 광범위하게 산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과 함께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성매매 유인환경도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성매매 예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표 4-70>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성매매 환경 노출 경험 분석

단위 : 명, %

경험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많은 편이다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매매 환경										
위성방송을 통한 여성노출 시청	41	8.2	128	25.6	253	50.6	78	15.6	500	100.0
성매매 홍보 전단	45	9.0	169	33.9	218	43.7	67	13.4	499	100.0
동료 및 친구의 경험담 듣기	59	11.8	114	22.8	210	42.1	116	23.2	499	100.0
동료 및 친구와 성매매 경험 담소	86	17.3	121	24.3	200	40.2	90	18.1	497	100.0

그리고 본 연구는 위에서 검토한 남성의 성매매 환경노출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4가지 성매매 유인환경 내용 가운데 2가지 동료나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와 담소하기의 경우 그 내용이 비슷한데 후자보다 전자의 경우 성매매 유인환경 성격을 갖기 때문에 후자는 생략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위성방송을 통해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한 경우 남성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남성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비롯하여 혼인상태, 그리고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종교와 소득수준, 가정 생활 수준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표 4-71>에 의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위성방송을 통해서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많았다. 예를 들면, 위성방송 여성노출 장면 시청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20대 남성이 81.3%로서 50대 남성의 42.8%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위성방송 여성노출 시청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50대 남성이 9.5%로 20대 남성의 1.8%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표 4-72>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많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험이 적었다. 예를 들면, 위성방송을 통해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12.5%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5.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위성방송을 통해서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많은 남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19.8%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13.8%에 비해 6.0% 많았다.

<표 4-71> 성인 남성의 연령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위성방송을 통한 여성노출 시청	연 령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8	9.8	10.6	9.5	8.2	41
거의 없다	17.0	20.9	24.5	47.6	25.6	128
약간 있다	56.3	53.6	51.7	35.7	50.6	253
많은 편이다	25.0	15.7	13.2	7.1	15.6	7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chi^2=43.313, p<.001$

<표 4-72>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2.5	9.5	5.1	8.2	41
거의 없다	21.1	37.9	23.7	25.6	128
약간 있다	52.6	56.3	51.4	50.6	253
많은 편이다	13.8	7.4	19.8	15.6	7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500

$\chi^2=21.632, p<.01$

<표 4-73> 응답자의 종교와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9.3	7.1	8.2	41
거의 없다	22.4	28.7	25.6	128
약간 있다	48.4	52.8	50.6	253
많은 편이다	19.9	11.4	15.6	156
합 계	100.0	100.0	100.0	500

$\chi^2=9.033, p>.01$

<표 4-73>에 의하면,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위성방송 여성노출 시청 경험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혼남성의 경우 경험이 많은 반면 기혼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예를 들면, 위성방송에서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한 경험이 많은 남성 중에는 미혼 남성이 23.9%로 기혼남성의 12.2%에 비해 10% 이상 많았으며, 약간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미혼남성이 기혼남성에 비해 약간 많았다. 그러나 위성방송 여성노출 장면에 대한 시청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기혼남성이 13.2%로 미혼남성의 2.1%에 비해 6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직업에 따른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장면 시청 경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표 4-74>에 의하면, 기능생산직과 자영업, 그리고 사무/기술직 종사 남성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위성방송 여성노출 장면에 대한 시청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위성방송 여성노출 장면에 대한 시청 경험이 많은 노인 중에서는 생산기술직 종사자가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과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각각 16.2%와 16.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경우는 9.1%로 낮았다. 다른 한편, 위성방송 여성노출 장면에 대한 시청 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문자유직 종사자(45.4%)를 비롯하여 판매서비스직 종사자(39.8%)와 경영관리직 종사자(39.1%)가 많은 반면 생산기술직 종사자(20.2%)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표 4-74>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1.3	3.7	2.1	8.3	41
거의 없다	27.2	44.4	17.6	25.4	126
약간 있다	49.2	37.0	56.3	50.6	251
많은 편이다	12.2	14.8	23.9	15.7	7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6

$X^2=29.213, p<.01$

<표 4-75> 응답자의 직업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자 유직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0.1	7.4	8.1	9.9	6.7	4.5	8.1	40
거의 없다	10.1	32.4	18.9	19.8	32.4	40.9	25.7	127
약간 있다	58.0	46.3	56.8	54.2	46.7	45.5	50.8	251
많은 편이다	21.7	13.9	16.2	16.0	14.3	9.1	9.1	15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4

$X^2=24.06, p<.01$

<표 4-76> 응답자의 소득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300만 - 400만	400만 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6.3	8.9	10.4	8.5	8.4	84
거의 없다	15.3	2.9	34.4	27.1	25.9	127
약간 있다	56.3	50.3	44.8	44.1	50.2	246
많은 편이다	22.2	11.5	10.4	20.3	15.5	7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90

$\chi^2=21.833, p>.01$

<표 4-77>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위성방송의 여성노출 시청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부유한 편이다	보통수준이다	가난한 편이다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4.2	9.4	10.0	8.2	41
거의 없다	34.7	22.4	24.0	25.5	127
약간 있다	43.2	53.9	46.0	50.6	252
많은 편이다	17.8	14.2	20.0	15.7	7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8

$\chi^2=11.817, p>.01$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 홍보 전단을 받아본 경험이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78>에서부터 <표 4-84>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왜냐하면 성매매 홍보 전단지의 경우에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에게 의해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자의적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성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단지의 홍보가 궁극적으로 젊은 사람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4-78>에 의하면, 젊은 남성이 나이가 많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매매를 자극하는 홍보물 전단지를 접촉한 경험이 많았다. 예를 들면, 홍보물 전단지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남성 중에는 20대가 65.2%로 50대의 43.3%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접촉한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는 50대 남성이 56.6%로서 20대 남성 34.8%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그리고 <표 4-82>에 의하면, 기능생산직 종사자(66.6%)를 비롯하여 자영업(64.9%)과 사무기술직 종사자(58.8%)가 전문자유직 종사자(50.9%)에 비해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접촉한 사람이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접촉한 경험이 없었던 남성 중에는 전문자유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47.6%로 많았다. 반면에 기능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33.3%로 가장 적었다.

<표 4-78> 성인남성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홍보물 접촉	연 령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8.0	11.1	7.9	8.4	9.0	45
거의 없다	26.8	30.7	34.4	48.2	33.9	169
약간 있다	49.1	45.8	42.4	34.9	43.7	218
많은 편이다	16.1	12.4	15.2	8.4	13.4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99

$\chi^2=23.258, p<.01$

<표 4-79>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홍보물 접촉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9.3	8.3	9.1	9.0	45
거의 없다	36.7	38.5	30.4	33.9	169
약간 있다	42.7	40.6	45.5	43.7	218
많은 편이다	11.3	12.5	15.0	13.4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9

$X^2=3.366, p>.01$

<표 4-80>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홍보물 접촉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7.3	10.6	9.0	45
거의 없다	32.7	52.0	33.9	169
약간 있다	43.7	43.7	43.7	218
많은 편이다	16.3	10.6	13.4	67
합 계	100.0	100.0	100.0	499

$X^2=4.714, p>.01$

<표 4-81>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홍보물 접촉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0.1		8.5	9.1	45
거의 없다	34.6	37.0	31.0	33.7	167
약간 있다	44.0	44.4	43.0	43.8	217
많은 편이다	11.3	18.5	17.6	13.5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6

$X^2=6.816, p>.01$

<표 4-82> 응답자의 직업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홍보물 접촉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자 유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7.2	11.2	10.8	10.7	8.6		8.9	44
거의 없다	26.1	30.8	24.3	30.5	39.0	59.1	33.9	167
약간 있다	50.7	43.9	51.4	47.3	39.0	27.3	43.8	216
많은 편이다	15.9	14.0	13.5	11.5	13.3	13.6	13.4	6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3

$\chi^2=23.066, p<.01$

<표 4-83> 응답자의 소득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 홍보물 접촉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300만 - 400만	400만 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9.0	6.8	13.7	8.6	9.0	44
거의 없다	29.2	37.5	36.8	27.6	33.7	165
약간 있다	44.4	44.8	40.0	48.3	44.2	216
많은 편이다	17.4	10.9	9.5	15.5	13.1	6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89

$\chi^2=10.517, p>.01$

<표 4-84>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홍보 전단지 접촉 경험 관련성

단위: 명, %

성매매 홍보물 접촉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부유한 편이다	보통수준이다	가난한 편이다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5.9	10.3	8.2	9.1	45
거의 없다	38.7	31.6	36.7	33.8	168
약간 있다	42.9	44.7	38.8	43.7	217
많은 편이다	12.6	13.4	16.3	13.5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7

$\chi^2=4.111, p>.01$

다음으로 본 연구는 친구 혹은 동료로부터 성매매 관련 경험담을 들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 4-85>에서부터 <표 4-91>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혼인상태, 그리고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응답자의 종교와 가정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4-85>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젊은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을 청취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동료나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는 20대 남성이 34.8%로 50대 남성의 11.9%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50대가 57.2%로 20대 남성의 16.9%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았다.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동료나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 청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4-86>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거나 낮은 사람이 중간 수준인 사람보다 경험이 많았다. 예를 들면, 동료 혹은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들어본 사람들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과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각각 68.3%와 71.6%로서 전문대학교 학력의 남성 47.9%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그런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서는 전문대학 학력의 남성이 52.1%로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과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의 31.7%와 28.5%에 비해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4-85> 성인 남성의 연령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율	빈도
전혀 없다	8.9	8.5	14.0	17.9	11.8	59
거의 없다	8.0	22.2	25.3	39.3	22.8	114
약간 있다	48.2	44.4	41.3	31.0	42.1	210
많은 편이다	34.8	24.8	19.3	11.9	23.2	11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99

$X^2=42.490, p<.001$

<표 4-86>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	교육수준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0.6	16.7	10.7	11.8	59
거의 없다	17.9	35.4	21.0	22.8	114
약간 있다	49.7	30.2	42.1	42.1	210
많은 편이다	21.9	17.7	26.2	23.2	11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9

$\chi^2=18.605, p>.05$

<표 4-87> 응답자의 종교와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0.6	13.0	11.8	59
거의 없다	20.8	24.8	22.8	114
약간 있다	40.4	43.7	42.1	210
많은 편이다	28.2	18.5	23.2	116
합 계	100.0	100.0	100.0	499

$\chi^2=6.792, p>.01$

<표 4-87>은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 청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미혼자의 경우 경험이 많은 반면 기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었다. 예를 들면,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많이 들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미혼남성이 33.8%로 기혼남성의 19.5%에 비해 15% 정도 많았으며, 반면에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는 기혼 남성이 40.2%로 미혼남성의 16.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직업에 따른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 청취 관련성을 분석한 <표 4-88>에 의하면, 전문자유직과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경험이 적은 반면 나머지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는 생산기술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36.2%로 전문자유직과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 11.4%와 18.3%에 비해 2-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동료 및 친구의 성매매 경험담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중에는 전문자유직과 경영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각각 54.6%와 45.2%로서 생산기술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 23.1%와 26.8%에 비해 2배 혹은 20% 이상 많았다.

<표 4-88> 응답자의 혼인상태와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비율	빈도
전혀 없다	12.2	22.2	9.2	11.9	59
거의 없다	28.0	33.3	7.7	22.5	112
약간 있다	40.2	29.6	49.3	42.3	210
많은 편이다	19.5	14.8	33.8	23.3	11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7

$X^2=35.510, p<.01$

<표 4-89> 응답자의 직업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비율	빈도
전혀 없다	7.2	11.1	10.8	12.2	12.5	182	11.8	58
거의 없다	15.9	22.2	16.2	16.8	32.7	364	22.9	113
약간 있다	40.6	45.4	54.1	43.5	36.5	341	42.0	207
많은 편이다	36.2	21.3	18.9	27.5	18.3	114	23.3	11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3

$X^2=28.343, p<.01$

<표 4-90> 응답자의 소득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 300만	300만 - 400만	400만 이상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3.9	12.0	12.5	6.9	12.1	59
거의 없다	18.1	27.2	25.0	19.0	23.1	113
약간 있다	36.8	44.0	25.0	19.0	23.1	204
많은 편이다	31.3	16.8	19.8	29.3	23.1	11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89

$\chi^2=15.382, p<.05$

<표 4-91> 응답자의 가정생활과 동료/친구의 성매매 경험 청취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부유한 편이다	보통수준 이다	가난한 편이다	비 율	빈 도
전혀 없다	10.2	12.1	14.3	11.9	59
거의 없다	26.3	21.5	20.4	22.5	112
약간 있다	39.0	44.8	32.7	42.3	210
많은 편이다	24.6	21.5	32.7	23.3	11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7

$\chi^2=5.790, p>.05$

제 5 장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 제 2 절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분석

제 5 장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제 1 절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1. 성매매예방 시행과 특별단속의 인식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앞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여성단체 또한 각종 행사와 학술활동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박민, 2004; 송경숙, 2004; 전북여성단체연합, 2004).

정부와 여성단체의 성매매방지법 정착을 위한 노력은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특별단속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인 남성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인 남성은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이 2005년 9월 이후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65.5%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이들 가운데 18.1%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7.4%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잘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8.0%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도 26.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1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도 60.1%로 높게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20%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40.1%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에 대해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15.8%로 많지 않았지만,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남성도 24.5%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성인 남성 가운데 과반수가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정부의 특별단속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 즉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특별단속을 모르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남성이 각각 34.5%와 40%를 차지하여 이들 남성에게 대한 홍보강화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1>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및 특별단속 이해 정도

단위 : %, 명

내 용	인식정도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저 그렇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 계
방지법 인식		18.1	47.4	26.5	6.4	1.6	100.0(502)
특별단속 인식		20.0	40.1	24.2	13.2	2.6	100.0(502)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정부의 특별단속이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 5-2>에서부터 <표 5-15>에 걸쳐 분석하였다.

먼저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혼인 상태, 소득수준, 그리고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종교 및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2>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남성이 나이가 많은 남성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20-30대가 각각 19.6%와 22.9%로서 50대 남성의 8.3%에 비해 2-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는 50대 남성이 9.6%로서 20대 남성 4.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5-3>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잘 알고 있는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24.1%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10.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11.1%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3.6%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표 5-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방지법 이해 수준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잘 알고 있다	19.6	22.9	17.6	8.3	18.1	9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4.5	43.1	40.5	58.3	47.4	238
그저 그렇다	21.4	22.9	35.3	23.8	26.5	133
잘 모른다	4.5	11.5	6.5	9.6	8.0	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2

$\chi^2=28.215, p<.01$

<표 5-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방지법 이해수준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이상	
잘 알고 있다	10.5	14.6	24.1	18.1(9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5.8	46.9	48.6	47.4(238)
그저 그렇다	32.7	24.0	23.7	26.5(133)
잘 모른다	11.1	14.6	3.6	8.0(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chi^2=27.741, p<.001$

<표 5-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방지법 이해수준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잘 알고 있다	17.3	18.9	18.1(9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8	48.0	47.4(238)
그저 그렇다	27.8	25.2	26.5(133)
잘 모른다	8.1	7.9	8.0(40)
합 계	100.0	100.0	100.0(502)

$\chi^2=542, p>.05$

다음으로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5-5>에 의하면, 미혼남성과 기혼남성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혼이나 사별상태의 남성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기혼과 미혼이 각각 18.8%와 16.2%로 이혼 혹은 사별 남성의 11.1%에 비해 약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상태의 남성이 15.9%로 미혼이나 기혼상태의 남성 6.3%와 7.3%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5-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방지법 이해수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잘 알고 있다	18.8	11.1	16.2	17.7(8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4.7	48.1	54.2	47.6(237)
그저 그렇다	29.2	14.8	23.2	26.7(133)
잘 모른다	7.3	15.9	6.3	68.0(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8)

$X^2=26.467$, $p<.001$

<표5-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방지법 이해수준	직업의 범주						합 계
	가능직/생산직/숙련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잘 알고 있다	15.9	14.8	16.2	18.9	22.6	11.4	17.5(8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7.8	51.9	37.8	47.7	43.4	59.1	48.0(238)
그저 그렇다	26.1	25.9	29.7	26.5	28.3	22.7	26.6(132)
잘 모른다	10.1	7.4	16.2	6.9	5.7	6.8	7.9(3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6)

$X^2=18.900$, $p>.05$

끝으로 남성의 소득수준이나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서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인식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월평균 소득이 많거나 혹은 가정생활이 부유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40.7%로 200만원 이하의 남성 9.7%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가정생활 수준이 부유한 남성이 30.3%로 어려운 가정의 남성 16.0%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을 잘 모르는 경우는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8.4%로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1.7%에 비해 5배 정도 많았다.

<표 5-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방지법 이해수준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잘 알고 있다	9.7	16.1	17.7	40.7	17.5(8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4.2	52.8	43.8	23.7	48.0(236)
그저 그렇다	27.8	21.2	31.3	33.9	26.6(131)
잘 모른다	8.4	9.9	7.3	1.7	7.9(3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2)

$X^2=45.107$, $p<.001$

<표 5-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방지법 이해수준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잘 알고 있다	30.3	13.6	16.0	17.8(8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7.9	47.1	50.0	47.6(238)
그저 그렇다	16.0	29.9	30.0	26.6(133)
잘 모른다	5.9	9.4	4.0	8.0(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0)

$X^2=24.039$, $p<.01$

다음으로 정부가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맞춰 실시한 특별단속에 대한 남성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9>에서부터 <표 5-15>에 거쳐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단지 남성의 종교와 가정생활 수준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성의 연령에 따른 성매매특별법 인식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표 5-9>에 의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 비교적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정부의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30대 남성이 26.8%로 50대 남성 11.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20대와 40대는 비슷하게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5-10>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특별단속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성매매특별단속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60.0%로서 고졸 이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47.4%에 비해 13% 정도 많았다. 반면에 특별단속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23.7%로서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11.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5-9>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수준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잘 알고 있다	18.8	26.8	18.4	11.9	20.0	1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4	37.3	36.8	42.9	40.1	201
그저 그렇다	20.5	17.0	28.3	34.5	24.2	121
잘 모른다	14.3	18.9	16.5	10.7	15.8	78
전혀 모른다	2.7	2.6	3.3	1.2	2.6	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1

$X^2=20.383$, $p<.05$

<표 5-10>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수준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잘 알고 있다	12.5	13.5	16.9	20.0(1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4.9	40.6	43.1	40.1(201)
그저 그렇다	28.9	30.2	19.0	24.2(121)
잘 모른다	23.7	15.6	11.1	15.8(79)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1)

$X^2=29.615, p<.001$

<표 5-11>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수준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잘 알고 있다	20.6	19.4	20.0(1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6.3	43.9	40.1(201)
그저 그렇다	23.8	24.5	24.2(121)
잘 모른다	19.3	12.3	15.8(79)
합 계	100.0	100.0	100.0(501)

$X^2=6.215, p>.05$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정부의 특별단속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5-12>에 의하면, 기혼이나 미혼상태의 남성이 이혼이나 사별상태의 남성에 비해 정부의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기혼과 미혼남성이 각각 21.0%와 19.1%로 이혼이나 사별상태의 남성 14.8%에 비해 약간 많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는 전자가 각각 39.8%와 44.0%로서 후자의 18.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정부의 특별단속을 잘 모르고 있는 남성의 경우는 이혼/사별상태에 있는 남성이 33.3%로서 기혼이나 미혼상태의 남성 14.3%와 15.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5-12>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수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잘 알고 있다	21.0	14.8	19.1	20.1(1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9.8	18.5	44.0	39.8(198)
그저 그렇다	24.9	33.3	21.3	24.3(121)
잘 모른다	14.3	33.3	15.6	15.7(79)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7)

$\chi^2=23.124, p<.01$

그리고 남성의 직업이나 소득수준, 그리고 가정생활 수준에 따른 특별단속 인식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사무/기술직을 비롯하여 경영관리직 남성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비교적 많았고, 월평균 소득이 많은 남성이 적은 남성에 비해 가정생활이 부유한 남성이 가난한 남성보다 많았다.

먼저 <표 5-13>에 의하면, 정부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인식하고 있는 남성 중에는 경영전문직과 기술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각각 65.1%와 68.9%로서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47.3%와 50.0%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모르는 경우는 기능생산직 종사자를 비롯하여 판매서비스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18-23% 수준으로 사무/기술직이나 전문자유직 종사자 남성의 7-10%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월평균 소득이나 가정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39.0%로서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11.1%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았으며, 가정생활이 부유한 남성이 29.4%로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남성 12.0%에 비해 2.5배 정도 많았다.

<표 5-13>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수준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숙련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잘 알고 있다	14.5	20.4	16.7	18.9	28.3	9.1	19.6(97)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3.5	29.6	30.6	50.0	36.8	50.0	40.4(200)
그저 그렇다	18.8	32.4	22.2	21.2	20.8	34.1	24.4(121)
잘 모른다	23.1	17.6	20.5	9.8	14.2	6.8	15.5(7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5)

$X^2=40.929$, $p<.001$

<표 5-14>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수준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잘 알고 있다	11.1	16.7	25.0	39.0	19.3(9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6.5	41.1	34.4	30.5	40.1(197)
그저 그렇다	24.3	25.0	31.3	13.6	24.6(121)
잘 모른다	16.1	17.2	9.4	17.0	15.8(7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1)

$X^2=33.192$, $p<.001$

<표 5-15>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 특별단속 이해수준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잘 알고 있다	29.4	17.9	12.0	20.0(10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2.9	39.4	36.0	39.9(199)
그저 그렇다	13.4	26.4	36.0	24.2(121)
잘 모른다	10.1	1.2	14.0	13.2(66)
전혀 모른다	4.2	2.1	2.0	2.6(13)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9)

$X^2=19.954$, $p<.01$

2.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 분석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관심은 성매매방지법이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내용이 담야될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여성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기존 법률에 의한 성매매예방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다고 되풀이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서 발생한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불행하게도 수많은 성매매여성을 희생시켰고, 그들의 남긴 기록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자본권력에 의한 착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동안 여성단체가 제기했던 문제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는 성매매여성의 희생과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교환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숙연한 분위가 속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증거는 언론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논리를 거의 게재하지 않았으며, 특히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성매매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남성의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표 5-16>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인 남성의 지지를 분석한 것인데, 지지하는 남성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이나 특별단속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중에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54.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지만, 성매매방지법 실시와 그에 따른 특별단속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5-10% 정도 낮았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남성은 15.9%로 비교적 많지 않았다.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 지지에서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남성도 25.0%로 1/4를 차지하였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20%로 1/5 수준을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반대하는 응답자보다 많았지만, 반대하거나 혹은 찬반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남성 또한 45% 수준으로 많아 성매매방지법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5-16>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단위 : %, 명

지지 정도	적극 찬성	찬성	잘 모르겠다	반대	적극 반대	합 계
비 율	15.9	38.4	25.0	16.1	3.6	100.0(502)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반대로 지지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표 5-17>에서부터 <표 5-23>까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혼인상태,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반면에 남성의 교육수준과 종교, 그리고 가정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남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젊은 남성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50대 남성이 49.3%로 20대 남성 44.6%에 비해 약간 많았지만,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경우는 20대 남성이 30.4%로 40대 남성 12.6%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5-17>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방지법 지지정도	연 령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적극 찬성	10.7	17.6	20.7	12.0	16.0	80
찬 성	33.9	37.3	44.7	37.3	38.8	193
잘 모르겠다	25.0	24.2	22.0	33.7	25.3	126
반 대	27.7	15.7	9.3	14.5	16.3	81
적극 반대	2.7	5.2	3.3	2.4	3.6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98

$\chi^2=25.602, p<.01$

<표 5-18>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방지법지지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지지 정도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 율	빈 도
적극 찬성	17.9	16.8	14.7	16.1	80
찬성	37.7	38.9	39.3	38.8	193
잘 모르겠다	22.5	32.6	24.2	25.3	126
반대	17.2	9.5	18.3	16.3	81
적극 반대	4.6	2.1	3.6	3.6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8

$X^2=7.731, p>.01$

<표 5-19> 응답자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 정도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비 율	빈 도
적극 찬성	16.6	15.5	16.1	80
찬 성	33.2	44.2	38.8	193
잘 모르겠다	29.1	21.5	25.3	126
반 대	18.2	14.3	16.3	81
적극 반대	2.8	4.4	3.6	18
합 계	100.0	100.0	100.0	498

$X^2=8.836, p>.01$

다음으로 <표 5-20>에 의하면, 기혼남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미혼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는 기혼남성이 61.9%로 미혼남성의 43.2%에 비해 약 20%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남성 중에는 미혼남성이 28.8%로 기혼남성의 16.2%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성매매방지법 찬성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생산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양분되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는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사무기술직 종사자가 비

교적 많았으며, 자영업과 경영관리직 및 전문자유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남성의 소득수준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지지 차이를 분석한 <표 5-22>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많은 남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54.2%로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44.1%에 비해 10%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 남성과 200만원 미만의 남성이 각각 27.1%와 23.8%로서 월평균 200-4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20>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 정도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비 율	빈 도
적극 찬성	19.0	14.8	9.9	16.2	80
찬 성	42.9	18.5	33.3	38.9	192
잘 모르겠다	21.8	48.1	27.7	24.9	123
반 대	12.9	7.4	26.2	16.4	81
적극 반대	3.4	11.1	2.8	3.6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4

$X^2=34.572, p<.01$

<표 5-21>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 정도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숙련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비 율	빈 도
적극 찬성	20.3	18.5	11.4	18.2	10.5	14.0	16.1	79
찬 성	34.8	38.0	34.3	46.2	37.1	32.6	38.8	191
잘 모르겠다	14.5	23.1	25.7	18.9	34.3	46.5	25.4	125
반 대	21.7	17.6	28.6	13.6	15.2	4.7	16.3	80
적극 반대	8.7	2.8		3.0	2.9	2.3	3.5	1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2

$X^2=39.475, p<.01$

<표 5-22>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지지 정도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비 율	빈 도
적극 찬성	16.1	15.7	11.6	23.7	16.0	78
찬 성	28.0	46.1	46.3	30.5	38.9	190
잘 모르겠다	32.2	24.1	23.2	18.6	25.6	125
반 대	20.3	13.1	11.6	23.7	16.2	79
적극 반대	3.5	1.0	7.4	3.4	3.3	1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488

$X^2=30.313, p<.01$

<표 5-23>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관련성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 정도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비 율	빈 도
적극 찬성	17.1	15.8	16.0	16.1	80
찬 성	35.0	41.6	30.0	38.9	193
잘 모르겠다	23.9	25.2	26.0	25.0	124
반 대	19.7	14.3	22.0	16.3	81
적극 반대	4.3	3.0	6.0	3.6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496

$X^2=6.114, p>.01$

제 2 절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분석

본 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방지법의 추진방향을 비롯하여 그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등 3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1.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평가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이 어느 정도 적절하며,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24>와 같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중심의 성매매근절 정책에 대한 남성의 평가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36.9%로 1/3보다 약간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성매매집결지 중심으로 단속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21.1%로 적절하다고 평가한 남성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저 그렇다고 유보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는 42.0%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한 정부의 조치는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은 57.9%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리고 성매매 중개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남성은 73.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응답자가 29.5%로 많았다.

다른 한편, 성매매여성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남성과 성매매 관련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가 절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남성은 각각 14.6%와 7.0%로 많지 않았으며, 이들 가운데 정부정책을 강하게 부정하는 남성은 각각 1.4%와 1.0%로 극히 적었다. 그렇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남성의 경우 각각 27.5%와 19.6%로 비교적 많았다.

이상의 3가지 내용 가운데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정책 추진방향 및 성매매업주 처벌강화 내용이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5-24>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내용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책방향의 적절성	27	5.4	158	31.5	211	42.0	82	16.3	24	4.8	502	100.0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조치 도입 적절성	75	15.0	215	42.9	138	27.5	66	13.2	7	1.4	501	100.0
성매매 관련 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적절성	148	29.5	220	43.9	98	19.6	30	6.0	5	1.0	501	100.0

1) 정부의 성매매정책에 대한 평가

본 연구는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단속 중심의 정책이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5-25>에서부터 <표 5-31>에 거친 분석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혼인상태,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남성의 교육수준과 종교, 가정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남성의 연령에 따른 정부 정책평가 내용 차이를 분석한 <표 5-25>에 의하면 30-40대 연령 남성의 경우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20대와 40대 남성의 경우 비교적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단속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30-40대 남성이 각각 41.9%와 39.8%로서 20대의 33.9%와 50대의 26.2%에 비해 많았다. 반면에 정부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20대 남성이 31.2%로서 다른 연령층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표 5-25>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정책방향 적절성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정말 그렇다	.9	10.5	5.2	2.4	5.4	27
그렇다	33.0	31.4	34.6	23.8	31.5	158
그저 그렇다	34.8	39.2	41.2	58.3	42.0	211
그렇지 않다	24.1	15.0	13.7	13.1	16.3	82
전혀 그렇지 않다	7.1	3.9	5.2	2.4	4.8	2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2

$\chi^2=30.189, p<.01$

<표 5-26>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정책방향 적절성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정말 그렇다	5.9	5.2	5.1	5.4(27)
그렇다	32.0	36.5	29.2	31.5(158)
그저 그렇다	43.1	43.8	40.7	42.0(211)
그렇지 않다	14.4	8.3	20.6	16.3(82)
전혀 그렇지 않다	4.6	6.3	4.3	4.8(24)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2)

$\chi^2=8.915, p>.05$

<표 5-27>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정책방향 적절성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정말 그렇다	4.4	6.3	5.4(27)
그렇다	26.6	36.2	31.5(158)
그저 그렇다	45.6	38.6	42.0(211)
그렇지 않다	18.5	14.2	16.3(82)
전혀 그렇지 않다	4.8	4.7	4.8(24)
합 계	100.0	100.0	100.0(502)

$\chi^2=7.420, p>.05$

다음으로 <표 5-28>에 의하면,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혼 및 미혼남성이 이혼이나 사별상태에 있는 남성에 비해서 정부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집결지 단속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기혼 및 미혼남성이 각각 31.3%와 30.3%로서 이혼이나 사별상태에 있는 남성 14.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기능생산직을 비롯하여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사무기술직 종사자 그리고 전문자유직 종사자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정부의 성매매방지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자영업과 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정책 평가 차이를 분석한 <표 5-30>에 의하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정부정책을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소득이 많은 남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의 성매매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35.6%로 200-3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16.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300-4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41.7%로서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28.8%보다 10% 이상 많았다.

<표 5-28>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정책방향 적절성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기혼	
정말 그렇다	7.0	-	2.8	5.4(27)
그렇다	34.3	14.8	27.5	31.3(156)
그저 그렇다	41.6	66.7	38.7	42.2(210)
그렇지 않다	14.0	11.1	23.2	16.5(82)
전혀 그렇지 않다	3.0	7.4	7.7	4.6(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8)

$\chi^2=23.880, p<.01$

<표 5-29>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정책방향 적절성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자 유직	
정말 그렇다	10.1	6.5	2.7	6.1	.9	4.5	5.2(26)
그렇다	26.1	34.3	16.2	37.1	28.3	38.6	31.7(157)
그저 그렇다	44.9	38.9	51.4	35.6	46.2	50.0	42.3(210)
그렇지 않다	14.5	18.5	21.6	14.4	20.8	4.5	16.3(81)
전혀 그렇지 않다	4.3	1.9	8.1	6.8	3.8	2.3	4.4(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6)

$\chi^2=28.819, p<.05$

<표 5-30>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정책방향 적절성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300만	300만~ 400만	400만 이상	
정말 그렇다	3.5	6.7	6.3	3.4	5.3(26)
그렇다	31.9	31.1	35.4	25.4	31.5(155)
그저 그렇다	42.4	45.6	40.6	35.6	42.5(209)
그렇지 않다	18.1	12.4	15.6	25.4	16.3(80)
전혀 그렇지 않다	4.2	4.1	2.1	10.2	4.5(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2)

$\chi^2=15.268, p<.05$

<표 5-31>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방향 적절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정책방향 적절성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정말 그렇다	5.0	5.7	4.0	5.4(27)
그렇다	31.9	31.4	32.0	31.6(158)
그저 그렇다	3.7	44.7	34.0	42.0(210)
그렇지 않다	19.3	13.9	26.0	16.4(82)
전혀 그렇지 않다	5.9	4.2	4.0	4.6(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0)

$\chi^2=7.388, p>.05$

2)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정책 평가

다음으로 본 연구는 앞에서 분석한 성매매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로서 성매매 업주 처벌강화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아래의 <표 5-32>에서부터 <5-39>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종교, 그리고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남성의 직업과 소득, 그리고 가정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성매매업주 처벌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5-32>에 의하면, 젊은 남성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나이가 많은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정부의 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20대와 30대 남성이 86.5%와 75.2%로 50대 남성 60.7%보다 15-25% 정도 많았다. 반면에 정부의 성매매 업주처벌 강화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40대와 50대가 각각 7.2%와 13.1%로서 20-30대 남성의 3.6%와 5.9%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다음으로 <표 5-33>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정부의 성매매 업주처벌 강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가 성매매 업주의 처벌을 강화시킨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79.3%로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66.1%에 비해 13% 정도 많았다. 반면에 정부의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7.9%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6.4%에 비해 약간 많았다.

그리고 <표 5-34>와 <표 5-35>에 의하면 남성의 종교와 혼인상태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혼인상태에 있어서 미혼과 기혼남성의 경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이혼이나 사별상태에 있는 남성의 경우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미혼과 기혼남성이 각각 80.2%와 72.6%로 이혼이나 사별상태에 있는 남성 48.1%에 비해 20-30% 이상 많았다. 그렇지만 정부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이혼이나 사별상태에 있는 남성이 22.2%로서 기혼 및 미혼남성의 5% 수준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표 5-32>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단위 : 명, %

성매매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그렇다	29.7	38.6	26.1	19.0	29.5(148)
그렇다	56.8	36.6	43.1	41.7	43.9(220)
그저 그렇다	9.9	19.0	23.5	26.2	19.6(98)
그렇지 않다	3.6	3.9	6.5	11.9	6.0(30)
전혀 그렇지 않다		2.0	.7	1.2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501)

$X^2=32.403, p<.001$

<표 5-33>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단위 : 명, %

성매매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정말 그렇다	28.8	20.8	33.3	29.5(148)
그렇다	37.3	49.0	46.0	43.9(220)
그저 그렇다	26.1	22.9	14.3	19.6(98)
그렇지 않다	7.2	7.3	4.8	6.0(30)
전혀 그렇지 않다	.7		1.6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1)

$X^2=16.899, p<.05$

<표 5-34>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단위 : 명, %

성매매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정말 그렇다	27.9	31.1	29.5(148)
그렇다	42.9	44.9	43.9(220)
그저 그렇다	23.9	15.4	19.6(98)
그렇지 않다	5.3	6.7	6.0(30)
전혀 그렇지 않다		2.0	1.0(5)
합 계	100.0	100.0	100.0(501)

$X^2=10.486, p<.05$

<표 5-35>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단위 : 명, %

성매매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정말 그렇다	31.9	11.1	27.7	29.6(147)
그렇다	40.7	37.0	52.5	43.9(218)
그저 그렇다	20.7	29.6	14.9	19.5(97)
그렇지 않다	5.5	18.5	5.0	6.0(30)
전혀 그렇지 않다	1.2	3.7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7)

$X^2=21.47, p<.01$

<표 5-36>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단위 : 명, %

성매매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정말 그렇다	37.7	29.6	29.7	31.1	25.7	18.2	29.3(145)
그렇다	34.8	42.6	32.4	48.5	48.6	45.5	43.8(217)
그저 그렇다	17.4	24.1	27.0	14.4	19.0	25.0	19.8(98)
그렇지 않다	8.7	3.7	8.1	5.3	4.8	11.4	6.1(30)
전혀 그렇지 않다	1.4		2.7	.8	1.9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5)

$X^2=20.640, p>.05$

<표 5-37>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단위 : 명, %

성매매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정말 그렇다	25.9	23.8	37.5	45.8	29.7(146)
그렇다	44.8	48.2	40.6	33.9	44.0(216)
그저 그렇다	20.3	21.8	16.7	15.3	19.6(96)
그렇지 않다	7.7	6.2	4.2	3.4	5.9(29)
전혀 그렇지 않다	1.4		1.0	1.7	.8(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1)

$X^2=18.633, p>.05$

<표 5-38>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수준과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관련사업 업주처벌에 대한 평가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못사는 편이다	
정말 그렇다	32.2	29.0	28.0	29.7(148)
그렇다	37.9	46.5	42.0	43.9(219)
그저 그렇다	18.6	20.2	16.0	19.4(97)
그렇지 않다	10.2	3.6	12.0	6.0(30)
전혀 그렇지 않다	1.7	.6	2.0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9)

$\chi^2=13.636, p>.05$

2. 성매매방지법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정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목적은 일차적으로 성매매의 축소 및 예방에 있으며, 그 다음은 기존의 성문화를 변화시켜 건전한 가족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아래 <표 3-39>와 같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로서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성매매 감소, 성매매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가족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추진효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 효과적으로 성매매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14.0%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53.6%로 과반수르 차지하였다. 여기에 그저 그렇다고 유보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32.4%로 1/3 수준을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평가와 가족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에서도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은 24.8%인데 비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36.2%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더욱이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도 39.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궁극적으로 여가와 가족문화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이 28.0%를 차지하였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은 33.5%로 보다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응답자도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3가지 긍정적인 기대효과 내용 가운데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추진효과 및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5-39>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평 가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5	1.0	65	13.0	162	32.4	234	46.8	34	6.8	500	100.0		
정부의 성매매방지 정책은 성공적이다	24	4.8	100	20.0	196	39.1	122	24.4	59	11.8	501	100.0		
가족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다	28	5.6	112	22.4	193	38.5	126	25.1	42	8.4	501	100.0		

1)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 감소 효과 분석

앞에서 분석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성매매의 감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매매방지법의 추진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성인 남성의 평가에 의하면 긍정보다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결과가 성인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아래 <표 5-40>에서 <표 5-46>까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혼인상태, 직업, 소득수준, 그리고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 그 평가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표 5-40>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남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 성매매 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성매매방지법의 추진과 더불어 성매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20대 남성이 69.4%로 40-50대 남성의 47.0%와 47.7%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반면에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40-50대 남성이 각각 52.9%와 52.45%로서 20대 남성 30.6%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표 5-40>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연 령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비 율	빈 도
정말 그렇다	14.9	8.6	3.9	6.0	6.8	34
그렇다	54.5	47.7	43.1	41.7	46.8	234
그저 그렇다	20.9	30.5	36.6	36.9	32.4	162
그렇지 않다	9.7	13.2	16.3	15.5	14.0	7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chi^2=19.04, p<.05$

<표 5-41>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정말 그렇다	5.3	4.2	8.7	6.8(34)
그렇다	44.1	50.0	47.2	46.8(234)
그저 그렇다	37.5	35.4	28.2	32.4(162)
그렇지 않다	12.5	8.3	15.1	13.0(65)
전혀 그렇지 않다	.7	2.1	.8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0)

$\chi^2=10.14, p>.05$

<표 5-42> 성인 남성의 종교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정말 그렇다	7.7	5.9	6.8(34)
그렇다	44.5	49.0	46.8(234)
그저 그렇다	35.6	29.2	32.4(162)
그렇지 않다	10.9	15.0	13.0(65)
전혀 그렇지 않다	1.2	.8	1.0(5)
합 계	100.0	100.0	100.0(500)

$\chi^2=4.508, p>.05$

다음으로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를 분석한 <표 5-43>에 의하며, 기혼이나 미혼남성이 이혼이나 사별상태에 있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추진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기혼과 미혼남성이 각각 51.2%와 64.5%로서 이혼 및 사별상태에 있는 남성의 33.3%에 비해 20-30% 이상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직업과 소득수준, 그리고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서도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에 대한 평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판매서비스직 종사자를 비롯하여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사무기술직 종사자가 성매매방지법의 추진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과 가정생활 수준이 낮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성매매를 감소시켜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사무기술직이 각각 58.8%로서 전문자유직 종사자의 43.2%에 비해 15% 정도 많았고, 2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59.0%로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50.9%에 비해 8% 정도 많았고,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남성이 56.0%로서 부유한 남성 45.4%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의 추진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전문자유직 종사남성이 25.0%로 생산기술직 종사자 7.2%보다 3배 이상 많았고, 400만원 월평균 소득이 있는 남성이 30.5%로 200만원 미만의 남성 6.9%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표 5-43>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정말 그렇다	5.5	3.7	10.6	6.9(34)
그렇다	45.7	29.6	53.9	47.2(234)
그저 그렇다	32.3	51.9	28.4	32.3(160)
그렇지 않다	15.2	14.8	7.1	12.9(64)
전혀 그렇지 않다	1.2			.8(4)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6)

$\chi^2=18.571, p<.01$

<표 5-44>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정말 그렇다	5.8	3.7	10.8	8.4	9.4	2.3	6.9(34)
그렇다	44.9	55.1	40.5	50.4	39.6	40.9	46.8(231)
그저 그렇다	42.0	29.9	32.4	29.0	34.0	31.8	32.6(161)
그렇지 않다	7.2	11.2	10.8	11.5	16.0	25.0	13.0(64)
전혀 그렇지 않다			5.4	.8	.9		.8(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4)

$\chi^2=31.307, p<.05$

<표 5-45>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정말 그렇다	6.9	6.8	6.3	5.1	6.5(320)
그렇다	52.1	44.3	45.3	45.8	46.9(230)
그저 그렇다	34.0	34.9	35.8	18.6	32.9(161)
그렇지 않다	6.9	11.5	12.6	30.5	12.7(62)
전혀 그렇지 않다		2.6			1.0(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0)

$\chi^2=32.158, p<.001$

<표 5-46>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방지법 추진효과 기대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방지법 추진효과가 클 것이다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사는 편이다	
정말 그렇다	4.2	7.9	6.0	6.8(34)
그렇다	41.2	48.6	50.0	47.0(234)
그저 그렇다	28.6	34.3	28.0	32.3(161)
그렇지 않다	24.4	8.8	14.0	13.1(65)
전혀 그렇지 않다	1.7	.3	2.0	.8(4)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8)

$\chi^2=23.466, p<.01$

2)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적 추진 기대효과 평가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5-47>에서부터 <표 5-53>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결혼지위, 직업과 가정생활 수준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성의 교육수준과 종교, 그리고 소득수준의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표 5-47>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남성일수록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50대 남성이 33.4%로 20대 남성의 16.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이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20대가 46.4%로 40대와 50대 남성의 30.3%와 29.8%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그렇지만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적인 추진 평가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런데 <표 5-48>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을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대학교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41.1%로서 고졸 이하의 남성 34.9%에 비해 6% 정도 많았다.

<표 5-47>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다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그렇다	2.7	5.9	5.3	4.8	4.8(24)
그렇다	13.4	20.9	19.1	28.6	20.0(100)
그저 그렇다	37.5	35.3	45.4	36.9	39.1(196)
그렇지 않다	33.9	20.9	21.1	23.8	24.4(122)
전혀 그렇지 않다	12.5	17.0	9.2	6.0	11.8(5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501)

$X^2=21.952, p<.05$

<표 5-48>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다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정말 그렇다	5.9	6.3	3.6	4.8(24)
그렇다	21.1	21.9	18.6	20.0(100)
그저 그렇다	38.2	46.9	36.8	39.1(196)
그렇지 않다	26.3	15.6	26.5	24.4(122)
전혀 그렇지 않다	8.6	9.4	14.6	11.8(59)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1)

$X^2=11.286, p>.05$

<표 5-49>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다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정말 그렇다	3.6	5.9	4.8(24)
그렇다	17.8	22.0	20.0(100)
그저 그렇다	43.3	35.0	39.1(196)
그렇지 않다	21.5	27.2	24.4(122)
전혀 그렇지 않다	13.8	9.8	11.8(59)
합 계	100.0	100.0	100.0(501)

$X^2=7.968, p>.05$

다음으로 <표 5-50>은 남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인데, 기혼남성은 성공적으로 평가한 반면 미혼남성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기혼남성이 29.6%로 미혼남성의 14.1%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중에는 미혼남성이 48.6%로서 기혼남성 30.5%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표 5-51>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전문자유직 종사자가 50.0%로 기능생산직 종사자의 24.3%보다 2배 정도 많은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중에는 자영업과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각각 43.2%와 41.6%로 전문자유직에 종사하는 남성 11.4%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남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공적 정책 평가에 대한 <표 5-52>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남성이 45.7%로 200-300만원의 월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29.6%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표 5-53>에 의하면, 가정생활이 어려운 남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공적 추진에 다소 부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중에는 가족생활이 어려운 남성이 44.4%로서 부유한 남성의 35.8%에 비해 약 10% 정도 많았다.

<표 5-50>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다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정말 그렇다	6.4	3.7	1.4	4.8(24)
그렇다	23.2	14.8	12.7	19.7(98)
그저 그렇다	39.9	40.7	37.3	39.2(195)
그렇지 않다	20.7	25.9	33.1	24.5(122)
전혀 그렇지 않다	9.8	14.8	15.5	11.7(58)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7)

$X^2=20.498$, $p<.001$

<표 5-51>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다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정말 그렇다	8.8	5.6	5.4	2.3	.9	9.1	4.4(220)
그렇다	23.5	16.7	10.8	17.4	19.8	40.9	20.2(100)
그저 그렇다	25.0	44.4	40.5	38.6	45.3	38.6	39.6(196)
그렇지 않다	23.5	24.1	29.7	28.0	24.5	9.1	24.2(120)
전혀 그렇지 않다	19.1	9.3	13.5	13.6	9.4	2.3	11.5(5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5)

$X^2=41.118, p<.001$

<표 5-52>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다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정말 그렇다	3.5	7.3	3.2	3.4	4.9(24)
그렇다	21.5	19.7	18.9	18.6	20.0(98)
그저 그렇다	32.6	43.5	45.3	32.2	39.3(193)
그렇지 않다	27.1	21.8	22.1	28.8	24.2(119)
전혀 그렇지 않다	15.3	7.8	10.5	16.9	11.6(5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1)

$X^2=15.374, p>.05$

<표 5-53>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 근절정책 성공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에 성공적이다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사는 편이다	
정말 그렇다	4.2	5.4	2.0	4.8(24)
그렇다	25.2	16.9	28.6	20.0(100)
그저 그렇다	32.8	43.2	26.5	39.1(195)
그렇지 않다	29.4	23.3	20.4	24.4(122)
전혀 그렇지 않다	8.4	11.2	22.4	11.6(58)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90)

$X^2=18.521, p<.01$

3.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 및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방지법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비롯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함께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5-54>와 같다.

먼저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부족한 탓에 성매매여성이 생계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9.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3.0%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27.9%를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성매매 관련자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남성 또한 61.3%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0%로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남성은 20.8%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나 처벌 강화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77.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성매매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도 63.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성매매축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강화는 비교적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나 처벌강화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각각 9.2%와 12.6%로서 많지 않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남성은 각각 23.2%와 24.0%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매매방지법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향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 가운데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근절 불가 내용과 우리사회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5-55>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와 근절 대책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방지법 시행에 따른 성매매여성의 생계문제	58	11.6	238	47.5	140	27.9	55	11.0	10	2.0	501	100.0
처벌의 강화에도 성매매는 근절불가	88	17.6	219	43.7	104	20.8	78	15.6	12	2.4	501	100.0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139	37.8	199	39.8	116	23.2	36	7.2	10	2.0	500	100.0
성매매축소를 위한 처벌강화 필요	127	25.3	191	38.1	120	24.0	47	9.4	16	3.2	501	100.0

1)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 근절 불가 내용 분석

성매매방지법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남성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 5-56>에서부터 <표 5-62>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혼인상태,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남성의 교육수준과 종교, 직업과 가정생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표 5-56>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젊은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성매매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20-30대 남성이 75% 이상으로서 40-50대 남성의 50% 수준에 비해 25% 이상 많았고, 반대로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한 사람 중에는 50대 남성이 21.4%로 20대 남성의 11.7%에 비해 10% 정도 많았다.

<표5-56>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근절 불가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그렇다	27.0	15.7	17.0	9.5	17.6(88)
그렇다	46.8	51.0	34.6	42.9	43.7(219)
그저 그렇다	14.4	13.1	30.1	26.2	20.8(104)
그렇지 않다	7.2	19.0	16.3	19.0	15.6(78)
전혀 그렇지 않다	4.5	1.3	2.0	2.4	2.4(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501)

$\chi^2=37.925, p<.001$

<표 5-57>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근절 불가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정말 그렇다	15.0	10.4	21.8	17.6(88)
그렇다	45.1	41.7	43.7	43.7(219)
그저 그렇다	20.9	26.0	18.7	20.8(104)
그렇지 않다	17.0	17.7	13.9	15.6(78)
전혀 그렇지 않다	2.0	4.2	2.0	2.4(1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1)

$\chi^2=10.441, p>.05$

다음으로 <표 5-58>에 의하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근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의 처벌 강화가 성매매를 근절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를 갖고 있는 남성이 22.5%로 종교가 없는 남성 13.3%에 비해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5-58>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근절 불가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정말 그렇다	18.6	16.5	17.6(88)
그렇다	43.7	43.7	43.7(2190)
그저 그렇다	24.3	17.3	20.8(104)
그렇지 않다	10.5	20.5	15.6(78)
전혀 그렇지 않다	2.8	2.0	2.4(12)
합 계	100.0	100.0	100.0(501)

$\chi^2=11.589$, $p<.01$

<표 5-59>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근절 불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정말 그렇다	15.2	14.8	24.1	17.7(88)
그렇다	41.6	29.6	52.5	44.1(219)
그저 그렇다	23.1	40.7	10.6	20.5(102)
그렇지 않다	18.5	11.1	8.5	15.3(76)
전혀 그렇지 않다	1.5	3.7	4.3	2.4(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7)

$\chi^2=31.779$, $p>.05$

<표 5-60>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근절 불가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 생산직/ 숙련직	판매/ 서비스	자영업	사무직/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 자유직	
정말 그렇다	15.9	18.7	18.9	22.0	16.0	6.8	17.6(87)
그렇다	55.1	47.7	48.6	39.4	39.6	38.6	44.0(218)
그저 그렇다	14.5	20.6	13.5	20.5	26.4	27.3	21.0(104)
그렇지 않다	13.0	10.3	18.9	16.7	15.1	22.7	15.2(75)
전혀 그렇지 않다	1.4	2.7		1.5	2.8	4.5	2.2(1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5)

$\chi^2=20.035$, $p>.05$

그리고 <표 5-61>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수준의 사람이 가장 적게 50% 수준을 차지한 반면 나머지 남성은 65% 수준이 이상으로 비교적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근절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22.0%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은 14.6%로서 가장 적었다.

<표 5-61>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근절 불가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 이상	
정말 그렇다	19.4	11.5	19.8	23.7	16.9(83)
그렇다	47.9	39.6	49.0	42.4	44.2(217)
그저 그렇다	18.1	28.6	15.6	11.9	21.0(103)
그렇지 않다	10.4	18.8	13.5	20.3	15.5(76)
전혀 그렇지 않다	4.2	1.6	2.1	1.7	2.4(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1)

$\chi^2=24.935$, $p<.01$

<표 5-62>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근절 불가에 대한 평가 분석

단위 : %, 명

성매매근절 불가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사는 편이다	
정말 그렇다	17.6	18.5	12.0	17.6(88)
그렇다	42.9	42.7	54.0	43.9(219)
그저 그렇다	18.5	21.2	22.0	20.6(103)
그렇지 않다	19.3	15.2	8.0	15.4(77)
전혀 그렇지 않다	1.7	2.4	4.0	2.4(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9)

$\chi^2=6.461$, $p>.05$

2)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 분석

다른 한편,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성매매 축소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은 어떤 남성이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표 5-63>에서부터 <표 5-69>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 평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표 5-63>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남성이 많은 남성에 비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30대와 20대가 각각 73.0%와 68.7%로 40대 및 50대 남성의 63% 수준에 비해 10-15% 정도 많았다.

다음으로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한 평가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 71.8%로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 55.2%에 비해 15% 이상 많았으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남성은 68.4%로 중간 수준을 차지하였다.

<표 5-63> 성인 남성의 연령과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단위 : %, 명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연령의 범주화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정말 그렇다	24.1	38.8	26.1	15.7	27.8(139)
그렇다	44.6	34.2	37.3	48.2	39.8(1990)
그저 그렇다	19.6	19.1	29.4	24.1	23.2(1160)
그렇지 않다	9.8	5.3	5.2	10.8	7.2(36)
전혀 그렇지 않다	1.8	2.6	2.0	1.2	2.0(1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500)

$\chi^2=24.411$, $p<.01$

<표 5-64> 성인 남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추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 단속 희망

단위 : %, 명

성매매추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정말 그렇다	25.0	19.8	32.5	27.8(139)
그렇다	43.4	35.4	39.3	39.8(1990)
그저 그렇다	23.0	35.4	18.7	23.2(116)
그렇지 않다	7.9	7.3	6.7	7.2(36)
전혀 그렇지 않다	.7	2.1	2.8	2.0(10)
합 계	100.0	100.0	100.0	100.0(500)

$X^2=16.396, p<.05$

<표 5-65> 성인 남성의 종교와 성매매추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단위 : %, 명

성매매추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종교의 분류		합 계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정말 그렇다	24.4	31.1	27.8(139)
그렇다	38.6	40.9	39.8(199)
그저 그렇다	27.6	18.9	23.2(116)
그렇지 않다	6.5	7.9	7.2(36)
전혀 그렇지 않다	2.8	1.2	2.0(10)
합 계	100.0	100.0	100.0(500)

$X^2=8.391, p>.05$

<표 5-66> 성인 남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추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단위 : %, 명

성매매추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정말 그렇다	31.4	7.4	22.7	27.6(137)
그렇다	38.7	37.0	44.0	40.1(1990)
그저 그렇다	22.3	40.7	22.0	23.2(115)
그렇지 않다	6.1	11.1	9.2	7.3(36)
전혀 그렇지 않다	1.5	3.7	2.1	1.8(9)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6)

$X^2=14.143, p>.05$

그리고 남성의 직업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 평가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표 5-67>에 의하면,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그리고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70% 이상으로 전문자유직 종사자 50.0% 혹은 자영업 종사자 50.3%, 그리고 기능생산직 종사자 62.3%에 비해 10-20%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21.6%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68>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많은 남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성매매 단속 필요성에 긍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300-400만원 혹은 400만원 이상인 사람이 각각 78.2%와 75.9%로서 2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 59.7%에 비해 15-20%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부 단속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5-67> 성인 남성의 직업과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단위 : %, 명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직업의 범주						합 계
	기능직/생산직	판매/서비스	자영업	사무직/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자유직	
정말 그렇다	29.0	26.2	21.6	31.8	29.5	18.2	27.7(137)
그렇다	33.3	45.8	29.7	43.2	41.0	31.8	39.9(197)
그저 그렇다	21.7	19.6	32.4	19.7	20.0	45.5	23.3(115)
그렇지 않다	11.6	8.4	10.8	3.8	7.6	4.5	7.3(36)
전혀 그렇지 않다	4.3	8.4	10.8	3.8	7.6		1.8(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494)

$\chi^2=32.369, p<.05$

<표 5-68> 성인 남성의 소득과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단위 : %, 명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소득의 범주				합 계
	200만 미만	200만~ 300만	300만~ 400만	400만 이상	
정말 그렇다	19.4	27.1	31.3	43.1	27.6(135)
그렇다	40.3	39.6	46.9	32.8	40.4(198)
그저 그렇다	29.9	24.5	16.7	12.1	23.1(1130)
그렇지 않다	7.6	7.8	4.2	8.6	7.1(35)
전혀 그렇지 않다	2.8	1.0	1.0	.4	1.8(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490)

$\chi^2=22.724, p<.05$

<표 5-69> 성인 남성의 가정생활과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 희망

단위 : %, 명

성매매축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가정생활의 범주			합 계
	잘사는 편이다	보통이다	못사는 편이다	
정말 그렇다	32.2	27.3	22.0	27.9(139)
그렇다	30.5	43.9	36.0	40.0(1990)
그저 그렇다	26.3	20.6	32.0	23.1(115)
그렇지 않다	9.3	6.7	6.0	7.2(36)
전혀 그렇지 않다	1.7	1.5	4.0	1.8(9)
합 계	100.0	100.0	100.0	100.0(498)

$\chi^2=11.171, p>.05$

제 6 장

남성의 성매매 의식과 행위변화 분석

- 제 1 절 남성의 성매매 의식변화 분석
- 제 2 절 남성의 성매매 행위 변화 분석

제 6 장 남성의 성매매 의식과 행위변화 분석

제 1 절 남성의 성매매 의식변화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정부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성매매 근절 필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협력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성인 남성의 성매매 관련 의식을 파악하는 한편, 남성의 성매매 관련 의식이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하였다.

1. 성매매 인식에 대한 주요 차원 결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매매 의식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성매매 의식 문항과 본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을 합해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30개 문항을 사용하여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의식 척도를 구성하였다.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30개 문항을 이용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먼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rotation)에서 고유치(Eigenvalues)가 1인 넘는 요인이 8개 추출되었지만 요인분석에서 .5 이상으로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성매매의식 척도 6가지 요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6개 요인 모두 신뢰도 분석에서 .5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도 확보되었다.

이상과 같이 <표 6-1>은 22개 성매매 의식 관련 문항을 이용하여 6개 하위척도를 구성한 결과이다. 성매매의식 하위 척도에는 성구매 정당성에 관한 요인, 여성도 성구매가 가능하다는 여성 성구매 요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구매가 가능하다는 업무성 요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피해자라는 성매매여성 피해성 요인, 주변에서

성구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접근성 요인, 그리고 성매매가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발성 등 6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남성의 성매매 의식 척도 6가지 요인에 의한 설명분산은 49.43%를 차지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모두 .5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매매 의식 관련 6가지 하위척도를 이용하여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 척도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성매매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6-1> 성매매 의식 내용,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

성매매 관련 내용	정당성	여성 성구매	업무성	피해성	접근성	자발성
돈을 주고받는 것이니 정당하다	.651	.098	.123	.263	.147	.071
돈을 버는 것이니 직업으로 인정	.570	.262	.136	.363	.047	.021
독신자의 성욕구 해소에 도움이 된다	.535	.283	.116	.189	.206	.293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630	.231	.291	.116	.244	.135
사회생활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	.522	.180	.385	.029	.210	.043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671	-.028	.053	.004	-.019	.037
여자도 남자접대부 술집에 갈 수 있다	.174	.696	.089	.077	.202	.093
여자도 스트레스 해소로 성구매 가능.	.143	.780	.153	.029	.072	.021
독신 여성의 성구매 가능하다	.230	.558	.059	.065	.398	.183
접대하는 것도 능력이다	.225	.159	.721	.029	.172	.065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접대가 필요하다	.214	.188	.750	.029	.174	.077
술자리는 애사심/동료애를 높여준다	.062	-.012	.699	.046	.184	.048
성매매는 인간 존엄성을 파괴한다	.179	.089	-.043	.594	.083	.051
성매매는 범죄행위이다	.244	.090	.051	.737	.114	.154
성매매여성은 가부장문화의 피해자이다	-.035	.209	.062	.606	.015	.001
성매매알선자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	.013	.247	.098	.527	.042	.344
원할 때 성구매를 쉽게 할 수 있다	.315	-.041	.294	.108	.591	.016
성구매 장소를 잘 알고 있다	.090	.208	.194	-.031	.718	.031
유흥업소의 이용이 신분 승기기에 쉽다	.048	.280	.133	.074	.549	.067
성매매는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다	.042	.343	.278	.071	.185	.555
성매매는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108	.192	.104	.108	.033	.735
성매매여성의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342	.016	.109	-.042	-.075	.495
고유치(Eigenvalues)	6.53	2.34	1.86	1.52	1.31	1.27
설명분산(%)	21.77	7.80	6.19	5.07	4.36	4.23
신뢰도(Cronbach's Alpha)	.754	.730	.607	.640	.570	.567

2.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 변화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인 남성의 성매매 의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표 5-1>의 요인분석을 나타난 성매매 의식 6가지 내용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먼저 성매매 의식 가운데 성매매의 정당성에 대한 의식과 관련하여 성인 남성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6-2>와 같다.

먼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인 남성의 성매매 정당성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성매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35.8%가 성매매 행위가 하나의 직업이나 돈에 의해 거래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수용한 반면, 45.9%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3%는 성매매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러한 성매매 의식에는 약간 변화가 발견되는데 성매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성매매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응답자는 이전에 비해 4.7%가 증가하여 23.0%로 늘어난 반면, 성매매를 인정하는 성인 남성의 비율은 3.4%가 감소하여 31.4%를 차지하였으며, 중립적인 태도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이 비슷하였다.

<표 6-2>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정당성 의식 변화

단위 : 명, %

정당성 의식 수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90	18.3	113	23.0
그저 그렇다	226	45.9	224	45.6
그렇다	176	35.8	154	31.4
합 계	492	100.0	491	100.0

다른 한편, 전체 응답자의 성매매 정당성 의식에 있어 응답자 개인의 변화 상태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긍정하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성매매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이 28.6%로 성매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 13.7%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다수인 57.7%는 성매매의 정당성 인식과 관련하여 이전의 생각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 없이 비슷한 생각을 유지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성매매 정당성을 수용하고 있거나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표 6-3>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남성의 성구매 정당성 의식 변화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정당성 의식 변화 상태	구 분	빈 도	비 율
긍정에서 부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140	28.6
비슷하다		283	57.7
부정에서 긍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67	13.7
합 계		490	100.0

다음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여성의 경우 성매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남성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4>와 같다.

먼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여성의 성구매 허용과 관련해서 남성은 부정하는 것보다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성도 남성과 같이 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남성이 48.7%로 허용하지 않은 남성 19.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남성은 31.8%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여성의 성구매 허용에 변화가 발견되고 있는데, 여성의 성구매를 허용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부정하는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즉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을 인정하는 남성은 이전에 비해 2.9% 감소하여 45.8%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여성의 성구매를 부정하는 비율은 1.5% 증가하

여 21.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남성 또한 이전에 비해 1.5% 증가하여 33.3%를 차지하였다.

<표 6-4>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 의식 변화

단위 : 명, %

여성의 성구매 허용	시기 구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97	19.5	104	21.0
그저 그렇다		158	31.8	165	33.3
그렇다		242	48.7	227	45.8
합 계		497	100.0	496	100.0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과 관련하여 남성 개인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면 그 결과는 <표 6-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즉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전환이 있었던 남성이 16.0%로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을 허용하는 남성 11.1%에 비해 약간 많았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던 남성은 72.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6-5>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여성 성구매 가능성 변화 분석

단위 : 명, %

여성의 성구매 허용 의식 변화	구분	빈도	비율
긍정에서 부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79	16.0
비슷하다		361	72.9
부정에서 긍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55	11.1
합 계		495	100.0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업무과정에서 성매매에 대한 의식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 <표 6-6>에 의하면, 과 같다.

먼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매매에 업무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55.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업무과정에서 성매매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응답자는 25.4%로 1/2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19.5%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업무과정에서 성구매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약간 증가한 반면 인정하는 사람은 약간 감소하였다. 예를 들면, 업무과정에서 성구매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29.6%로 성매매방지법 이전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반면 업무과정에서 성구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52.0%로 이전에 비해 3.2% 감소하였다.

<표 6-6>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업무성 의식 변화

단위 : 명, %

성매매 업무성 의식 수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125	25.4	145	29.6
그저 그렇다	96	19.5	90	18.4
그렇다	272	55.2	255	52.0
합 계	493	100.0	490	100.0

<표 6-7>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매매가 업무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의식에 있어 성인 개인의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성매매의 업무성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가 업무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응답자가 16.0%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꾼 응답자 11.5%에 비해 4.5% 많았다.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72.5%로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다수는 성매매의 업무상 불가피성을 인정하거나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표 6-7>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남성의 성구매 업무성 의식 변화 분석

단위 : 명, %

구 분	빈도	비율
성매매 업무성 의식 변화 상태		
긍정에서 부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78	16.0
비슷하다	353	72.5
부정에서 긍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56	11.5
합 계	487	100.0

<표 6-8>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매매의 접근 용이성 의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매매 접근 용이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44.5%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20.9%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그 동안 성구매가 주변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응답자는 34.6%로 1/3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접근 용이성을 긍정하는 남성은 약간 줄어든 반면 접근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간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가 여전히 용이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이전에 비해 6.6%가 줄어들어 37.9%로 나타난 반면, 성구매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이전에 비해 3.7%가 증가하여 2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응답자도 약간 증가하여 37.5%를 차지하였다.

<표 6-8>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구매 접근 용이성 의식 변화

단위 : 명, %

시기 구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구매 접근 용이성 의식 수준				
그렇지 않다	103	20.9	121	24.6
그저 그렇다	171	34.6	184	37.5
그렇다	220	44.5	186	37.9
합 계	494	100.0	491	100.0

<표 6-9>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매매 용이성 의식 변화가 개개인에 있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분석한 것인데, 접근성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구매가 과거에 비해 용이하게 환경이 바뀌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2%인데 비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바꾼 응답자가 24.1%로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이전과 이후 사이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5.7%로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다수는 성구매가 용이하거나 혹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다.

<표 6-9>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남성의 성구매 접근 용이성 변화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접근 용이성 의식 변화	구 분	빈도	비율
긍정에서 부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118	24.1
비슷하다		322	65.7
부정에서 긍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50	10.2
합 계		490	100.0

끝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매매여성의 자발성과 관련된 남성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 분석한 결과는 <표 6-10>과 같다.

먼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의 경우 성매매여성의 성매매가 자발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성이 38.2%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16.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다시 말해서 많은 성인 남성은 성매매여성의 성매매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응답자도 45.1%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자발성에 대한 의식에는 큰 변화 없었다. 즉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를 자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37.0%로 이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약간 증가하여 19.8%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립적 태도를 취한 응답자도 큰 변화 없이 43.2%로 나타났다.

<표 6-10>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매매 자발성 의식 변화

단위 : 명, %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자발성	시기 구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지 않다	83	16.7	98	19.8	198	39.8
그저 그렇다	224	45.1	214	43.2	214	43.2
그렇다	190	38.2	183	37.0	183	37.0
합 계	497	100.0	495	100.0	495	100.0

이전의 성매매 의식에 대한 인식과 달리 성매매여성의 성매매가 자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변화에 의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자발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증가하였다.

<표 6-11>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매매여성의 성매매가 자발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이 20.8%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 15.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이전과 비교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64.0%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성매매가 자발적이거나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표 6-11>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한 남성의 성매매 자발성 의식 변화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자발성 의식 변화	구 분	빈도	비율
긍정에서 부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75	15.2
비슷하다		317	64.0
부정에서 긍정하는 방향으로 의식 변화		103	20.8
합 계		490	100.0

제 2 절 성인 남성의 성매매 행위 변화 분석

1.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행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의 성매매 현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성구매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기 이전까지 남성의 성구매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6-12>와 같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에 근접하는 45.4%가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경우 비슷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전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과제」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남성 가운데 48.4%가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진경·양계민, 2003).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 성인 남성의 45.4%가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6-12>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경험 분석

단위 : 명, %

성구매 경험이 없다		성구매 경험이 있다		합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274	54.6	228	45.4	502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의 경우 그 빈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13>과 같다. 즉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45.4% 가운데 1-2회 혹은 3-4회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18.1%와 14.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10회 이상의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도 6.2%를 차지하였고, 5-9회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은 6.8%를 차지하였다.

<표 6-1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빈도 분석

단위 : 명, %

성구매 경험 정도	구분	빈도	비율
1 - 2회 정도		91	18.1
3 - 4회 정도		72	14.3
5 - 6회 정도		24	4.8
7 - 9회 정도		10	2.0
10회 이상		31	6.2
없 다		274	54.6
합 계		502	100.0

그리고 <표 6-14>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까지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성인 남성 228명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한 장소를 복수 응답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성인 남성 가운데 60.5%가 성매매집결지에서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집결지에서 성을 한번 이상 구매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결과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까지 성매매집결지가 성구매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단란주점, 룸살롱, 그리고 유흥주점 등 술을 파는 장소가 20-30% 수준을 차지하였는데, 이들 장소 또한 성구매 장소로서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래방과 안마시술소(증기탕)에서 성을 구매한 응답자도 각각 23.2%와 22.8%로 비교적 많았다. 그밖에 티켓다방을 이용한 성구매자도 11.0%를 차지하였으며, 이발소, 보도/전화방, 숙박시설, 기타 장소에서 성을 구매한 경우도 38.1%를 차지하였다.

<표 6-14>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장소 분석

단위 : 명, %

구분	구매장소 노래방	티켓 다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안마 시술소	기타
빈도	53	25	138	57	44	70	52	87
비율	23.2	11.0	60.5	25.0	19.3	30.7	22.8	38.1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성인 남성의 경우 어떤 동기로 성을 구매하였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15>와 같다.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인 56.6%가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보니 성구매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친구와 어울리다가 성을 구매한 응답자도 10.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성구매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친구 및 동료와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취중이라는 무의식에서 성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전적으로 무의식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남성의 경우 성구매에 대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이 청소년 시절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앞의 성매매 의식에서 검토하였듯이 우리 일상 생활 주변에 성매매 유인환경이 산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매우 높아 언제든지 성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환경개선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성매매 또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이 17.1%를 차지하여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즉 성적욕구를 해소할 목적에서 성매매를 하는 남성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성을 절제하는 훈련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해결방법이 없다. 그리고 호기심에서 성구매를 시도한 남성도 7.9%를 차지하였으며, 스트레스 해소 및 접대 관행상 성구매를 한 남성 또한 각각 4.4%와 3.5%를 차지하였다.

<표 6-1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동기 분석

단위 : 명, %

성구매 동기	구 분	빈도	비율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보니		129	56.6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39	17.1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0	4.4
호기심		18	7.9
동료(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23	10.1
접대 관행상		8	3.5
기 타		1	.4
합 계		228	100.0

그리고 본 연구는 성을 구매한 이후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6-16>와 같다.

먼저 성구매 이후 남성이 갖게 된 느낌에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4.5%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경우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특별한 느낌을 갖지 못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느낌을 갖긴 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성구매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40.2%를 차지하였다. 이들 남성 중에는 성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한번쯤 갖게 된 응답자가 17.2%를 차지하였으며, 성구매에 따른 죄의식을 갖게 된 응답자와 성구매 결과가 처음 기대한 바와 달라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11.5%로 비슷하였다.

다른 한편, 성구매 이후 만족감을 느낀 응답자는 13.2%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범주로 분류된 사람은 2.2%를 차지하였다.

<표 6-16>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이후 느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구매 이후 느낌		
죄책감을 느꼈다	26	11.5
성병에 걸릴까 두려움	39	17.2
만족스러운 느낌	30	13.2
기대와 달라서 실망	26	11.5
별 느낌이 없었음	101	44.5
기 타	5	2.2
합 계	227	100.0

2.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 분석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 성매매 현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 주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사전작업 일환으로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인 남성의 성구매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표 6-17>은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인 남성의 성구매 실태를 분석한 것인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21.3%가 성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런 결과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었던 응답자 45.4%와 비교하면 1/2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그 결과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15)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는 불법적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숨기는 경향이 면접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감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인 남성의 성구매 실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가 과소 보고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 성인 남성의 성구매 행위가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표 6-17>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경험 분석

단위 : 명, %

성구매 경험이 없다		성구매 경험이 있다		합 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395	78.7	107	21.3	502	100.0

다음으로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어느 정도 성구매 행위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6>과 같다. 즉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전체 응답자 21.3% 가운데 1-2회 혹은 3-4회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11.8%와 5.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지난 1년 사이에 5회 이상의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또한 4.6%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성인 남성은 빈번하게 성구매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7-17>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빈도 분석

단위 : 명, %

성구매 빈도	구 분	빈도	비율
1-2회 정도		59	11.8
3-4회 정도		25	5.0
5-6회 정도		12	2.4
7-9회 정도		1	.2
10회 이상		10	2.0
없 다		395	78.7
합 계		502	100.0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성인 남성의 성매매 행위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성매매방지법 이전과 이후 성구매 행위를 교차시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18>과 같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 중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이 53.4%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나머지 남성 6명(1.2%)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45.4% 중에 25.3%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20.1%는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각각 1/2 정도가 성구매를 중단하거나 혹은 성구매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6-18>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의 성인 남성의 성구매 행위 변화 분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구매 행위 변화		
성구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286	53.4
새롭게 성구매를 경험한 사람	6	1.2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	127	25.3
성구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101	20.1
합 계	502	100.0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107명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한 장소를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6-19>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성인 남성 가운데 48.6%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1/2에 해당되는 남성이 성매매집결지에서 한 차례 이상 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의 성구매 비율 68%에 비해 낮은 것이지만,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집결지가 여전히 성구매의 공간으로서 가장 보편적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성인 남성의 성구매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안마시술소로 29.0%를 차지하였는데, 이런 결과도 예상된 일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동안 공개적으로 진행되던 성구매가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남성에게 안마시술소나 증기탕 등 폐쇄된 공간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도 2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의 성매매가 증가한 것은 안마시술소 및 증기탕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단속이 느슨하고 적발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으로서 노래방이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단란주점, 룸살롱, 그리고 유흥주점 등 술을 파는 장소에서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의 경우도 각각 16-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성구매 장소로서 일반화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티켓다방의 경우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결과와 비교할 경우 약간 줄어든 8.4%로 나타났다.

끝으로 기타 범주의 지역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 또한 전체 성구매 경험자 가운데 과반수에 근접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구매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는 아닌지 추측된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비해 나이트클럽(9.3%), 보도전화방(7.5%), 숙박시설(6.5%), 해외(3.7%) 등에서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6-19>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장소 분석

단위 : 명, %

구분	구매 장소	노래방	티켓 다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안마 시술소	기 타
빈도		25	9	52	22	24	18	31	50
비율		23.4	8.4	48.6	20.6	22.4	16.8	29.0	46.7

다른 한편,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인 남성이 어떤 동기로 성을 구매하였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20>과 같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7.7%는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보니 성구매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친구와 어울리다가 성을 구매한 사람도 13.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성구매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친구 및 동료와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다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성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에서 성을 구매했다고 응답한 성인 남성이 24.3%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의 17.1%에 비해 다소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단속으로 과거와 같이 성구매가 자유롭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밖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성구매를 한 사람이 6.5%, 호기심에서 성구매를 한 사람이 3.7%, 그리고 접대관행상 성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도 4.7%를 차지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친구 및 동료와 어울리거나 술자리에서 성을 구매한다는 응답자와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술문화와 관련된 성구매가 매우 성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6-20>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동기 분석

단위 : 명, %

성구매 동기	구분	빈도	비율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보니		51	47.7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		26	24.3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7	6.5
호기심		4	3.7
동료(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14	13.1
접대관행상		5	4.7
합 계		107	100.0

3.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변화에 관한 분석

<표 6-18>에서 검토하였듯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45.4%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3%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이후 성구매 경험이 없는 반면 나머지 1/2 정도는 계속해서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반면에 성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자 가운데 6명(1.2%)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남성의 성구매 행위 변화를 계속해서 성구매 행위가 없었던 집단, 성구매를 중단한 집단, 성구매 지속집단(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을 구매한 6명 포함) 등 3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성인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성매매방지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이해 등과 관련시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6-21>은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인 남성의 성구매 행위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교육수준을 제외한 응답자의 연령, 종교, 혼인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성구매 행위 변화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성구매 경험이 없는 반면 젊은 사람일수록 성매매방지법 이후에도 성구매를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성구매 경험이 없었던 사람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성구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는 50대 이상이 71.4%로 20대의 47.3%에 비해 24.2%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구매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는 20대가 29.5%로 50대 이상의 8.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들 중에는 30-40대 연령층이 20대 혹은 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종교와 관련하여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성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60.2%로 종교가 없는 사람의

16)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남성의 성매매 행위변화의 경우 그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조사시점까지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매매 행위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성구매 경험은 향후 성구매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함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6.4%보다 15%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중단했거나 혹은 계속해서 성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이나 성구매를 계속하는 사람 중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끝으로 응답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기혼남성의 경우 성구매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이혼, 별거, 사별상태에 있거나 혹은 미혼상태에 있는 남성의 경우 성구매 경험이 많았고, 특히 미혼남성의 경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구매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성구매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 중에는 기혼남성이 57.4%로 미혼남성의 43.0%에 비해 14.3%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성구매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는 미혼남성의 경우 30.3%로 기혼남성의 17.3%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비록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성구매 행위 변화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의 경우 성구매 경험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성구매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23.7%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 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중단한 사람 중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6-21> 남성의 개인적 특성과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남성의 성구매 변화						검증
		경험 없음		성구매 중단		성구매 지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20대	53	47.3	26	23.2	33	29.5	X ² =18.300, p<.01
	30대	77	50.3	41	26.8	35	22.9	
	40대	78	51.0	43	28.1	32	20.9	
	50대	60	71.4	17	20.2	7	8.3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교육수준	고등학교	89	58.2	36	23.5	28	18.3	X ² =2.862, p>.05
	전문대학	52	54.2	25	26.0	19	19.8	
	대학교이상	127	50.2	66	26.1	60	23.7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종교	없 음	115	46.4	70	28.2	63	25.4	X ² =10.022, p<.01
	있 음	153	60.2	57	22.4	44	17.3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혼인상태	기 혼	189	57.4	83	25.2	57	17.3	X ² =12.565, p<.01
	이혼사별	15	55.6	5	18.5	7	25.9	
	미 혼	61	43.0	38	26.8	43	30.3	
합 계		265	53.2	126	25.3	107	21.5	

다른 한편, 성인 남성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행위 변화 차이를 분석한 <표 6-22>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직업, 소득, 그리고 가정경제생활 수준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구매 행위변화가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 없이 일관 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성구매 행위변화는 오히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를 찾아보면, 먼저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 중에는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전문관리직 종사자,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구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기능생산직 종사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의 소득과 관련해서 차이를 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 중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성구매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6-22> 남성의 경제적 특성과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남성의 성구매 변화						검증
		경험 없음		성구매 중단		성구매 지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업	기능생산직	35	50.7	12	17.4	22	31.9	X ² =15.151, p.127
	판매서비스직	59	54.6	30	27.8	19	17.6	
	자영업	18	48.6	8	21.6	11	29.7	
	사무직	71	53.8	29	22.0	32	24.2	
	전문관리직	54	50.9	33	31.1	19	17.9	
	기 타	26	59.1	14	31.8	4	9.1	
합 계		263	53.0	126	25.4	107	21.6	
소득	200만원 미만	72	50.0	34	23.6	38	26.4	X ² =4.594, p.597
	200-300만원	105	54.4	49	25.4	39	20.2	
	300-400만원	55	57.3	26	27.1	15	15.6	
	500만원 이상	30	50.8	17	28.8	12	20.3	
합 계		262	53.3	126	25.6	104	21.1	
가정생활	잘 사는 편이다	54	45.4	37	31.1	28	23.5	X ² =6.489, p.165
	보통수준이다	189	57.1	78	23.6	64	19.3	
	못사는 편이다	24	48.0	12	24.0	14	28.0	
합 계		267	53.4	127	25.4	106	21.2	

그리고 본 연구는 또한 성인 남성의 성구매 변화를 성매매방지 교육,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 경험, 홍보활동을 보고 느낀 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23>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예방교육의 경우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에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그것에 의한 느낌은 행위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성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접촉 경험이 많은 사람이 64.8%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47.3%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반면에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접촉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방지법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 가운데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접촉이 없는 사람이 접촉이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성구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접촉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홍보활동 접촉이 없거나 아주 많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매매 예방활동을 보고 난 이후 갖게 된 느낌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의 차이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을 보고 난 후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사람이 62.9%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47.4%보다 15% 정도 많았다. 반대로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계속해서 성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33.0%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10.6%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표 6-23> 남성의 성매매예방 사전 인지와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단위 : 명, %

응답자의 특성		남성의 성구매 변화						검증
		경험 없음		성구매 중단		성구매 지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매매방지 교육 경험	많다	97	56.4	42	24.4	33	19.2	X ² =3.884, p>.05
	약간	114	54.0	48	22.7	49	23.2	
	없다	57	47.9	37	31.1	25	21.0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성매매예방 홍보 경험	다소 많다	46	64.8	12	16.9	13	18.3	X ² =16.478, p<.01
	약간 있다	105	57.7	38	20.9	39	21.4	
	거의 없다	65	46.8	37	26.6	37	26.6	
	전혀 없다	52	47.3	40	36.4	18	16.4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보고난 느낌	부정적	46	47.4	19	19.6	32	33.0	X ² =23.212, p<.001
	중립적	85	45.2	56	29.8	47	25.0	
	효과적	95	62.9	40	26.5	16	10.6	
합 계		226	51.8	115	26.4	95	21.8	

끝으로 <6-24>는 성매매방지법 인지와 특별단속 인지, 성매매방지법 지지, 성매매방지법 정책 평가, 그리고 성매매 환경 노출 등에 따라서 성매매 행위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지지, 성매매방지법의 정책내용 평가 결과, 그리고 성매매환경 노출에 따라 성구매 행위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매매방지법을 지지 여부에 따른 성매매 구매행위 변화 차이를 보면,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남성의 경우 성구매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구매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성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63.0%로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남성이 32.3%로 2배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구매를 계속한 사람 중에는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48.5%로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사람 11.7%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 중에는 성매매방지법에 중립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성구매 행위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성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정부의 정책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64.9%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 37.2%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구매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37.2%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 8.4%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환경 노출 정도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성매매환경에 노출이 적은 사람일수록 성구매 경험이 없는 반면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구매 경험이 많았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성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 유인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사람이 73.1%로서 환경에 대한 노출이 많은 남성 28.7%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구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성매매 유인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사람이 45.5%로서 노출 경험이 없는 사람 3.8%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사람 중에는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6-24> 성매매방지법 인식에 따른 성구매 행위변화 차이 분석

단위 : 명, %

응답자의 특성		남성의 성구매 변화						검증
		경험 없음		성구매 중단		성구매 지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매매방지법 인식	잘 알고 있다	167	50.8	92	28.0	70	21.3	X ² =3.953, p>.05
	그저 그렇다	78	58.6	27	20.3	28	21.1	
	잘 모른다	23	57.5	8	20.0	9	22.5	
합 계		268	53.4	127	25.3	107	21.3	
특별단속 인식	잘 알고 있다	154	51.2	85	28.2	62	20.6	X ² =4.807, p>.05
	그저 그렇다	67	55.4	25	20.7	29	24.0	
	잘 모른다	47	59.5	17	21.5	15	19.0	
합 계		268	53.5	127	25.3	106	21.2	
성매매방지법 지지	지지한다	172	63.0	69	25.3	32	11.7	X ² =61.626, p<.001
	중립적이다	63	50.0	37	29.4	26	20.6	
	반대한다	32	32.3	19	19.2	48	48.5	
합 계		267	53.6	125	25.1	106	21.3	
성매매정책 긍정적 평가	그렇다	85	64.9	35	26.7	11	8.4	X ² =36.987, p<.001
	그저 그렇다	128	55.7	57	24.8	45	19.6	
	그렇지 않다	51	37.2	35	25.5	51	37.2	
합 계		264	53.0	127	25.5	107	21.5	
성매매 환경 노출 경험	전혀 없다	117	73.1	37	23.1	6	3.8	X ² =92.054, p<.001
	약간 있다	107	56.0	50	26.2	34	17.8	
	다소 많다	41	28.7	37	25.9	65	45.5	
합 계		265	53.6	124	25.1	105	21.3	

4.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과정에서 문제점 분석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행위가 불법인 까닭에 구매과정에서 성구매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이 성구매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두려움, 그리고 단속에 적발될 우려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6-25>에 의하면, 성인 남성의 경우 성구매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구매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33.4%인 반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66.6%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구매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단속에 적발될지 모른다는 느낌을 갖게 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 없이 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구매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과 경찰 단속에 적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각각 43.5%와 49.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그러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은 응답자도 각각 56.5%와 50.5%를 차지하였다.

<표 6-2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성구매 빈도 분석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약간 있었다		아주 컸었다		합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구매의 어려움	32	27.4	46	39.2	36	30.8	3	2.6	117	100.0
성구매의 두려움	20	17.4	30	26.1	55	47.8	10	8.7	115	100.0
단속에 적발 걱정	15	13.8	39	35.7	49	45.0	6	5.5	109	100.0

제 7 장

성매매여성의 특성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일반적 특성
- 제 2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 제 3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제 7 장 성매매여성의 특성과 성매매방지법 이해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가 성매매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성매매여성, 특히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경우와 다른 지역 성매매여성 사이에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매매행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한국사회 성매매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진행되었기에(여성부, 2002; 전북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2002),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은 성매매집결지 여성과 다른 형태의 성매매, 이른바 산업형 성매매여성 사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성매매방지법 추진이 성매매집결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자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한편 이러한 변화가 다른 지역의 성매매 유형이나 형태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1. 성매매여성 조사지역 및 업종 분포

<표 7-1>은 본 연구가 조사한 성매매여성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먼저 본 연구의 전체 조사규모는 120명의 성매매여성이었다. 전체 성매매여성 가운데 군산이나 익산지역 거주자는 각각 13.3%와 16.7%로 많지 않았다. 반면에 전주지역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7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 성매매집결지 여성에 대한 조사가 전주지역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성매매집결지가 전주지역에 있는 관계로 본 연구는 <표 7-2>에서 제시하였듯이 성매매 집결지에서 40명의 여성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에서 조사한 여성 40명을 제외하면 전주지역에서 조사한 표본 또한 35%로 줄어든다.

<표 7-1> 성매매여성의 조사지역 분포

단위 : 명, %

조사지역	빈도	비율
전 주	84	70.0
군 산	16	13.3
익 산	20	16.7
합 계	120	100.0

다음으로 <표 7-2>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유형 분포를 정리한 것인데,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료살롱 등과 같은 각종 형태의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이 43.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각종 주점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을 다수 조사한 것은 최근 성매매여성의 다수가 이른바 산업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매매집결지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33.3%를 차지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본 연구가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성매매업소의 여성에 비해 성매매 관련 태도나 행위,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티켓다방과 안마시술소, 그리고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은 각각 10%와 6.7%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매매여성의 업소 분포는 본 연구의 조사설계와 비교할 경우 성매매 집결지와 티켓다방이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의 경우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각종 주점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이 다소 많이 조사된 반면 안마시술소 및 증기탕 등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이 다소 적게 조사되었다.

<표 7-2> 성매매여성의 업종 분포

단위 : 명, %

업종	빈도	비율
각종 주점	52	43.3
성매매집결지	40	33.3
티켓 다방	12	10.0
안마시술소	8	6.7
노래방	8	6.7
합계	120	100.0

2. 성매매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으로서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을 검토하였다

<표 7-3>은 성매매여성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먼저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7세로 나타났다. 성매매여성의 연령별 자세한 분포를 살펴보면, 24세 이하 여성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5-29세 여성이 36.7%를 차지하였다. 반면 30세 이상 여성은 22.5%를 차지하였고, 특히 이들 가운데 35세 이상인 여성도 8.3%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이처럼 성매매여성 가운데 나이가 많은 여성이 다수 포함된 것은 본 연구가 조사대상으로서 노래방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표 7-3> 성매매여성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

연령	빈도	비율	평균 연령
24세 이하	49	40.8	26.87세
25 - 29	44	36.7	
30 - 34	17	14.2	
35세 이상	10	8.3	
합계	120	100.0	

<표 7-4>는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이들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75.0%로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이들 가운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단지 5.0%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70%는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성매매여성 25.0%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표 7-4>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

교육 수준	빈도	비율
고등학교 이하	90	75.0
전문대학	16	13.3
대학교 이상	14	11.7
합 계	120	100.0

다음으로 성매매여성 응답자의 결혼지위는 <표 7-5>와 같다. 성매매여성 가운데 79.2%가 미혼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약 20%는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14.2%는 현재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나머지 6.7%는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별거 혹은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성매매여성의 결혼지위

단위 : 명, %

결혼 지위	빈도	비율
기 혼	17	14.2
이혼, 사별	8	6.7
미 혼	95	79.2
합 계	120	100.0

3. 성매매여성의 경제적 특성

그리고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경제적 특성으로 성매매여성의 가정생계 담당역할, 월평균 소득과 소비, 부채상태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표 7-6>은 성매매여성 가운데 가정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성매매여성 가운데 과반수에 가까운 47.4%가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기혼상태 및 사별이나 이혼 상태의 여성 비율 20%보다 높은 것으로 미혼 상태의 여성 중에도 일부는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체 성매매여성 가운데 과반수인 52.6%는 생계를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성매매여성의 가정생계 담당 실태

단위 : 명, %

가정생계 역할	빈도	비율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	57	47.5
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63	52.3
합 계	120	100.0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1달 평균 소득규모를 분석한 <표 7-7>에 의하면, 성매매여성 1달 월평균 소득은 약 314만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이 211만원(2004년 정규직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면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이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100만원 미만을 벌고 있는 사람은 5.8%로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100-200만원 사이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은 44.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200만원 이상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도 50%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성매매여성도 15.0%를 차지하였다.

<표 7-7>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명, %

월평균 소득	빈 도	비 율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7	5.8	314 만원
100-200만원 미만	53	44.2	
200-300만원 미만	25	20.8	
300-400만원 미만	17	14.2	
400-600만원 미만	9	7.5	
600만원 이상	9	7.5	
합 계	120	100.0	

그리고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8>과 같다.

먼저 성매매여성이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처 분석에 의하면 전체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은 71.3%가 '기타'로 분류된, 이른바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대용품 구입이나 통신료 등에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축이나 저금을 하는 여성과 가족에게 송금하는 여성이 각각 53.3%와 47.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족생계에 사용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33.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도 19.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서 미리 받았던 선불금을 갚아 나가는데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9.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사용처에 따른 평균 비용규모를 살펴보면, 선불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여성의 경우 평균 1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기타 사용처로 1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의 경우 비록 그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일부 성매매여성의 경우 선불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월평균 소득의 1/3 수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매매여성의 순수 소득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선불금을

상환하는데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이 적은 이유는 새롭게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경우 성매매 강요를 목적으로 지불한 선불금의 경우 채무자는 변제할 책무가 없다는 판결 이후 선불금을 주고받는 관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성매매여성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처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저금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월평균 97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가족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혹은 가족생계를 위해 지출하는 사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 지출규모 또한 73-95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표 7-8>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처 분석

단위 : 명, %

소득 사용처	지출하고 있는 비율		지출하지 않고 있는 비율		합 계		지출하는 여성의 평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축/적금	64	53.3	56	46.7	120	100.0	97만원
가족송금	57	47.5	63	52.5	120	100.0	73만원
선불금 상환	11	9.2	109	90.8	120	100.0	105만원
가족부채 상환	23	19.2	97	80.8	120	100.0	93만원
가족생계비	40	33.3	80	66.7	120	100.0	95만원
기타 사용처	86	71.3	34	28.3	120	100.0	102만원

4.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과 관련된 제반 특성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자신의 소득 사용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수를 교차시켜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처 가운데 저축이나 적금, 가족송금, 가족부채 상환, 그리고 가족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소득 사용처로서 저축/적금과 관련된 특성

앞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성매매여성 가운데 53.3%가 저축/적금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이 보다 저축 및 적금을 많이 하고 있는가인데, 그 첫 번째 분석은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표 7-9>과 같다.¹⁷⁾

분석결과에 의하면, 젊은 여성과 나이가 많은 여성이 중간 연령대 여성에 비해서 저축이나 적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소득 사용처로서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35세 이상의 여성과 24세 이하의 여성이 각각 70.0%와 57.1%로서 30-34세 여성의 41.2%에 비해 15-30% 정도 많았다.

<표 7-9>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저축/적금 여부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비율	빈도
하지 않음	42.9	50.0	58.8	30.0	46.7	56
하고 있음	57.1	50.0	41.2	70.0	53.3	6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다음으로 <표 7-10>은 성매매여성의 소득에 따른 저축 및 저금 지출 여부에 관한 분석인데, 소득규모에 따른 일관성은 발견되지 않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즉 저축이나 적금에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소득이 6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소득이 많은 여성이 7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3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64.0%를 차지하였고, 특히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 또한 57.1%로 소득이 100-200만원 정도의 여성과 400-600만원 정도의 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런 결과는 소득이 많다고 하여 저축이나 적금을 더 할 것이란 가정과 일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17) 성매매여성과 관련된 아래의 교차분석에서 카이자승 검증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성매매 여성 표본이 1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7-1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저축/적금 여부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하지 않음	42.9	46.6	36.0	41.2	55.6	22.2	46.7	56
하고 있음	57.1	43.4	64.0	58.8	44.4	77.8	53.3	6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표 7-11>은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 사용처로서 저축이나 적금 여부를 분석한 것인데,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소득 사용처로서 저축이나 적금을 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이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혼상태 여성이 54.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기혼상태의 여성은 41.2%로 낮은 편인데 그 주요 이유는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계 혹은 일상생활에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표 7-11>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저축/적금 여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하지 않음	58.8	37.5	45.3	46.7	56
하고 있음	41.2	62.5	54.7	53.3	6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12>는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 책임여부와 관련하여 저축이나 적금 사용처를 분석한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축이나 적금에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소득을 저축이나 적금에 사용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여성이 63.3%로 가족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42.6%에 비해 20% 정도 많았다.

<표 7-12>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저축/적금 여부	가족생계		합 계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다	비율	빈도
하지 않음	57.4	36.7	46.5	53
하고 있음	42.6	63.3	53.5	61
합 계	100.0	100.0	100.0	114

<표 7-13>은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저축이나 적금 여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업소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저축 및 저금을 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7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59.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25.0%로 매우 낮았는데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기혼여성으로서 가족생계를 담당하고 있어 저축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표 7-1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저축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저축/적금 여부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하지 않음	40.4	50.0	58.3	25.0	75.0	46.7	56
하고 있음	59.6	50.0	41.7	75.0	25.0	53.3	6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2) 소득 사용처로서 가족송금과 관련된 특성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처로서 가족송금 여부가 여성의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7-14>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여성일수록 가족송금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해 주고 있는 여성 중에서는 24세 이하와 25-29세 여성이 각각 55.1%와 52.3%로서 30세 이상 여성 20-30% 수준에 비해 20-30% 이상 많았다.

<표 7-14>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송금여부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비율	빈도
하지 않음	44.9	47.7	70.6	80.0	52.5	63
하고 있음	55.1	52.3	29.4	20.0	47.5	5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다음으로 <표 7-15>에 의하면,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가족송금 여부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혼이나 미혼여성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소득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해 주고 있는 여성 중에서는 기혼여성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미혼여성이 47.4%를 차지하였다. 반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는 25.0%로 가장 적었다.

<표 7-15>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송금여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하지 않음	41.2	75.0	52.6	52.5	63
하고 있음	58.8	25.0	47.4	47.5	5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족송금 여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7-16>에 의하면, 소득이 적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 중에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향이 높았다. 즉 가족에게 송금하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평균 소득 300-400만원 및 100-200만원 여성이 58.8%와 47.2%로서 많았다. 반면에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 벌고 있는 여성의 경우 약 30% 정도만이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송금여부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하지 않음	14.3	52.8	60.0	41.2	66.7	66.7	52.5	63
하고 있음	85.7	47.2	40.0	58.8	33.3	33.3	47.5	5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17>은 성매매여성의 업소유형에 따른 가족송금 차이를 분석한 결과인데, 성매매집결지 및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소득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55.0%와 58.3%로서 노래방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 25-37.5%에 비해 20-30% 이상 많았다.

<표7-1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 송금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송금 여부	업 종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하지 않음	55.8	45.0	41.7	62.5	75.0	52.5	63
하고 있음	44.2	55.0	58.3	37.5	25.0	47.5	5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3) 소득 사용처로서 가족부채 상환과 관련된 특성

다음으로 본 연구는 어떤 성매매여성이 가족부채를 상환하는데 자신의 소득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7-18>은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소득의 사용처로서 가족부채 상환 여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족의 부채상환에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30-34세 및 35세 이상 여성이 각각 47.1%와 20%로서 많았고, 반면에 24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는 10.2%로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표 7-18>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나이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비율	빈도
없 음	89.8	81.8	52.9	80.0	80.8	97
있 음	10.2	18.2	47.1	20.0	19.2	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다음으로 <표 7-19>는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를 분석한 것인데, 미혼에 비해 기혼이나 이혼 및 사별상태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가족의 부채상환에 소득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기혼이나 이혼/사별상태 여성이 약 40% 수준으로 미혼여성의 14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표 7-19>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없 음	58.8	62.5	86.3	80.8	97
있 음	41.2	37.5	13.7	19.2	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20>은 성매매여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족부채 상환에 소득사용 여부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가족의 부채상환에 소득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200-3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0만원 미만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28.6%로 많았다. 그렇지만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여성 중에는 가족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10%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표 7-2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없 음	71.4	86.8	64.0	82.4	88.9	88.9	80.8	97
있 음	28.6	13.2	36.0	17.6	11.1	11.1	19.2	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21>은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가족부채의 상환 여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부채 상환에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75.0%로 매우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안마시술소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2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성매매집 결지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5% 이하로 매우 적었다.

<표 7-21>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부채 상환 여부	업 종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없 음	75.0	95.0	100.0	75.0	25.0	80.8	97
있 음	25.0	5.0	-	25.0	75.0	19.2	2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4) 소득 사용처로서 가족 생계지원과 관련된 특성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여성 가운데 일부가 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성매매여성의 몇 가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나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표 7-22>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 생계지원에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자신의 소득을 가족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성 중에는 35세 이상 여성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0-34세 여성이 52.9%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20대 여성의 경우는 25-30% 수준으로 30대 이상 여성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7-22>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생계 지원	나이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비율	빈도
없 음	75.5	70.5	47.4	40.0	66.7	80
있 음	24.5	29.5	52.9	60.0	33.3	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23>은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소득의 가족생계 지원여부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소득 일부를 가족생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기혼여성이 47.1%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미혼여성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 33.3%로 낮았다.

<표 7-2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생계 지원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없 음	52.9	37.5	71.6	66.7	80
있 음	47.1	62.5	28.4	33.3	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표 7-24>에 의하면, 여성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도 가족생계 지원 여부에 있어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200만원 이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42-47%로서 월평균 소득이 200-400만원 수준인 여성 18-24%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표 7-24>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생계 지원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없 음	57.1	52.8	76.0	82.4	100.0	66.7	66.7	80
있 음	42.9	47.2	24.0	17.6	-	33.3	33.3	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끝으로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른 소득의 가족생계 지원 여부 차이 또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7-25>에 의하면, 자신의 소득 일부를 가족생계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75%에서 88% 수준을 차지하여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8.3%에 비해 9-10배 정도 많았으며,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23.1%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35.0% 수준을 차지하여 다방이나 주점 여성보다 많았지만 안마시술소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에 비하면 적었다.

<표 7-25>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소득의 가족생계 사용 관계 분석

단위 : 명, %

소득의 가족생계 지원	업 종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없 음	76.9	65.0	91.7	25.0	12.5	66.7	80
있 음	23.1	35.0	8.3	75.0	87.5	33.3	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제 2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분석

1. 성매매방지법의 인식 분석

성인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에 관한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그 취지와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7-26>에 의하면, 성매매여성 대부분은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내용을 언론이나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혹은 친구로부터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함께 일하는 업체의 동료 혹은 친구로부터 정보를 습득한 여성도 26.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여성이 무려 91.1%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경우는 4.2%로 낮았고, 성매매방지법 홍보책자를 통한 정보습득은 2.5%를 차지하였다.

<표 7-26>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정보습득 동료	빈도	비율
언론	78	65.0
함께 일하는 친구나 동료	32	26.7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	1	.8
업소의 업주	5	4.2
성매매방지법 책자 및 교육	3	2.5
기타	1	.8
합계	120	100.0

<표 7-27>은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것인데, 성매매여성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매매방지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81.6%로 높게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아주 잘 알고 있는 여성도 28.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남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이다. 즉 성인 남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65.5%를 차지하였고, 이들 가운데 아주 잘 알고 있는 경우도 18.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들어 본 여성의 경우 14.2%를 차지하였지만, 성매매방지법을 잘 모르는 경우는 4.1%로 매우 적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아래에서 이러한 결과가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7-2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인식 정도	빈도	비율
아주 잘 알고 있다	34	28.3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64	53.3
들은 적이 있다	17	14.2
잘 모른다	4	3.3
전혀 모른다	1	.8
합 계	120	100.0

1)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인식 차이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이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7-28>에서부터 <7-31>에 의하면, 연령이나 교육수준, 혼인상태,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나이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나이가 많거나 혹은 적은 여성에

비해 중간 수준의 여성이 성매매방지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25-34세 여성이 32-35% 수준으로 35세 이상 여성 20%에 비해 12-15% 정도 많았고, 24세 이하의 여성 25%에 비해서도 7-10%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24세 여성과 35세 여성이 각각 25%와 20%로서 25-29세 여성의 11%에 비해 각각 15%와 9% 많았다.

<표 7-28>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인지	성매매여성의 연령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잘 알고 있다	24.5	31.8	35.3	20.0	28.3	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1.0	56.8	47.1	60.0	53.3	64
잘 모른다	24.5	11.4	17.6	20.0	18.3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다음으로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인식 차이 분석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매매방지법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이 많았다. 즉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30%로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21.4%에 비해 약간 많았다.

<표 7-29>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인지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잘 알고 있다	30.0	25.0	21.4	28.3	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2.2	50.0	64.3	53.3	64
잘 모른다	17.8	25.0	14.3	18.3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인식 차이 또한 큰 편인데, 미혼상태 여성이 기혼이나 이혼 및 사별상태의 여성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미혼여성이 31.6%로서 기혼여성 17.6%나 이혼 및 사별여성 12.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상태의 여성이 25.0%로서 미혼상태의 여성 16.8%에 비해 8% 정도 많았다.

<표 7-3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인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비율	빈도
잘 알고 있다	17.6	12.5	31.6	28.3	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8.8	62.5	51.6	53.3	64
잘 모른다	23.5	25.0	16.8	18.3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여성이 42.9%로 400만원 이상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 11-22%에 비해 2-4배 정도 많았다.

<표 7-31>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인지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잘 알고 있다	42.9	26.4	32.0	35.3	22.2	11.1	28.3	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2.9	54.7	44.0	58.8	55.6	66.7	53.3	64
잘 모른다	14.3	18.9	24.0	5.9	22.2	22.2	18.3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인식 차이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정보습득 경로에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32> 및 <표 7-33>과 같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인식 차이를 보면,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35.0%로 다방이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 25.0%에 비해 10% 이상 많았고, 특히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37.5%로서 가장 많았지만,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각각 10.0%와 8.3%로 적었다. 그리고 노래방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약 25%로 중간 수준을 차지하였다.

<표 7-32> 성매매여성의 일자리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인식 수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인지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잘 알고 있다	28.8	35.0	25.0	-	25.0	28.3	3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8.1	55.0	66.7	62.5	50.0	53.3	64
잘 모른다	23.1	10.0	8.3	37.5	25.0	18.3	2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2.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 분석

정부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함께 특별단속을 1달 정도 실시하바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성매매여성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7-33>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성매매여성 가운데 70.8%가 성매매 특별단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여성도 37.5%로

가장 많았다. 앞에서 검토한 성인 남성의 경우 정부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 약 60% 수준이었고, 이들 가운데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20%에 불과하여 성매매여성보다 적었다.

다른 한편, 정부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은 10.0%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2.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성매매방지 특별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19.2%를 차지하였다.

<표7-3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 특별 단속 인식 수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 특별단속 인식	빈도	비율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45	37.5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	40	33.3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23	19.2
잘 모른다	9	7.5
전혀 모른다	3	2.5
합 계	120	100.0

1)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 차이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7-34>에서부터 <7-37>과 같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7-34>에 의하면, 중간 연령의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25-29세 여성과 30-35세 여성이 32-35%로서 35세 이상 여성 20%보다 12-15% 많았고, 24세 이하 여성 25%에 비해 7-10%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는 24세 이하의 여성과 35세 이상의 여성이 각각 25%와 20%로서 25-34세 여성의 12-18%에 비해 약간 많은 편이다.

<표 7-34>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 특별단속 인식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아주 잘 기억	24.5	52.3	35.3	40.0	37.5	45
어느 정도 기억	38.8	29.5	29.4	30.0	33.3	40
그런 것으로 기억	20.4	15.9	29.4	10.0	19.2	23
잘 모른다	16.3	2.3	5.9	20.0	10.0	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35>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정부의 성매매 특별단속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기억하거나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76.7%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42.9%에 비해 30% 정도 많았으며,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여성 62.5%에 비해 15%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 특별단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57.2%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23.3%에 비해 30% 이상 많았다.

<표 7-35>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 특별단속 인식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아주 잘 기억	41.1	25.0	28.6	37.5	45
어느 정도 기억	35.6	37.5	14.3	33.3	40
그런 것으로 기억	13.3	31.3	42.9	19.2	23
잘 모른다	10.0	6.3	14.3	10.0	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표 7-36>은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라서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기혼이나 미혼상태의 여성이 이혼 및 사별상태에 있는 여성에 비해 잘 기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기억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이 47.1%로 미혼여성의 36.8%보다 10% 정도 많았고, 이혼이나 사별상태에 있는 여성 25.0%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표 7-36>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특별단속 인식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 특별단속 인식	혼인상태			합 계	
	기혼	이혼/사별	미혼	비율	빈도
아주 잘 기억	47.1	25.0	36.8	37.5	45
어느 정도 기억	23.5	37.5	34.7	33.3	40
그런 것으로 기억	17.6	37.5	17.9	19.2	23
잘 모른다	11.8	-	10.5	10.0	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2)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른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 차이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37>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5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점과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32.7%와 25.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은 12.5%로 많지 않았다.

다른 한편, 정부가 추진한 성매매 특별단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4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34.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22.5%와 25.0%로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표 7-37> 성매매여성의 일자리 업소와 성매매방지 특별 단속 인식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 특별단속 인식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아주 잘 기억	32.7	57.5	25.0	12.5	12.5	37.5	45
어느 정도 기억	32.7	20.0	50.0	62.5	50.0	33.3	40
그런 것으로 기억	19.2	17.5	16.7	25.0	25.0	19.2	23
잘 모른다	15.4	5.0	8.3	-	12.5	10.0	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지지 분석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방지법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3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여성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18.2%에 불과한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은 64.2%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30%를 차지하여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여성은 17.4%를 차지하였다.

<표 7-38>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빈도	비율
적극 찬성	5	4.2
찬 성	17	14.2
잘 모르겠다	21	17.4
반 대	42	35.0
적극 반대	35	29.2
합 계	120	100.0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 여성의 경우 성매매 방지법을 찬성하거나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관련 업소, 그리고 태도 등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 따른 성매매방지법 지지 차이

<표 7-39>는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나이가 적은 여성의 경우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여성 중에는 30세 이상 여성이 30-35% 정도로 30세 미만 여성의 11-1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30세 미만 여성이 63-77% 정도로 30세 이상 여성 40-47%에 비해 20-30% 이상 많았다.

<표 7-39>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여부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미만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찬성한다	16.3	11.4	35.3	30.0	18.3	22
잘 모르겠다	20.4	11.4	17.6	30.0	17.5	21
반대한다	63.3	77.3	47.1	40.0	64.2	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다음으로 <표 7-40>은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교육수준이 높거나 혹은 낮은 여성의 경우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중간 정도인 여성은 오히려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여성 중에는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43.8%로 고졸 이하 및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약 15%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나 혹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각각 70.0%와 64.3%로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31.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표 7-40>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여부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찬성한다	14.4	43.8	14.3	18.3	22
잘 모르겠다	15.6	25.0	21.4	17.5	21
반대한다	70.0	31.3	64.3	64.2	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라서 성매매방지법 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7-41>에 의하면, 미혼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이 성매매방지법을 보다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여성 중에는 기혼여성과 사별 혹은 이혼상태의 여성이 각각 53.0%와 62.5%로서 미혼여성의 30.5%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미혼여성이 69.5%로 사별 혹은 이혼상태의 여성이나 기혼여성의 37.5%와 47%에 비해 20-30% 이상 많았다.

<표 7-41>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여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찬성한다	47.1	-	14.7	18.3	22
잘 모르겠다	5.9	62.5	15.8	17.5	21
반대한다	47.1	37.5	69.5	64.2	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소득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42>에 의하면,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반면 소득이 적은 여성의 경우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42.9%로 400만원 이상의 여성 11.1%에 비해 4배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여성이 88.9%로 100만원 미만의 여성 28.6%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표 7-42>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여부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400만	400만~ 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찬성한다	42.9	17.0	24.0	17.7	11.1	-	18.3	22
잘 모르겠다	28.6	13.2	16.0	23.5	-	44.4	17.5	21
반대한다	28.6	69.8	60.0	58.8	88.9	55.6	64.2	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2)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정보습득 경로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지지 차이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7-43>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지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7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23.1%를 차지한 반면 성매매집결지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7-8% 정도로 매우 적었으며, 특히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92.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75.0%, 그리고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57.7%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반대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여성이 87.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7-4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찬성한다	23.1	7.5	8.3	-	75.0	18.3	22
잘 모르겠다	19.2	-	16.7	87.5	25.0	17.5	21
반대한다	57.7	92.5	75.0	12.5	-	64.2	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44>은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성매매방지법 관련 책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

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여성 중에는 관련 책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여성이 66.7%로 매우 많았으며,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여성도 20.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동료 및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여성의 경우 9.4%로 매우 적었다.

다른 한편,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의 경우 같은 업소에서 동료 및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여성이 7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언론이나 업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여성이 각각 64.1%와 60.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책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여성은 33.3%로 가장 적었다.

<표 7-44> 성매매방지법 정보습득 통로와 성매매방지법 지지 여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지지여부	성매매방지법 정보습득 통로					합 계	
	언론	동업종 종사자	업주	관련책자 및 교육	기타	비율	빈도
찬성한다	20.5	9.4	-	66.7	50.0	18.3	22
잘 모르겠다	15.4	18.8	40.0	-	-	17.5	21
반대한다	64.1	71.9	60.0	33.3	50.0	64.2	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4. 성매매여성의 성노동자 요구 분석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모든 성구매 행위는 불법이 되었지만 성매매집결지 업주 및 여성은 성매매여성도 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첩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노동자로서의 요구가 어느 정도이며, 성노동자 인정요구가 어떤 여성에게서 보다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표 7-45>는 성매매여성의 성노동자 요구와 관련하여 분석한 것인데, 대체로 성매매여성은 성노동자로 인정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0%가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하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31.7%가 매우 적극

적으로 요구하였다. 반면에 응답자 가운데 15.9%만이 성노동자 인정요구를 반대하고 있었으며, 24.2%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표 7-45> 성매매여성의 성 노동자 요구 수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여성의 성노동자 인정 요구	빈도	비율
적극 지지한다	38	31.7
지지하는 편이다	34	28.3
그저 그렇다	29	24.2
반대한다	17	14.2
적극 반대한다	2	1.7
합 계	120	100.0

1)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노동자 요구 차이 분석

아래 <표 7-46>에서부터 <표 7-49>까지는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성노동자 요구 주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 모두에 있어 성노동자 요구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성노동자 요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7-46>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젊은 여성일수록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한 반면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성노동자 요구를 반대하였다. 예를 들면,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하는 여성 중에는 30세 미만의 여성이 55-77%로서 30세 이상 여성의 30-47%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성노동자 주장을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30세 이상 여성이 30-40%로서 30세 미만 여성의 10% 수준에 비해 3-4배 정도 많았다.

<표 7-4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노동자 인정요구	나이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지지한다	55.1	77.3	47.1	30.0	60.0	72
그저 그렇다	34.7	11.4	23.5	30.0	24.2	29
반대한다	10.2	11.4	29.4	40.0	15.8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노동자 요구 차이를 분석한 <표 7-47>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노동자 요구를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66.5로 전문대학 학력의 여성 31.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50%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성노동자 요구를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전문대학 혹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36-38%로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8.9%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표 7-4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노동자 인정요구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지지한다	66.7	31.3	50.0	60.0	72
그저 그렇다	24.4	31.3	14.3	24.2	29
반대한다	8.9	37.5	35.7	15.8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표 7-48>은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노동자 요구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미혼이나 기혼여성의 경우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한 반면 기혼여성과 이혼 및 사별상태 여성은 성노동자 요구를 반대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혼여성의 경우 성노동자 요구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확연하게 양분되면서 찬성하는 비율도 있어서도 그리고 반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비교적 많았다. 예를 들면,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하는 여성 중에는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이 각각 63.2%와 52.9%를 차지하여 이혼이나 사별상태에 있는 여성 37.5%에 비해 15-25% 이상 많았다. 그렇지만 성노동자 요구를 반대한 여성의 경우도 기혼여성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미혼여성은 11.6%로 기혼여성의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7-4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노동자 인정요구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지지한다	52.9	37.5	63.2	60.0	72
그저 그렇다	11.8	37.5	25.3	24.2	29
반대한다	35.3	25.0	11.6	15.8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2)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른 성노동자 요구 차이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성노동자 요구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 예상을 지지해 주고 있다. 즉 <표 7-49>에 의하면,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하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성노동자 요구를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안마 및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하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 여성이 92.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53.8%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다방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각각 41.7%와

25.0%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성노동자 요구를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과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62.5%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반면에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25.0%와 11.5%로 많지 않았고, 특히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아무도 없었다.

<표 7-4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 노동자 인정 요구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 노동자 인정 요구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지지한다	53.8	92.5	41.7	25.0	-	60.0	72
그저 그렇다	34.6	7.5	33.3	12.5	37.5	24.2	29
반대한다	11.5	-	25.0	62.5	62.5	15.8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제 3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1.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해 분석

본 연구는, 앞에서 남성이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듯이, 본장에서 여성매매여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서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알선과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강요에 의한 성매매행위는 처벌받지 않음,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받은 선불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됨,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책무 등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1) 성매매행위 처벌강화에 대한 이해

새롭게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성매매행위를 크게 강화시켰다는 점인데,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7-50>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성매매여성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대부분은 새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과거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시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전체 성매매여성 응답자 가운데 69.8%가 성매매가 범죄행위이면 그 처벌도 강화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 약 30% 정도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여성이 12.6%를 차지하였으며, 성매매방지법의 처벌 강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도 17.6%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중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0.8%에 불과하였다.

<표 7-50> 성매매여성의 성매매행위 처벌강화 내용 이해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행위는 범죄행위이며 처벌 강화시켰다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34	28.6
알고 있다	49	41.2
그저 그렇다	15	12.6
잘 모른다	20	16.8
전혀 모른다	1	.8
합 계	120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에 대한 이해가 성매매 여성의 개인적 특성 및 일하는 장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매매행위 처벌강화 이해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7-51>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반면 잘 모르는 경우 또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젊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에 중간 연령층 여성의 경우 처벌강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잘 모르는 비율은 가장 높았다.

<표 7-5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처벌강화 내용인지	성매매여성의 연령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75.5	61.4	68.8	80.0	69.7	83
그저 그렇다	16.3	11.4	12.5	-	12.6	15
잘 모른다	8.2	27.3	18.8	20.0	17.6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19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내용 이해수준 차이를 분석한 <표 7-52>에 의하면,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약간 특이한 점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반대로 잘 모르고 있는 사람 또한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70.8%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64.3%에 비해 많았으며, 동시에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도 고졸 이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19.1%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14.3%보다 약간 많았다.

<표 7-5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처벌강화 내용인지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70.8	68.8	64.3	69.7	83
그저 그렇다	10.1	18.8	21.4	12.6	15
잘 모른다	19.1	12.5	14.3	17.6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19

그렇지만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 이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표 7-53>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경우 미혼이나 사별/이혼 여성에 비해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성매매행위 처벌강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미혼여성이 73.4%로서 기혼여성의 52.9%에 비해 20% 이상 많았고, 사별이나 이혼여성의 62.5%에 비해서도 약 10% 정도 많았다. 반면에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의 경우 기혼여성이 41.2%로 미혼여성의 12.8%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 25.0%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다.

<표7-5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처벌강화 내용인지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알고 있다	52.9	62.5	73.4	69.7	83
그저 그렇다	5.9	12.5	13.8	12.6	15
잘 모른다	41.2	25.0	12.8	17.6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19

<표 7-54>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서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주점이나 다방, 그리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75-80% 수준으로 비교적 많은 반면 성매매집결지와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컸다. 반면에 성매매행위 처벌이 강화되었던 내용을 잘 모르는 여성의 경우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 50%를 비롯하여 성매매집결지 여성 25.6%, 그리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 25.0%로 비교적 많았으며, 주점이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16.7%와 5.8%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표 7-5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행위 처벌 강화 내용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처벌강화 내용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알고 있다	80.8	56.4	75.0	50.0	75.0	69.7	83
그저 그렇다	13.5	17.9	8.3	-	-	12.6	15
잘 모른다	5.8	25.6	16.7	50.0	25.0	17.6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2)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성매매방지법 내용을 성매매여성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7-55>에 의하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72.5%를 차지하였고, 이들 가운데 28.3%는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반면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여성은 15.8%를 차지하였고, 이들 가운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는 단지 0.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가운데 11.7%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7-55>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 이해

단위 : 명, %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의 처벌 강화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34	28.3
알고 있다	53	44.2
그저 그렇다	14	11.7
잘 모른다	18	15.0
전혀 모른다	1	.8
합 계	119	100.0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이해가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혹은 일하는 업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7-56>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25-29세 여성이 79.5%로서 30-34세 여성 58.8%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그렇지만 24세 이하와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약 70%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30세 이상이 30세 미만 여성보다 다소 많았다.

<표 7-5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알선업주 처벌강화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71.4	79.5	58.8	70.0	72.5	87
그저 그렇다	14.3	4.5	23.5	10.0	11.7	14
잘 모른다	14.3	15.9	17.6	20.0	15.8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렇지만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의 처벌강화에 대한 이해 차이를 분석한 <표 7-57>에 의하면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7-5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알선업주 처벌강화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73.3	68.8	71.4	72.5	87
그저 그렇다	10.0	18.8	14.3	11.7	14
잘 모른다	16.7	12.5	14.3	15.8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다른 한편,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이해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다. <표 7-58>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경우 잘 알고 있는 반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혹은 강요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성매매방지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미혼여성이 75.8%로 사별이나 이혼여성의 50.0%에 비해 25% 정도 많았으며, 기혼여성의 64.7%에 비해서도 10% 이상 많았다. 반면에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는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37.5%로 미혼상태의 여성 13.7%보다 약 3배 정도 많았고, 기혼상태의 여성 17.6%에 비해서도 약 20% 정도 많았다.

<표 7-5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이해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알선업주 처벌강화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알고 있다	64.7	50.0	75.8	72.5	87
그저 그렇다	17.6	12.5	10.5	11.7	14
잘 모른다	17.6	37.5	13.7	15.8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59>에 의하면, 주점과 성매매집결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반면,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의 경우 주점을 비롯하여 성매매집결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75% 수준을 차지한 반면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37.5%로 매우 적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62.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내용을 잘 모르는 여성의 경우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25.0%를 차지하였고, 특히 주점이나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9.6%와 12.5%로 가장 적었다.

<표7-5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알선 업주의 처벌강화 내용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알선 업주 처벌강화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알고 있다	76.9	75.0	75.0	37.5	62.5	72.5	87
그저 그렇다	13.5	12.5	8.3	-	12.5	11.7	14
잘 모른다	9.6	12.5	16.7	62.5	25.0	15.8	1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3)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 불가에 대한 이해

<표 7-60>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성매매여성의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것인데, 이 경우 잘 알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53.3%만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여성은 27.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는 여성이 40.0%를 차지하였고, 그저 그렇다고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은 6.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성매매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강화시켰거나 혹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혹은 강요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여성이 70% 수준으로 높았다. 그렇지만 <표 7-60>에서 알 수 있듯이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50% 수준으로 낮았다.

<표 7-60>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 불가 내용에 대한 이해 분석

단위 : 명, %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 사실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33	27.5
알고 있다	31	25.8
그저 그렇다	8	6.7
잘 모른다	46	38.3
전혀 모른다	2	1.7
합 계	120	100.0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해가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이나 종사 업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7-61>은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이해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나이가 많거나 혹은 많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 중간 연령층 여성은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35세 이상 여성이 6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4세 이하 여성이 55.1%를 차지하였으며, 30-34세 여성의 경우는 47.1%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30-34세 여성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로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30.0%로 가장 적어 그 차이가 15% 이상이었다. 그밖에 24세 이하 여성의 경우는 36.7%를 차지하였다.

<표 7-6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 불가 분석

단위 : 명, %

강요된 성매매 처벌 불가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55.1	52.3	47.1	60.6	53.3	64
그저 그렇다	8.2	4.5	5.9	10.0	6.7	8
잘 모른다	36.7	43.2	47.1	30.0	40.0	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다음으로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 불가 이해수준 차이를 분석한 <표 7-62>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64.3%로 전문대학이나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50-52%에 비해 10-14% 정도 많았다. 반면에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전문대학 및 고졸 이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각각 50.0%와 41.1%로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21.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표 7-6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인지 분석

단위 : 명, %

강요된 성매매 처벌 불가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52.2	50.0	64.3	53.3	64
그저 그렇다	6.7	-	14.3	6.7	8
모른다	41.1	50.0	21.4	40.0	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63>는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미혼상태의 여성이 기혼이나 사별 및 이혼상태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미혼여성이 57.9%로 기혼이나 사별 및 이혼상태의 여성 35% 수준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반면에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여성의 경우는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62.5%로서 기혼상태의 여성 47.1%와 미혼상태의 여성 36.8%보다 많았다.

<표 7-6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분석

단위 : 명, %

강요된 성매매 처벌 불가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알고 있다	35.3	37.5	57.9	53.3	64
그저 그렇다	17.6	-	5.3	6.7	8
모른다	47.1	62.5	36.8	40.0	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표 7-64>에 의하면, 성매매집결지를 비롯하여 주점과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강요된 성매매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반면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은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주점과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60% 수준으로 안마시술소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 12-25%에 비해 2-5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잘 모르는 경우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75.0%로 다른 여성에 비해 매우 많았다.

<표 7-6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불가 사실인지 분석

단위 : 명, %

강요된 성매매 처벌 불가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알고 있다	61.5	60.0	41.7	12.5	25.0	53.3	64
그저 그렇다	1.9	7.5	8.3	12.5	25.0	6.7	8
모른다	36.5	32.5	50.0	75.0	50.0	40.0	4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4) 강요에 의한 성매매 처벌 불가에 대한 이해

성매매방지법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성매매 강요 혹은 여성의 도주방지를 목적으로 지불한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7-65>에 의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 혹은 성매매여성의 도주방지를 목적으로 업주나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선불금(부채)은 무효라는 사실 또한 성매매여성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3.3%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23.3%는 잘 알고 있었다. 반면에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은 8.3%를 차지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은 8.3%를 차지하였다.

<표 7-65>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 이해 : 선불금의 무효

단위 : 명, %

성매매 강요나 알선, 도주방지 목적의 선불금은 무효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28	23.3
알고 있다	48	40.0
그저 그렇다	10	8.3
잘 모른다	33	27.5
전혀 모른다	1	.8
합 계	120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이나 성매매업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표 7-66>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고 부분적인 차이만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선불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전 연령에 걸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 25세 미만 여성이 32.7%로서 35세 이상 여성의 20.0%에 비해 다소 많았을 뿐이다.

<표 7-6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선불금 무효 내용 인지 분석

단위 : 명, %

선불금 무효내용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61.2	68.2	58.8	60.0	63.3	76
그저 그렇다	6.1	6.8	11.8	20.0	8.3	10
잘 모른다	32.7	25.0	29.4	20.0	28.3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7-67>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성매매 강요 및 도주방지를 목적에서 받은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전문대학 학력의 여성이 75.0%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 63.3%를 차지하였지만,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50.0%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42.9%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및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25-27% 수준으로 낮았다

<표 7-6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선불금 무효내용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63.3	75.0	50.0	63.3	76
그저 그렇다	10.0	-	7.1	8.3	10
잘 모른다	26.7	25.0	42.9	28.3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선불금 무효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7-68>에 의하면, 잘 알고 있는 경우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사별 및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37.5%로서 기혼상태에 있는 여성의 11.8%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미혼상태의 여성도 30.5%로 비교적 많았다.

<표 7-6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선불금 무효내용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알고 있다	58.8	62.5	64.2	63.3	76
그저 그렇다	29.4	-	5.3	8.3	10
잘 모른다	11.8	37.5	30.5	28.3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다른 한편,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에 따라 선불금 무효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7-69>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이 종사하는 업소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성매매여성이 받은 선불금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75.0%로 비교적 많았고,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36.5%로 다소 많았다.

<표 7-6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선불금 무효 내용인지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선불금 무효 내용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알고 있다	59.6	65.0	66.7	75.0	62.5	63.3	76
그저 그렇다	3.8	15.0	8.3	-	12.5	8.3	10
잘 모른다	36.5	20.0	25.0	25.0	25.0	28.3	3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5) 정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책무 이해

성매매방지법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를 정부에게 부여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성매매산업을 조장 혹은 방임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과 단속만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표 7-70>은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매매여성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대체로 많은 여성이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3.5%를 차지하였고, 이들 가운데 22.5%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16.7%는 잘 모르고 있었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도 20.8%를 차지하였다.

<표 7-70>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 이해 : 정부의 사회복귀 지원 책무

단위 : 명, %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27	22.5
알고 있다	48	40.0
그저 그렇다	25	20.8
잘 모른다	18	15.0
전혀 모른다	2	1.7
합 계	120	100.0

이상과 같이 많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부 여성의 경우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이런 결과가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이나 업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표 7-71>은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라 성매매여성의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정부 책임론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잘 알고 있는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30-34세의 여성이 29.4%로 가장 많았고, 25-29세 여성의 경우 11.4%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아무도 없었다.

<표7-7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단위 : 명, %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61.2	63.6	58.8	70.0	62.5	75
그저 그렇다	18.4	25.0	11.8	30.0	20.8	25
잘 모른다	20.4	11.4	29.4	-	16.7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정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7-72>에 의하면, 교육수준에 따라 잘 알고 있는 경우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7-7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단위 : 명, %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알고 있다	63.3	68.8	50.0	62.5	75
그저 그렇다	20.0	12.5	35.7	20.8	25
잘 모른다	16.7	18.8	14.3	16.7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7-73>은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라 정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성매매여성의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기혼 여성이 70.6%로 미혼여성 61.1%에 비해 9% 정도 많았다. 반면에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사별이나 이혼여성이 25.0%로서 기혼여성 5.9%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미혼여성 17.9%에 비해서도 야간 많았다.

<표 7-73>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단위 : 명, %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알고 있다	70.6	62.5	61.1	62.5	75
그저 그렇다	23.5	12.5	21.1	20.8	25
잘 모른다	5.9	25.0	17.9	16.7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표 7-74>는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성매매여성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안마시술소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며, 반대로 노래방과 다방, 그리고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

<표 7-7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인지 분석

단위 : 명, %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 책무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알고 있다	57.7	62.5	66.7	87.5	62.5	62.5	75
그저 그렇다	23.1	25.0	8.3	12.5	12.5	20.8	25
잘 모른다	19.2	12.5	25.0	-	25.0	16.7	2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2. 성매매방지법의 효과 및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성매매 위축이라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혹은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의 성매매 감소, 성매매 근절 가능성, 성매매업주 및 여성의 성매매 정책에 대한 반대시위,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음성적 성매매 활성화 등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성매매여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1)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평가

여성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 성매매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으로 성매매 업소와 여성이 함께 감소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질문조사에 의하면 본 연구결과에서 암시하듯이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감소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7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비해 성매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여성이 58.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남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가운데 17.7%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9.2%는 완강하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여성도 전체 응답자의 1/4 수준인 24.2%로 나타났다.

<표 7-75>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빈도	비율
정말 그렇다	23	19.2
그런 편이다	47	39.2
그저 그렇다	29	24.2
그렇지 않다	10	8.3
전혀 그렇지 않다	11	9.2
합 계	120	100.0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성매매 감소 평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표 7-76>에 의하면, 나이가 적은 여성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나이가 많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의 성매매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성매매여성 중에는 20대 여성이 60% 이상으로서 30대 여성의 30-47%에 비해 20-30%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 중에는 35세 이상 여성이 40%로서 20대 여성 15% 수준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았다.

<표 7-76>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행위 감소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상	비율	빈도
그렇다	61.2	65.9	47.1	30.0	58.3	70
그저 그렇다	24.5	20.5	29.4	30.0	24.2	29
그렇지 않다	14.3	13.6	23.5	40.0	17.5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렇지만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 감소 평가는 큰 차이를 발견되지 않았다. <표 7-77>에 의하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가운데 60.0%가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도 50.0%를 차지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더욱이 성매매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 중에는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여성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14.3%)과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16.7%) 간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표 7-77>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행위 감소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그렇다	60.0	56.3	50.0	58.3	70
그저 그렇다	23.3	18.8	35.7	24.2	29
그렇지 않다	16.7	25.0	14.3	17.5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 감소 여부를 평가한 <표 7-78>에 의하면, 기혼 및 미혼상태 여성과 사별이나 이혼여성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자는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지역 성매매가 줄었다고 평가한 성매매여성 중에는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62.5%로 미혼이나 기혼여성의 15% 수준에 비해서 4 배 이상 많았다.

<표 7-78>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행위 감소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그렇다	70.6	12.5	60.0	58.3	70
그저 그렇다	17.6	25.0	25.3	24.2	29
그렇지 않다	11.8	62.5	14.7	17.5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감소 여부를 평가한 <표 7-79>에 의하면, 종사하는 업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한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80.0%와 63.5%로 많은 반면 다방이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각각 8.3%와 50.0%로 적었다.

다른 한편, 성매매가 줄지 않았다고 평가한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75.0%와 25.0%로서 주점이나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15.4%와 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았다.

<표 7-7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감소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행위 감소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그렇다	63.5	80.0	8.3	-	50.0	58.3	70
그저 그렇다	21.2	12.5	66.7	25.0	37.5	24.2	29
그렇지 않다	15.4	7.5	25.0	75.0	12.5	17.5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2)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평가

비록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 징후가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아 성매매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는 앞에서 분석한 성인 남성의 평가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성매매여성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는가라는 의견에 대해 성매매여성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표 7-80>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84.2%가 성매매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들 가운데 강하게 부정하는 여성이 무려 51.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근절 불가에 대한 생각은 성인 남성의 61.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긴 하지만, 성의 구매자인 남성이든 성의 판매자인 성매매여성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 근절이 쉽지 않은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성매매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성매매여성은 5.8%를 차지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고 평가한 응답자 또한 10.0%를 차지하였다.

<표 7-80>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도 성매매 근절 불가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시행에도 성매매 근절 불가	빈도	비율
정말 그렇다	62	51.7
그런 편이다	39	32.5
그저 그렇다	12	10.0
그렇지 않다	3	2.5
전혀 그렇지 않다	4	3.3
합 계	120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 근절 가능성에 대한 성매매여성의 평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업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표 7-81>는 성매매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매매 근절 가능성 평가를 분석한 것인데, 나이가 젊은 여성일수록 성매매 근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여성 중에는 30세 미만의 여성이 84-90% 정도로 30세 이상의 여성 70-80%에 비해 4-20%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라고 평가한 여성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7-81>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근절 불가 인식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근절불가 인식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하	비율	빈도
그렇다	83.7	90.9	70.6	80.0	84.2	101
그저 그렇다	10.2	4.5	23.5	10.0	10.0	12
그렇지 않다	6.1	4.5	5.9	10.0	5.8	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렇지만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 근절 가능성 평가 차이를 분석한 <표 7-82>에 의하면, 성매매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있어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여성 중에는 고졸 이하가 87.8%로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68.8%에 비해 20% 정도 많았지만,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78.6%보다는 10% 정도 많았다. 그런데 성매매 근절 가능성에 동의하는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7-82>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근절 불가 인식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근절불가 인식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그렇다	87.8	68.8	78.6	84.2	101
그저 그렇다	6.7	25.0	14.3	10.0	12
그렇지 않다	5.6	6.3	7.1	5.8	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다른 한편,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성매매 근절 가능성을 평가한 <표 7-83>에 의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 근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성매매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100%, 그리고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95.0% 등 매우 많았다. 그렇지만 주점이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각각 75%와 78% 정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62.5%로 가장 적었다.

다른 한편, 성매매 근절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성매매여성 중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1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다방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8.3%와 7.7%를 차지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2.5%로 매우 적었다.

<표 7-8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근절 불가인식 관련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근절불가 인식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그렇다	78.8	95.0	75.0	100.0	62.5	84.2	101
그저 그렇다	13.5	2.5	16.7	-	25.0	10.0	12
그렇지 않다	7.7	2.5	8.3	-	12.5	5.8	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3) 성매매방지법 반대시위에 대한 평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매매여성을 비롯한 업주들에 의한 성매매방지법 반대시위이다.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정책이 강화되면서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성매매여성의 생존권 보존을 요구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잠재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정책 정도에 따라서 또 다시 분출될 개연성이 높다.

성매매 업주와 여성이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성매매집결지 중심의

정부 단속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성매매방지법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본 연구에서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성매매여성은 자신의 반대시위를 정부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표 7-84>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1.7%는 성매매여성과 업주의 성매매방지법 반대시위 정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준비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은 단지 7.5%에 불과하였고, 그저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은 20.8%를 차지하였다.

<표 7-84> 성매매방지법의 준비부족이 성매매여성의 반대 시위 초래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방지법 시행 준비부족이 생매매여성의 시위 초래	빈도	비율
정말 그렇다	44	36.7
그런 편이다	42	35.0
그저 그렇다	25	20.8
그렇지 않은 편이다	9	7.5
합 계	120	100.0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85>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여 성매매여성과 업주가 성매매방지법 반대시위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 여성이 7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점과 다방, 그리고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동일하게 75.0%를 차지하였다. 반면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37.5%로서 전자에 비해 1/2 이하로 매우 적었다.

<표 7-85>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여성의 방지법 반대시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여성의 반대시위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그렇다	75.0	77.5	75.0	75.0	37.5	71.7	86
그저 그렇다	15.4	22.5	25.0	25.0	12.5	20.8	25
그렇지 않다	9.6	-	-	-	50.0	7.5	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4)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에 대한 평가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에 대한 성매매여성의 평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86>와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80%가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집중 단속은 성매매집결지 성매매 업소와 여성의 감소로 이어져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매매방지법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서도 강하게 믿고 있는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를 부인하는 사람은 5.0%에 불과하였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 또한 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상업적’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다. 18)

18) 실제 성매매집결지 여성과의 면접과정에서 성매매집결지 여성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집결지를 떠난 여성이 가정으로 혹은 사회로 복귀하기보다는 다른 업소에 가 있거나 심지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 또한 많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표 7-86>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중점단속은 다른 지역의 성매매 활성화 기여

단위 : 명, %

성매매집결지 중점단속은 다른 지역 성매매 활성화에 기여	빈도	비율
정말 그렇다	59	49.2
그런 편이다	36	30.0
그저 그렇다	19	15.8
그렇지 않다	5	4.2
전혀 그렇지 않다	1	.8
합 계	120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에 대한 평가가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87>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집중단속은 성매매 감소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100.0%와 95.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주점이나 다방, 그리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60% 수준으로 비슷하였다.

<표 7-8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 분석

단위 : %, 명

다른 지역 성매매 활성화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그렇다	69.2	95.0	66.7	100.0	62.5	79.2	95
그저 그렇다	21.2	5.0	25.0	-	37.5	15.8	19
그렇지 않다	9.6	-	8.3	-	-	5.0	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제 8 장

여성의 성매매참여와 사회복귀 태도

-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 제 2 절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제 8 장 여성의 성매매 참여와 사회복지 태도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이들 여성이 성매매 유입시기 및 성매매경력, 그리고 성매매유입 원인을 비롯하여 향후 사회복지 구상,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의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참여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제 1 절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1.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 분석

여성이 처음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표 8-1>과 같다. 즉 처음 성매매를 시작한 연령 분석에 의하면, 20대 초반에 처음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56.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0대 후반에 처음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도 23.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매매여성은 20대에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가운데 12.5%는 10대 후반에 이미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편, 30대에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도 7.5%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성매매여성의 평균 나이가 23세인 사실을 고려하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성매매에 참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1> 성매매여성의 첫 성매매 유입 연령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유입 연령	빈도	비율
10대 후반	15	12.5
20 - 24세	68	56.7
25-29세	28	23.3
30세 이상	9	7.5
합 계	120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성매매에 처음 유입된 시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8-2>에 의하면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와 성매매 첫 유입시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10대부터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의 경우 다방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으며, 20대 초반에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은 주점을 비롯하여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에서 주로 일하고 있으며, 20대 후반에 유입된 여성의 경우는 성매매집결지와 안마시술소에서 주로 일하고 있었으며, 30대에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은 노래방과 안마시술소에서 주로 일하고 있었다.

<표 8-2>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첫 성매매 유입 연령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유입 연령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10대	15.4	-	50.0	12.5	-	12.5	15
20-24세	67.3	52.5	50.0	25.0	50.0	56.7	68
25-29세	1.5	42.5	-	50.0	12.5	23.3	28
30세 이상	5.8	5.0	-	12.5	37.5	7.5	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2. 성매매 종사 경력 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들 성매매여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3>과 같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평균 성매매 종사기간은 약 4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에서 가장 큰 특징은 5년 이하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7%가 2-5년 정도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22.5%는 1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년 이상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은 15.8%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이들 중에서 6-9년 정도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이 9.1%를, 그리고 10년 이상 종사한 여성도 6.7%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경력이 길지 않은데, 그 주요 원인은 ‘직업’으로서 성매매의 특성이 바로 젊은 여성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여성의 경우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표 8-3>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종사기간	빈도	비율	평 균
1년 이하	27	22.5	3.89년
2 - 5년	74	61.7	
6 - 9년	11	9.1	
10년 이상	8	6.7	
합 계	120	100.0	

<표 8-4>는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성매매여성의 경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 즉 성매매 종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여성의 경우 성매매집결지를 비롯하여 주점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다방과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도 많았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의 경우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50%로 매우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5.8%를 차지하였을 뿐 나머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표 8-4>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종사 기간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1년-3년	21.2	35.0	8.3	-	12.5	22.5	27
4년-5년	65.4	60.0	75.0	62.5	25.0	61.7	74
6년-9년	7.7	5.0	16.7	25.0	12.5	9.2	11
10년 이상	5.8	-	-	12.5	50.0	6.7	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표 8-5>는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종사기간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매매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길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 종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50.0%로 고졸 이하 혹은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여성의 12.5-20%에 비해 2-4배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4-5년의 성매매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고졸 이하의 여성이 66.7%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35.7%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6년 이상 성매매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여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많았다

<표 8-5>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종사 기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종사기간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1년-3년	20.0	12.5	50.0	22.5	27
4년-5년	66.7	56.3	35.7	61.7	74
6년-9년	7.8	18.8	7.1	9.2	11
10년 이상	5.6	12.5	7.1	6.7	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성매매 종사기간 차이를 분석하면 <표 8-6>과 같은데, 종사기간이 짧거나 혹은 긴 경우 상대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 종사기간이 3년 미만인 여성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여성이 42.9%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 이상 여성의 경우는 11.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여성의 경우 또한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여성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원 정도인 여성 또한 16.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400만원 이상인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표 8-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 종사 기간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종사기간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1년-3년	42.9	26.4	16.0	17.6	22.2	11.1	22.5	27
4년-5년	28.6	67.9	52.0	64.7	66.7	66.7	61.7	74
6년-9년	-	3.8	16.0	11.8	11.1	22.2	9.2	11
10년 이상	28.6	1.9	16.0	5.9	-	-	6.7	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3. 성매매여성의 현 업소 종사기간 분석

그리고 성매매여성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있었는지 분석하면 <표 8-7>과 같다.

평균적으로 성매매여성의 현 업소 종사기간은 1년 조금 넘는 13.8개월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여성의 경우 한 업소에서 오랫동안 일하기보다 여러 업소를 이동하면서 일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의 현재 업소 종사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가 3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6개월 종사한 여성과 6-24개월 종사한 여성이 각각 28.3%와 26.7%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25개월 이상 현재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15.0%로 나타났다.

<표 8-7> 성매매여성의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단위 : 명, %

현재 일하는 업소 종사기간	빈도	비율	평 균
2개월 이하	36	30.0	13.8개월
2-6개월	34	28.3	
7 - 24개월	32	26.7	
25개월 이상	18	15.0	
합 계	120	100.0	

성매매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성매매 종사 업소의 기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면 <표 8-8>과 같다.

분석에 의하면, 성매매집결지를 비롯하여 다방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그 종사기간이 길지 않은 반면 안마시술소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현 업소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길지 않은 경우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92.5%와 75.0%로 노래방

이나 안마시술소 그리고 주점 등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12.5%에서 40.2%에 비해 2-6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현 업소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87.5%와 75.0%로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 7.5%와 25.0%에 비해 3-10배 이상 많고,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59.6%에 비해 15-25% 이상 많았다.

<표 8-8> 성매매여성의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단위 : 명, %

현 업소 종사기간	업 종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2개월 이하	19.2	55.0	33.3	-	-	30.0	36
3-6개월	21.2	37.5	41.7	12.5	25.0	28.3	34
7-24개월	40.4	5.0	25.0	37.5	37.5	26.7	32
25개월 이상	19.2	2.5		50.0	37.5	15.0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표 8-9>은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주에 따라 성매매 종사 업소의 기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교육수준이 낮거나 혹은 높은 여성의 경우 현 업소의 종사기간이 짧은 반면 중간 수준인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현 업소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과 고졸 이하의 여성이 각각 85.7%와 60.1%로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여성의 18.8%에 비해 3-4배 이상 많았다.

그렇지만 2년 이상 현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여성이 43.8%로 대학교 이상이나 고졸 이하의 여성 7.1%와 11.1%에 비해 4-6배 이상 많았다.

<표 8-9>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단위 : 명, %

현 업소 종사기간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2개월 이하	32.2	12.5	35.7	30.0	36
3-6개월	28.9	6.3	50.0	28.3	34
7-24개월	27.8	37.5	7.1	26.7	32
25개월 이상	11.1	43.8	7.1	15.0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표 8-10>는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현 업소 종사기간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몇 가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현 업소 종사기간이 짧은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았으며, 종사기간이 중간 정도인 여성의 소득이 비교적 많았으며, 반대로 종사기간이 긴 여성의 경우 소득이 다시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현 업소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여성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현 업소에 6개월 이상에서 2년까지 종사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인 여성이 많았고, 특히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은 88.8%를 차지하여 200만원 미만 여성의 40%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현 업소 종사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 중에는 월평균 200-400만원 정도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20-29%로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 11-14%에 비해 많았다.

<표 8-10>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현재 업소 종사기간 분석

단위 : 명, %

현재의 업소 종사기간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400만	400만~ 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2개월 이하	42.9	49.1	8.0	5.9	44.4	-	30.0	36
3-6개월	28.6	22.6	36.0	29.4	22.2	44.4	28.3	34
7-24개월	14.3	17.0	36.0	35.3	33.3	44.4	26.7	32
25개월 이상	14.3	11.3	20.0	29.4	-	11.1	15.0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표 8-9>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여성의 경우 한 업소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성매매여성과의 면접에서 왜 성매매여성이 한 업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즉 “한 업소에 오랫동안 정착하게 되면 단골을 가질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단골 아가씨를 찾기보다는 새로운 아가씨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다른 업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와 이전 업소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11>과 같다.

먼저 각종 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본 연구의 응답자 가운데 다수가 각종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보다 중요한 원인은 우리사회 성매매산업 가운데 이른바 각종 주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산업형’ 성매매 규모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반직장에서 일하다가 성매매업소에 들어왔거나 혹은 처음으로 성매매업소에 들어온 여성이 각각 20.8%와 1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밖에 일부 여성은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과 같은 곳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표 8-11> 성매매여성의 이전 업소 및 현재 업소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업소	이전 업소		현재 업소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성매매집결지	8	6.7	40	33.3
각종 주점(단란, 유흥, 룸싸롱)	45	37.5	52	43.3
티켓다방	9	7.5	12	10.0
안마, 이발소	6	5.0	8	6.7
노래방, 숙박	3	2.5	8	6.7
일반직장	25	20.8	-	-
이곳이 처음	18	15.0	-	-
기 타	6	5.0	-	-
합 계	120	100.0	120	100.0

4. 여성의 성매매 유입 원인

본 연구는 또한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12>과 같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많은 여성이 가정의 가난을 벗어나기 목적에서 성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44.2%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33.4%는 가출하여 생계를 해결하거나 혹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혹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따라 아르바이트 하다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나머지 16.7%는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낭비하다 보니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응답자의 9.2%는 카드빚을 갚거나 다른 이유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7.5%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친구나 아는 사람을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 여성은 5.8%를 차지하였다.

<표 8-12>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참여 원인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참여 원인	빈도	비율
가출해서 생계 및 거주지 문제로	20	16.7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53	44.2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9	7.5
인터넷을 통해 우연하게 하게 되었다	7	5.8
친구 혹은 아는 사람을 따라 아르바이트로 하다가	20	16.7
카드빚을 갚거나 다른 이유로	11	9.2
합 계	120	100.0

이상의 여러 가지 성매매 참여 원인을 가출과정에서 생계문제 해결, 가난문제 해결, 필요한 물건구입, 그리고 인터넷 혹은 친구를 따라서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런 원인이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표 8-13>는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따른 성매매 참여 원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가출해서 생계문제 및 주거문제를 해결할 목적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 중에는 다방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가난을 극복할 목적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70.0%와 50.0%로서 노래방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비해 2-5배 이상 많았다.

그렇지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목적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혹은 친구를 따라서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 여성의 경우는 노래방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방이나 주점,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많았다.

<표 8-1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참여 원인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가출해서 생계해결	23.1	10.0	25.0	-	12.5	16.7	20
가난을 극복하려고	30.8	70.0	50.0	25.0	12.5	44.2	53
필요한 물건구입	25.0	10.0	-	37.5	-	16.7	20
인터넷 및 친구 따라	21.2	10.0	25.0	37.5	75.0	22.5	2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표 8-14>은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라 성매매 참여 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미혼여성은 가출로 인해서, 사별이나 이혼여성이 경우는 가난이 주요 원인이며, 기혼여성의 경우는 가난이나 혹은 인터넷 및 친구 따라서 나서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면, 가출해서 생계와 주거문제를 해결할 목적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 중에는 미혼상태의 여성이 20.0%로 기혼여성 5.9%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으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체로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혼여성이 47.1%를, 그리고 미혼여성이 43.2%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 중에는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25.0%로 기혼여성의 11.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따라서 성매매에 나서게 된 여성 중에는 기혼여성이 35.3%로 미혼여성 20%에 비해 15% 정도 많았다.

그리고 <표 8-15>에 의하면,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한 반면 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여성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혹은 인터넷이나 친구를 따라 성매매에 참여한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 중에는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59.3%로 생계를 담당하지 않은 여성 26.7%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반면에 필요한 물건구입

목적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중에는 생계를 담당하지 않은 여성이 30.0%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3.7%에 비해 8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친구를 따서 성매매에 참여한 여성 중에서도 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28.3%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18.5%에 비해 10% 정도 많았다.

<표 8-14>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참여원인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가출해서 생계해결	5.9	-	20.0	16.7	20
가난을 극복하려고	47.1	50.0	43.2	44.2	53
필요한 물건구입	11.8	25.0	16.8	16.7	20
인터넷 및 친구	35.3	25.0	20.0	22.5	2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표 8-15>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성매매 참여 원인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참여 원인	가족생계		합 계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다	비율	빈도
가출해서 생계해결	18.5	15.0	16.7	19
가난을 극복하려고	59.3	26.7	42.1	48
필요한 물건구입	3.7	30.0	17.5	20
인터넷 및 친구 따라	18.5	28.3	23.7	27
합 계	100.0	100.0	100.0	114

제 2 절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은 그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성매매를 중단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만일 중단할 수 있다면 언제쯤 중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를 중단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중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연구는 조사하였다.

<표 8-16>는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가능성을 분석한 것인데, 전체 성매매여성 응답자 120명 가운데 현재 하고 있는 성매매를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은 23.3%를 차지하였지만, 나머지 76.7%는 성매매를 계속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8-16>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가능성

단위 : 명, %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빈도	비율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28	23.3
아직 중단할 수 없다	92	76.7
합 계	92	100.0

그렇다면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은 성매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누구이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인데, <표 8-17>은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비록 연령에 따라 성매매 중단 가능성 결과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연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였다. 예를 들면, 성매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24세 이하의 여성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34세 연령층 여성이 29.4%를 차지한 반면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10%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를 중단할 수 없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나이가 35세 이상인 여성이 90.0%로 가장 많았다.

<표 8-17> 성매매여성의 연령과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 가능성	연령의 범주				합 계	
	24세 이하	25-29	30-34	35세 이하	비율	빈도
중단 가능	32.7	13.6	29.4	10.0	28	23.3
중단 불가	67.3	86.4	70.6	90.0	92	7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표 8-18>은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성매매 중단 가능성을 분석한 것인데,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중단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중단 가능성이 낮았다. 예를 들면, 성매매를 언제든지 중단할 있는 여성 중에는 고졸 이하의 여성이 26.7%로 대학교 이상 여성 14.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지만, 반대로 성매매 중단이 현재로서 어렵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 여성이 85.7%로 고졸 이하의 여성 73.3%에 비해 12% 정도 많았다.

<표 8-18>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 가능성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중단 가능	26.7	12.5	14.3	23.3	28
중단 불가	73.3	87.5	85.7	76.7	9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표 8-19>는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 중단 가능성을 분석한 것인데 기혼여성에 비해 미혼 혹은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성매매 중단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여성 중에는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37.5%로 기혼상태에 있는 여성 5.9%에 비해 6배 이상 많았고, 미혼상태에 있는 여성 25.3%에 비해서도 12% 정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기혼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한 상황 하에서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표 8-19>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 가능성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중단 가능	5.9	37.5	25.3	23.3	28
중단 불가	94.1	62.5	74.7	76.7	9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본 연구는 또한 성매매여성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성매매 중단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20>과 같다. 즉 성매매 중단 가능성이 높은 여성 중에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비롯하여 노래방, 성매매집결지, 그리고 주점 등에서 일하는 여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8-20>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 가능성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중단 가능	23.1	25.0	33.3	-	25.0	23.3	28
중단 불가	76.9	75.0	66.7	100.0	75.0	76.7	9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2. 성매매 지속 및 그 원인 분석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성매매여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매매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표 8-21>에 의하면, 현재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면,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여성 가운데 48.9%는 현재의 수입을 다른 곳에서 벌 수 없거나(35.9%) 혹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13.0%)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23.9%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혹은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15.2% 여성은 가족이나 본인의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일을 그만 둘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 여성이 2.2%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기타로 분류되는 여성이 9.8%로 나타났다.

<표 8-21>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빈도	비율
현재의 수입을 다른 곳에서 벌 수 없어서	33	35.9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12	13.0
갚아야 할 부채(가족 및 본인) 때문에	14	15.2
갚아야 할 선불금 때문에	2	2.2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22	23.9
기 타	9	9.8
합 계	92	100.0

<표 8-22>는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이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몇 가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성매매 여성이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100.0%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55.0%를 차지하였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경우는 16.7%로 가장 적었다.

다른 한편, 가족부양이나 가족생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의 일을 계속하려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83.3%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50.0%를 차지하였으며,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은 35.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기타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 중에서는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비롯하여 다방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비슷하게 10% 수준을 차지한 반면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은 없었다.

<표 8-22>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지속 원인 관계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지속 원인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대신할 일자리 없어	55.0	36.7	37.5	100.0	16.7	48.9	45
가족부양 및 부채	35.0	50.0	50.0	-	83.3	41.3	38
기 타	10.0	13.3	12.5	-	-	9.8	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

다음으로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매매 지속 원인을 살펴보면 <표 8-23>과 같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은 일자리 문제와 기타 이유를 지적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가족부양이나 부채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성매매 일을 대신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현재의 일을 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고졸 이하와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여성이 각각 50.0%로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 41.7%보다 약간 많았다.

다른 한편, 가족부양이나 부채 문제로 현재의 성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58.3%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37.9%에 비해 20% 이상 많았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8-23>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지속원인	교육수준의 범주			합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이상	비율	빈도
대신할 일자리 없어	50.0	50.0	41.7	48.9	45
가족부양 및 부채	37.9	42.9	58.3	41.3	38
기 타	12.1	7.1	-	9.8	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92

다음으로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라서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을 분석한 <표 8-24>에 의하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은 일자리 문제를 제기한 반면에 기혼이나 미혼여성은 가족부양 및 부채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여성 중에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이 각각 43.8%와 47.9%를 차지한 반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은 80%로 약 2배 정도 많았다.

다른 한편, 가족부양이나 부채 문제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하려고 하는 여성 중에는 미혼이나 기혼여성이 비슷하게 43.8%와 42.3%를 차지하였지만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은 20.0%로 1/2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8-24>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지속원인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대신할 일자리 없어	43.8	80.0	47.9	48.9	45
가족부양 및 부채	43.8	20.0	42.3	41.3	38
기 타	12.5	-	9.9	9.8	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92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 역할과 관련하여 성매매 지속 원인 분석에 의하면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은 가족부양 문제를, 반면에 가족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여성은 대신할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하고 있는 성매매를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계속 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가족생계를 담당하지 않은 여성이 68.3%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24.4%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가족부양이나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 68.9%로 가족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여성 17.1%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표 8-25>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지속원인	가족생계		합 계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다	비율	빈도
대신할 일자리 없어	24.4	68.3	45.3	39
가족부양 및 부채	68.9	17.1	44.2	38
기 타	6.7	14.6	10.5	9
합 계	100.0	100.0	100.0	86

<표 8-26>은 성매매여성의 소득에 따라 성매매 지속 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일수록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였고, 적은 여성일수록 가족부양 및 부채문제를 비롯하여 기타를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성매매를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8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0-600만원 월평균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60.0%, 그밖에 다른 여성은 40-50% 수준을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가족부양 및 부채를 갚기 위해서 현재의 성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100-200만원 소득의 여성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다른 여성의 경우 30-40% 수준을 차지하였다.

<표 8-26>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를 계속하려는 원인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지속원인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대신할 일자리 없어	50.0	40.0	50.0	53.8	60.0	85.7	48.9	45
가족부양 및 부채	33.3	51.1	43.8	30.8	40.0	-	41.3	38
기 타	16.7	8.9	6.3	15.4	-	14.3	9.8	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

3. 성매매여성의 향후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비록 현재 성매매 여성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의 성매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언제쯤 성매매를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27>과 같다

성매매 중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여성은 19.2%를 차지하였고, 이들 가운데 16.7%는 6개월 후에 그만 둘 계획이며, 7.5%는 1년 후에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중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성매매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구상하고 있는 여성은 45.0%를 차지하였고, 이들 가운데 약 40%는 가게마련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거나 혹은 가족경제생활이 안정될 시점까지만 일을 하고자 하며, 4.2%는 구상하고 있는 일자리를 갖게 될 시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앞에서 분석한바와 같이 현재의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 여성이 1/3 수준이 이르는 30.9%를 차지하였다. 이들 여성 가운데 11.7%는 자신의 건강이나 주변 여건(경찰단속, 수입 정도 등)이 허락되는 시점까지 현재의 일을 계속 할 생각이며, 19.2%는 중단 시점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8-2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 계획 및 시점	빈도	비율
소규모 가게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시점까지	25	20.8
가족경제생활이 안정될 시점까지	24	20.0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 마련 시점까지	5	4.2
6개월 후에 중단	20	16.7
1년 후에 중단	9	7.5
여건이 허락되는 시점까지	14	11.7
잘 모르겠다	23	19.2
합 계	120	100.0

본 연구는 또한 이상의 여러 가지 원인을 크게 3가지 내용을 재분류한 다음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소규모 가게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거나 가족경제생활이 안정되거나 혹은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시점 등에 묶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나 사업이 실현되는 시점’으로 분류하고, 다음은 6개월 후 혹은 1년 후 중단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묶어 ‘1년 후 중단’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모르겠다와 여건이 허락하는 시점 등을 묶어서 ‘가능한 시점까지 계속’ 등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성매매 중단 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8-28>에 의하면, 성매매집결지와 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사업구상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다방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은 1년 정도, 그리고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은 가능한 시점까지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성매매를 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71.8%와 40.4%로 다방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 12.5-18.2%에 비해 2-6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1년 정도 하다가 중단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다방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32.7-45.5%로 안마시술소나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13-15%에 비해 2-3배 이상 많

았다. 그러나 가능한 시점까지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75.0%로서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8-28>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 시점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구상 사업 실현시점	40.4	71.8	18.2	12.5	25.0	45.8	54
1년 이내	32.7	15.4	45.5	12.5	-	24.6	29
가능한 시점까지	26.9	12.8	36.4	75.0	75.0	29.7	3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8

다음으로 <표 8-29>는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 역할에 따라 성매매 중단 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사업의 구상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현재의 일을 하려는 반면 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여성은 가능한 시점까지 계속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현재의 일을 계속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생계를 맡고 있는 여성이 52.8%로 그렇지 않은 여성 35.6%보다 15% 이상 많았다. 반면에 가능한 시점까지 계속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생계를 담당하지 않은 여성이 35.6%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 24.5%보다 10% 이상 많았다.

<표 8-29>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업소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시점	가족생계		합 계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다	비율	빈도
구상사업 실현시점	52.8	35.6	43.8	49
1년 이내	22.6	28.8	25.9	29
가능한 시점까지	24.5	35.6	30.4	34
합 계	100.0	100.0	100.0	112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성매매 중단 계획을 분석한 <표 8-30>에 의하면, 기혼여성은 사업 구상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현재의 일을 계속할 계획인 반면 미혼여성은 1년 정도 하다가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실현될 시점까지 현재의 일을 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기혼여성이 70.6%로서 미혼여성 40.9%에 비해 30% 많았다. 반면에 1년 정도 하다 그만 두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미혼여성이 24.6%로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 12.5%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표 8-30> 성매매여성의 혼인상태와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시점	혼인상태의 범주			합 계	
	기혼	사별/이혼	미혼	비율	빈도
구상사업 실현지점	70.6	50.0	40.9	45.8	54
1년 이내	-	12.5	30.1	24.6	29
가능한 시점까지	29.4	37.5	29.0	29.7	3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18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성매매 중단 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8-31>에 의하면, 소득이 적은 여성은 사업구상이 실현되는 시점이나 혹은 가능한 시점까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반면, 소득이 많은 여성은 가능한 시점까지, 그리고 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여성은 1년 정도 하다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실현되면 성매매를 중단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100-300만원 수준의 여성이 50% 정도로 400만원 이상의 여성 10-20% 수준에 비해 2-5배 정도 많았다.

그렇지만 가능한 시점까지 성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여성이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0만원 미만의 여성으로 57.1%, 그리고 400-6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33.3% 등으로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1년 정도 하다 그만 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300-600만원 정도인 여성이 40% 수준으로 다른 여성 20%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8-31>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단위 : 명, %

성매매 중단시점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구상사업 실현지점	42.9	53.8	52.0	41.2	22.2	12.5	45.8	54
1년 이내	-	19.2	24.0	41.2	44.4	25.0	24.6	29
가능한 시점까지	57.1	26.9	24.0	17.6	33.3	62.5	29.7	3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8

4.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중단을 위한 예상 소득액 분석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득에 대한 보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경우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32>와 같다.

먼저 전체 성매매여성이 현재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보장을 요구하는 월평균 소득액은 약 175만원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0만원 미만을 요구한 여성은 9.2%로 많지 않았지만, 150만원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59.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 가운데 15.0%는 250만원 이상 보장될 경우 현재의 성매매를 중단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금전적 전략보다 의식을 개선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8-32> 성매매여성의 직업 전환 시 소득 보장 요구 금액 분석

단위 : 명, %

직업 전환 시 소득보장 요구 금액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11	9.2
100 - 149만원	38	31.7
150 - 199만원	32	26.7
200 - 249만원	21	17.4
250만원 이상	18	15.0
합 계	120	100.0

<표 8-33>은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전직시 요구하는 소득보장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보장을 요구한 반면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경우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요구하였고,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아주 적은 혹은 다소 많은 소득보장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월평균 100-200만원을 요구하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50%를 차지하였지만 주점이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각각 31-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한편, 월평균 250만원을 요구하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50%를 차지한 반면 다방이나 주점,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경우 각각 25%, 11%, 그리고 7% 등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는 여성 중에는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15.4%로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5.0%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표 8-33>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전직시 소득보장 요구 금액 분석

단위 : 명, %

요구 소득액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100만원 미만	15.4	5.0	8.3	-	-	9.2	11
100 - 149만원	25.0	50.0	25.0	12.5	12.5	31.7	38
150 - 199만원	19.2	35.0	16.7	37.5	37.5	26.7	32
200 - 249만원	28.8	2.5	25.0	-	-	17.5	21
250만원 이상	11.5	7.5	25.0	50.0	50.0	15.0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 담당 역할에 따라 전직시 요구하는 소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8-34>에 의하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구 금액이 적었다. 예를 들면, 150만원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여성 중에는 생계를 맡고 있는 여성이 51.9%로 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여성 35.0%에 비해 15% 이상 많았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의 경우는 생계를 담당하지 않은 여성이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 비해 약간 많았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다.

<표 8-34> 성매매여성의 가족생계부담과 전직시 소득보장 금액 분석

단위 : 명, %

요구 소득액	가족생계		합 계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지 않는다	비율	빈도
100만원 미만	13.0	6.7	9.6	11
100-149만원	38.9	28.3	33.3	38
150-199만원	18.5	28.3	23.7	27
200-249만원	13.0	21.7	17.5	20
250만원 이상	16.7	15.0	15.8	18
합 계	100.0	100.0	100.0	114

그리고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소득보장 금액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35>와 같다. 즉 월평균 소득이 적은 여성의 경우 요구하는 소득금액 또한 적었고, 소득이 많은 여성이 요구하는 소득금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현재 하던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갖게 될 경우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는 여성 중에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28.6%로 100-3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 4-9%에 비해 3-7배 정도 많았으며, 300-6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 10%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한편, 현재 하던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요구하는 소득보장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여성 중에는 월평균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0-400만원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64.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10% 이하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표 8-35> 성매매여성의 소득과 전직시 소득보장 금액 분석

단위 : 명, %

요구 소득액	월평균소득의 범주						합 계	
	100만 미만	100만~200만	200만~300만	300만~400만	400만~600만	600만 이상	비율	빈도
100만원 미만	28.6	9.4	4.0	11.8	11.1	-	9.2	11
100-149만원	28.6	45.3	32.0	5.9	11.1	22.2	31.7	38
150-199만원	42.9	34.0	24.0	17.6	11.1	11.1	26.7	32
200-249만원	-	7.5	36.0	23.5	33.3	11.1	17.5	21
250만원 이상	-	3.8	4.0	41.2	3.3	55.6	15.0	1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5.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사업 평가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전주의 성매매집결지가 여성부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2005년 10월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8-36>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성매매여성의 경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는 여성은 3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0%를 차지한 반면 잘 모르거나 혹은 처음 들어본 여성은 각각 20.8%와 14.2%를 차지하였다.

<표 8-36> 성매매여성의 여성가족부 여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사업 인식

단위 : 명, %

가족여성부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사업 인식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36	30.0
들어 본 기억이 있다	42	35.0
잘 모른다	25	20.8
처음 들어 본다	17	14.2
합 계	120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업소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8-37>과 같다. 즉,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다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2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여성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을 비롯하여 주점이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비교적 많았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잘 모르거나 혹은 처음 들어보는 여성 중에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과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50.0%와 75.0%로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의 25%보다 2-3배 정도 많았다.

<표 8-37>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인식 관계 분석

단위 : 명, %

사회복귀 프로그램 인식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잘 알고 있다	19.2	55.0	16.7	25.0	-	30.0	36
들어본 것 같다	42.3	20.0	33.3	-	100.0	35.0	42
잘 모른다	28.8	10.0	41.7	12.5	-	20.8	25
처음 듣는다	9.6	15.0	8.3	62.5	-	14.2	1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여성 78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8-38>와 같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성매매여성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가족여성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여성은 13.0%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여성은 4.0%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고 평가한 여성이 33.0%를 차지하였으며,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 성매매여성들은 41.0%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들 중에는 성매매집결지 여성이 2/3(69.0%)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8-38> 성매매여성의 가족여성부 여성매매여성 사회복귀 프로그램 평가

단위 : 명, %

성매매여성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 평가	빈도	비율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3	4.0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7	9.0
그저 그렇다	26	33.0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32	41.0
무응답	10	13.0
합 계	78	100.0

다음으로 여성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여성이 일하는 업소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39>과 같다. 즉, 다방과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은 여성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성매매집결지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여성 중에는 다방과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각각 50.0%와 33.3%로 주점이나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17.3%와 13.3%에 비해 2-4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73.3%로 가장 많았고,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비슷하게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8-39> 성매매여성의 업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평가 관계 분석

단위 : 명, %

사회복귀 프로그램 평가	성매매여성이 일하는 업소					합 계	
	주점	집결지	다방	안마	노래방	비율	빈도
좋은 정책이다	17.6	13.3	50.0	20.0	33.3	19.8	16
그저 그렇다	58.8	13.3	33.3	80.0	50.0	40.7	33
현실성이 부족	23.5	73.3	16.7	-	16.7	39.5	3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1

제 9 장

결론 : 연구결과의 요약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 방안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제 2 절 지역사회자원 실태와 활용방안
- 제 3 절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제 9 장 결론 : 연구결과의 요약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성인 남성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본은 전주, 익산, 그리고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502명이며, 이들의 연령은 20대에서부터 50대에 걸쳐 전라북도 인구구성 비율에 근접하며, 이들의 교육수준은 직업을 고려한 유의표집인 관계로 비교적 높았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슷하게 양분되고 있으며, 특히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불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과 미혼남성이 각각 66.1%와 28.5%를 차지하였고, 사별이나 이혼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사람은 5.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인 남성의 직업은 표집설계와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2.6%를 차지하여 다소 많았고, 주관적인 가족생활 평가에서도 못 산다고 평가한 남성은 10.0%에 불과한 반면 잘 산다고 평가한 남성이 23.8%로서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의 연구설계가 경제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여성의 특성

본 연구의 또 다른 자료는 조사 당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데, 자료수집 또한 전주, 익산, 군산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여성 가운데 33.3%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고, 43.3%는 각종 주점에서 일하며, 10.0%는 티켓다방에서, 그리고 13.4%는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매매여성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다소 높은 편인데, 이러한 결과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30대 후반 여성이 다소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성매매여성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거의 없어 비교적 높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미혼상태였지만, 일부 여성의 경우 예를 들면, 14.2%는 기혼상태이며, 6.7%는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 여성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4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는 자신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고 있다는 여성이 47.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314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특히 400만원 이상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도 15.0%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소득 사용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업무와 관련된 곳에 자신의 소득 1/3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1/2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소득의 1/3 정도를 사용하고(저축이나 적금) 하고 있었고, 많은 여성이 가족생계나 가족부채 상환을 위해서 자기 소득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특히 성매매여성의 소득 사용과 관련된 교차분석결과에 의하면, 자기 미래를 위해 저축이나 적금을 들고 있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거나 혹은 적은 여성이, 소득이 많은 여성이, 기혼상태의 여성이, 가족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안마시술소나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비교적 많았으며, 가족에게 송금하는 여성 중에는 젊은 여성이거나, 기혼 및 미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소득이 적은 여성이, 그리고 다방이나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소 많았다.

그리고 가족부채를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중간 연령층의 여성이나 사별/이혼 혹은 기혼여성,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목적에서 자기 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고, 사별이나 이혼 그리고 기혼상태에 있는 여성, 소득이 적고, 노래방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경험

1) 남성의 성매매예방 교육 경험

성인 남성의 경우 그 동안 성매매예방과 관련된 교육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최근 언론의 홍보활동에 대한 접촉은 다소 있었다. 특히 성매매예방과 관련된 강연을 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는 젊은 연령층과 기능생산직 종사자를 비롯하여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와 가정생활이 어려운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성매매예방 홍보책자를 읽은 경험이 없는 남성 중에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혹은 가족생활이 어려운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언론의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접촉은 남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후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경험

성매매예방 혹은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 가운데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언론의 구속 뉴스를 제외하면 성인 남성의 홍보활동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성매매예방을 위한 홍보책자 및 각종 사회단체의 홍보활동은 제한적인 반면 정부의 언론홍보 및 경찰의 성매매현장 단속활동을 목격한 남성은 다소 있었다. 이러한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접촉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2배 정도 많았다. 특히 성매매방지 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이 중단되거나 혹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사람 중에는 나이가 적은 20-30대 남성과 미혼 남성, 그리고 소득이 적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 남성의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분석

1) 인터넷 매체를 통한 유인환경 노출

인터넷이 최근 중요한 성매매 매개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성매매 관련 채팅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은 20% 수준으로 아직은 제한적인 느낌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서 여성노출 동영상을 보았거나 혹은 포르노사이트에 접속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인터넷에서 여성노출 동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 컴퓨터 세대인 젊은 연령의 남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 미혼남성, 기능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많았다.

인터넷에서 포르노사이트 접속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젊은 남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 미혼이나 사별/이혼상태의 남성이 그리고 가족생활이 어려운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성매매 관련 채팅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 중에는 젊은 연령층 남성이, 미혼이나 사별/이혼상태에 있는 남성이, 전문자유직과 기능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적은 남성이 많았다.

2) 기타 매체를 통한 성매매 유인환경 노출

위성방송이나 홍보전단, 그리고 친구 및 동료의 경험담 등과 같은 성매매 환경에 성인 남성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위성방송을 통한 여성노출 장면 시청이나 성매매 홍보 전단지 받기, 그리고 친구 및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 듣기 및 서로의 경험담 하기 등을 경험한 남성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인터넷 매체 경험보다 훨씬 많았다.

위성방송을 통해 여성노출 장면을 시청한 남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젊은 남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 미혼 남성, 그리고 기능생산직과 자영업, 사무관리직에 종사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홍보전단지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남성 중에는 나이가 젊은 남성과 기능생산직을 비롯하여 자영업자 그리고 사무기술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전단지 홍보가 젊은 남성과 특정 직업에 속하는 남성을 주고객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 및 동료의 성매매 경험담의 경우도 나이가 적은 젊은 남성, 미혼남성, 기능생산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그리고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남성,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적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4.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인식과 지지 분석

1)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특별단속 인식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사실과 정부의 특별단속 사실을 알고 있는 남성이 각각 65.5%와 60.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일부 남성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먼저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잘 모르는 남성 중에는 30-40대 남성,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남성과 기혼남성, 자영업 종사 남성, 월평균 소득이 낮은 남성, 그리고 가족생활 수준이 보통이거나 혹은 가난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추진한 특별단속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남성 중에는 30-40대 남성을 비롯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 사별이나 이혼상태 남성, 기능생산직에 종사하거나 혹은 자영업, 그리고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 소득이 낮은 남성, 그리고 가족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2)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 분석

여성단체의 요구 및 제안과 국회의원 발의에 의해 국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남성의 지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찬성하는 남성이 54.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남성도 19.9%를 차지하였으며,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남성도 24.0%를 차지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남성 중에는 나이가 젊은 남성이, 미혼상태에 있는 남성, 기능생산직 종사자를 비롯하여 자영업 종사자와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 소득수준이 낮은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5. 남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

1) 성매매방지법 내용에 대한 평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내용으로서 성매매집결지 단속정책,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조치, 성매매알선 중개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남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성매매집결지 단속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남성은 36.9%로 많지 않았지만, 성매매여성의 피해자 규정과 보호조치 및 성매매알선 중개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남성이 각각 57.9%와 73.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남성,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 미혼상태의 남성, 자영업이나 경영관리직, 그리고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 월평균 소득이 많은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중에는 나이가 많은 남성,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남성 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2) 성매매방지법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내용으로서 성매매방지법의 효과적인 추진, 성매매의 감소, 그리고 건전한 가족문화 활성화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는 남성은 14.0%인데 반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은 53.6%로 많아 긍정보다 부정적이었고,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성공할 것으로 평가한 남성은 24.8%인데 비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은 36.2%를 차지하였으며,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가족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한 남성 또한 28.0%인데 반해 그렇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 남성이 33.5%로 많았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성인 남성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 기혼상태에 있는 남성이, 경영관리직 및 전문자유직 종사 남성이, 월평균 소득이 많은 남성이, 가정경제생활이 부유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남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남성이, 미혼상태의 남성이 기능생산직, 자영업, 사무 기술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그리고 가정경제생활이 어려운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3) 성매매방지법의 부정적 효과와 향후 대책에 대한 평가

성매매방지법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본 연구는 성매매여성의 생계문제, 성매매방지법의 처벌에 따른 성매매 근절,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을 검토하였다.

성매매여성의 생계문제는 성매매방지법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한 남성이 59.1%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성매매방지법의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남성도 61.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각각 77.7%와 63.4%로 많았다.

먼저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나이가 젊은 남성이, 미혼상태의 남성이, 기능생산직 종사자를 비롯한 판매서비스직 및 자영업 종사 남성이,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는 20-30대 연령층 남성이, 대학교 이상 혹은 고졸 이하 학력의 남성이, 경영관리직 혹은 판매서비스직 종사 남성이, 그리고 소득이 많은 남성이 다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6. 남성의 성매매의식 및 행위변화 분석

1) 남성의 성매매의식 변화

본 연구는 남성의 성매매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22개 문항을 사용하여 성매매의 정당성,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 성매매 업무성, 성매매여성의 피해성, 성매매의 접근성,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자발성 등 6개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성인 남성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이런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성구매의 정당성 의식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정당성을 부정하는 응답자가 증가한 반면 정당성을 인정하려는 응답자는 감소하여 성구매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정하는 방향으로 남성의 의식이 다소 변화였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구매 가능성을 부정하는 남성이 긍정하는 남성보다 증가하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도 성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48.7%에서 45.8%로 줄어든 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성은 19.5%에서 21.0%로 증가하였다.

성매매 업무성 의식에서는 업무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인정하는 남성은 줄어든 반면 부정하는 남성은 증가하였다. 즉 성매매가 업무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부정하는 남성이 지난 1년 사이에 4.2% 증가한 반면 업무과정에서 성구매를 인정하려는 남성은 3.2%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남성은 업무과정에서 성매매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접근성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한 남성이 20.9%에서 24.6%로 약간 증가한 반면 성구매 접근성이 여전히 용이하다고 평가한 남성은 44.5%에서 37.9%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성구매가 용이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성매매여성의 자발성 의식과 관련하여 야간의 변화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을 수용하고 있는 남성은 38.2%에서 37.0%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그것을 부정하는 남성은 16.7%에서 19.8%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은 여성의 성매매가 자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남성의 성매매행위 변화

(1) 성매매 행위 빈도 변화

성매매방지법 시행되기 이전까지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은 45.4%를 차지하였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남성이 23.1%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21.3%는 성구매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까지 성구매가 없던 사람 가운데 일부(1.2%)가 시행 이후 성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성의 성구매 업소의 변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구매 업소 분포를 살펴보면, 성매매집결지가 60.5%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싸롱 등 술을 파는 장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노래방과 안마시술소에서 성구매를 한 남성도 20% 수준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티켓다방이나 기타 장소에서 성을 구매한 사람도 다수 있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구매 업소 분포를 살펴보면, 성매매집결지가 48.6%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그리고 룸싸롱이 20% 수준을 차지하였고, 안마시술소의 경우는 29.0%, 노래방과 티켓다방이 각각 23.4%와 8.4%를, 그리고 기타가 46.7%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면, 지난 1년 사이 성매매집결지에서 성을 구매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은 크게 줄어든 반면 안마시술소와 기타로 분류된 곳에서 성을 구매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전화방이나 보도방, 숙박시설 그리고 해외 등지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 성구매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가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3) 성구매 원인에서 변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의 경우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보니 혹은 친구 및 동료와 함께 어울리다 성을 구매한 경우가 각각 56.6%와 10.1%를 차지하였고, 성적 욕구의 해소할 목적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도 17.1%를 차지

하였으며, 호기심에 성을 구매한 남성 또한 7.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도 술자리에서 어울리거나 혹은 친구 및 동료와 함께 어울리다가 성을 구매한 경우가 각각 47.7%와 13.1%를 차지하였고, 성적 요구의 해소를 목적으로 성을 구매한 남성도 24.3%를 차지하였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해소할 목적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이 6.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면 술자리에 어울리다가 성을 구매한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크게 감소한 반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에서 성을 구매한 남성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호기심에 의한 성구매는 감소하였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성을 구매한 남성 또한 약간 증가하였다.

(4) 성구매 이후 갖게 된 느낌

성구매 이후 남성이 갖게 되는 느낌은 다분히 부정적이었다. 즉 성구매 후 만족한 느낌을 갖게 된 남성은 13.2%에 불과한 반면 죄책감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운 느낌을 갖게 된 남성은 각각 11.5%와 17.2%를 차지하였으며, 실망감을 갖게 된 남성도 11.5%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아무런 느낌도 갖지 않았다는 남성이 44.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5) 성구매 행위변화와 관련된 요인 분석

성인 남성의 성매매행위를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면 지금까지 성구매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이 53.2%를 차지한 반면 그 이후 성구매를 중단한 남성이 25.3%,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구매를 계속한 남성이 21.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요인으로는 성인 남성의 연령, 종교, 혼인상태, 직업, 성매매예방 홍보활동 접촉 및 그것의 느낌, 성매매방지법 지지여부, 성매매정책 평가, 그리고 성매매 유인 환경노출 등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성매매를 계속하는 남성 중에는 나이가 젊은 남성이, 종교가 없는 남성, 미혼상태의 남성, 기능생산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 성매매예방 홍보물을 보고 난 후 부정적 느낌을 받은 남성,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지 않은 남성, 성매매정책을 부정

적으로 평가한 남성, 그리고 성매매 유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부터 성매매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 중에는 나이가 많은 남성, 종교를 갖고 있는 남성, 기혼상태에 있는 남성, 성매매예방 홍보물을 보고 난 후 긍정적 느낌을 갖는 남성,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는 남성, 성매매방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남성, 성매매 유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없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7.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이해 분석

1) 성매매방지법의 인식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로서 주로 언론매체(65.0%)와 함께 일하는 친구나 동료(26.7%)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방지법을 알고 있는 여성은 81.6%로 매우 많았고, 이러한 결과는 성인 남성의 65.5%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며,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매매여성 가운데 성매매방지법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은 나이가 적거나 혹은 많은 여성이, 전문대학교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기혼이나 사별/이혼상태의 여성,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 안마시술소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2) 성매매 특별단속 인식

성매매여성의 경우 70.8%가 정부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알고 있어 성인 남성의 60% 수준에 비해 상당히 많았고, 반면에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은 10% 수준에 불과하였다.

정부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적거나 혹은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상태의 여성이, 그리고 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3) 성매매방지법 지지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매매방지법이나 성매매 특별단속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았다. 즉 성매매여성의 경우 64.2%가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거나 혹은 높은 여성이, 미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소득이 많은 여성이 그리고 성매매집결지를 비롯하여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4) 성노동자 요구 평가

성매매여성의 성노동자 요구에 대한 지지는 높은 편인데, 예를 들면 응답자의 60.0%가 성노동자 요구를 지지하였고, 반대하는 여성은 15.9%에 불과하였다. 성노동자 인정 요구를 지지하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기혼이나 사별 및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그리고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8. 성매매여성의 성매매방지법 내용과 효과 평가

1)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내용 이해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내용 가운데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과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받게 된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책임 내용을 성매매여성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성매매방지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여성은 69.8%로 많았고, 잘 모르는 여성은 17.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20대 초반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안마시술소를 비롯하여 노래방 및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많았다.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 또한 72.5%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잘 모르는 여성은 15.8%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매매방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여성은 53.3%를 차지한 반면 잘 모르는 여성은 40%로 다소 많은 편이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25-34세 연령의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과 기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안마시술소와 다방 그리고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여성이 63.3%를 차지하였지만 잘 모르는 여성은 28.3%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여성과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그리고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끝으로 성매매여성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대한 성매매방지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여성은 62.5%를 차지한 반면 잘 모르고 있는 여성은 16.7%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중에는 30대 초반과 20대 초반 여성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다방이나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2) 성매매방지법 효과 및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성매매방지법 효과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의 성매매 감소, 성매매 근절 가능성, 성매매업주 및 여성의 성매매정책에 대한 반대시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음성적 성매매 활성화 내용을 성매매여성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 성매매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한 여성이 58.4%로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17.7%보다 많았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사별이나 이혼상태에 있는 여성이, 안마시술소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여성이 84.2%로 근절될 것으로 믿는 여성 5.8%보다 15배 정도 많았다. 특히 성매매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적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안마시술소와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부의 성매매방지 정책에 반대하는 성매매여성 및 업주의 항의시위를 찬성하는 여성이 71.7%로 반대하는 여성 7.5%에 비해 9배 이상 많았으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비롯하여 안마시술소, 다방, 그리고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많았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동의하는 여성이 80.0%로 동의하지 않은 여성 5.0%에 비해 매우 많았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의 풍선효과에 동의하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9.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 분석

1)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정 분석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유입 시기 분석에 의하면, 평균 연령이 23.4세로 일부 여성(7.5%)을 제외하면, 대체로 20대 초반에 성매매에 진입하며, 일부 여성(12.5%)은 10대 후반에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성매매 종사 경력은 평균 3.9년으로 길지 않은데, 이런 결과는 ‘직업’으로서 성매매가 젊은 여성의 끊임없는 유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때문이다. 특히 이런 성향은 성매매집결지와 주점에서 높게 나타나며, 노래방의 경우는 경력이 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아 나이가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업소로 간주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이 현재 일하고 있는 업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약 14개월로서 역시 길지 않아 한 업소에서 길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의 업소 종사기간이 짧은 곳은 특히 성매매집결지와 다방으로 나타났으며,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2) 여성의 성매매 유입 원인 분석

여성의 성매매 유입 원인 분석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4.2%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33.4%는 가출하여 생계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친구를 따라 아르바이트 하다, 그리고 16.7%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지나친 소비 때문에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10.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가능성과 정부정책 평가

1) 성매매 중단 가능성 분석

현재 하고 있는 성매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23.3%에 불과한 반면 76.7%는 아직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중단 의사가 없는 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기혼상태의 여성이, 안마시술소를 비롯하여 주점이나 노래방,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매를 중단할 수 없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48.9%가 현재의 소득을 다른 곳에서 벌 수 없거나 혹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41.3%는 가족부양이나 가족 혹은 본인 부채를 갚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고, 9.8%는 기타 이유를 지적하였다.

현재의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일자리가 없어 성매매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이,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이, 가족생계 책임이 없는 여성이, 월평균 소득이 많은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족부양이나 부채를 갚기 위해서 현재의 성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 성매매집결지, 그리고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기혼이나 미혼여성이, 가족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중간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2) 향후 성매매 중단 계획 분석

향후 성매매 중단계획 분석에 의하면, 중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6개월 혹은 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여성은 24.2%인 반면 현재의 일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은 30.8%, 그리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일이 달성될 경우 중단하겠다는 여성이 45.0%를 차지하였다.

이들 여성 가운데 현재의 성매매를 계속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족생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 사별이나 이혼상태의 여성이, 월평균 소득이 많거나 혹은 아주 적은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1년 정도 하고 중단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미혼여성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른 한편,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실현되는 시점에 중단하겠다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족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기혼여성이, 소득이 약간 낮은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매매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소득 요구액은 평균 175만원으로 적지 않았으며, 특히 높은 소득을 요구하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낮은 소득액을 요구하는 여성 중에는 주점이나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족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그리고 현재 소득이 적은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3) 정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정책 평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여성은 30.0%로 나타난 반면 들어본 기억이 있는 여성이 35.0%, 그리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이 35.0%를 차지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는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프로그램을 들어 본 적이 있는 여성 중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그리고 잘 모르는 여성 중에는 안마시술소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성은 13.0%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성이 54.0%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성 중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많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성 중에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이, 그리고 독립적인 평가를 한 여성 중에는 주점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 2 절 지역사회자원 실태와 활용방안

본 연구는 지역사회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성매매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모색 차원에서 성인 남성과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의식과 행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유의미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의 성매매 의식개선을 위한 활동자원 및 잠재적 자원의 실태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1. 지역사회 행정조직 자원

1) 전라북도 여성가족과

한국사회 성매매의식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 부처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이 있다면 전라북도민의 성매매의식 개선과 예방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여성가족과 권익증진담당이다. 권익증진담당 공무원 수(4명)는 예전과 같이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성매매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12개 부처와 12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정책추진기획단’(2004. 3)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복지여성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 전라북도협의회는 성매매 문제를 비롯하여 여성폭력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로서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라북도교육청이 참여하며, 상담기관(9개소), 보호시설(3개소), 복지기관(1개소), 의료기관(1개소), 법률기관(3개소)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는 14개 부처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대책추진점검단을 최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여성가족과는 그와 유사한 혹은 다른 형태의 기구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주시 여성봉사과

전주시는 2004년 7월 중앙정부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을 근거로 전주시의 성매매 관련 정책과 집행기구로서 ‘전주시성매매방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전주시가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성매매방지협의회를 조직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 성매매집결지가 전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정부의 단계적 폐쇄조치 이행과 관련해서 성매매집결지 업주 및 여성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성매매방지협의회는 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개 부서의 국장과 보건소, 시의회, 전주경찰서(2개소), 전주교육청(1개소),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및 성매매 여성현장상담센터, 인권 및 교육기관,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조체제이다.

3) 전북지방경찰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나 구속을 집행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지방검찰 및 경찰이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경우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가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위반자를 단속하고 구속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실제 일선 경찰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업무를 지휘하는 상급기관으로서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과 관련 담당자가 있다.

4)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보호처분의 한 방편으로 성매매방지법 위반자, 즉 성구매 남성에게 기소유예 조건으로 존스쿨(John school)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존스쿨 제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시의 사업당국을 설득해 도입한 제도로써 성매수자 단속을 처벌위주에서 교육중심으로 전환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존스쿨 교육 프로그램은 성구매 초범에게 8시간 교육하며,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여성이나 혹은 그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종사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인권유린 사례 등의 고백을 통해 성구매자의 심경변화를 유도하기도 하며, 성구매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아직 교육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관계로 성구매 남성의 참여가 많지 않다. 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10월 성구매 행위로 적발돼 존스쿨 교육을 받은 사람이 9명에 불과하였고, 11월 이후 적발된 성구매 남성 42명을 대상으로 12월 13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5)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생활지도담당이 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일탈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인 학생지도 업무는 각 교육청과 학교의 학생생활담당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일부 성매매여성은 10대 후반에 성매매를 시작하였듯이 고등학생의 성매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그와 관련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지역사회 시민사회조직 자원

1)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2000년 9월과 2001년 1월에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성매매여성 인권 유린과 성착취문제를 해결할 목적에서 결성된 ‘군산화재대책위’ 활동을 시작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 내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여성의 구조·상담 및 지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상담센터와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성매매인권지원센터는 또한 자활지원팀과 법률지원단 및 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조사연구 활동, 홍보활동, 그리고 재정모금을 위한 활동도 전개하며, 피해여성을 위한 지역 연계망을 구축 연대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1) 성매매여성현장상담센터, '용감한 여성들'

성매매피해여성의 구조 및 상담, 지원활동과 성매매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화 및 면접상담, 인터넷 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구조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전북지역에 소재한 성매매업소집결지 방문하여 물품지원 및 생계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 지원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본 센터는 법률지원팀과 연계하여 진술서 작성이나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기타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활동가 조직과 성평등한 문화정착을 위해 남성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성매매 근절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교육활동으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현장방문 자원상담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식 교육 및 성매매근절을 위한 대중캠페인으로 STOP 성매매 남성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침과 매뉴얼 제작, 그리고 전라북도지역 성매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성매매여성쉼터, '민들레'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로서,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의료·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재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매매여성이 쉼터를 이용할 경우 무료숙식이 제공되고, 생계비가 지원되며, 필요한 의복 및 생활필수품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종합건강검진, 산부인과 진료 및 치료, 일반질병 발병 시 무료진료 및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서작성을 도와주거나 경찰조사 과정 및 재판과정에 지원센터 담당자들의 동행이 가능하고, 변호사 선임이나 기타 법률지원체계를 갖추고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심리적 안정과 정서지원을 위해 일대일의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및 취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창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본 쉼터는 성매매피해여성으로서 입소를 희망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본인 희망이나 현장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가 있을 경우 쉼터의 입소가 이루어진다. 쉼터는 일시보호시설로 6개월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1번의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006년 3월 1일부터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간 보호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거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3) 여성자활지원센터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이후 성매매과정에서 겪은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자활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서 조직된 자활지원체계이다. 본 센터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자활사업에 참여, 다양한 문화 및 취미 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검정고시 공부방을 개설하여 진학자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으며, 문화소모임을 통해 풍물, 미술, 공예, 염색, 영상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4)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센터, 두드림(Do-dream)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2005년 11월 18일 개소식을 갖고 탈성매매여성의 사회복지 지원을 돕는 터전으로서 부산, 인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이자 전북에서 첫 번째 센터이다.

본 센터는 6명의 상근인력이 배치되어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단계적 폐쇄조치에 맞춰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원체계로서 정기적인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여성들과 신뢰를 쌓고, 일시적 쉼터(drop-in-center) 제공, 의료·법률·직업훈련을 위한 지원, 생계비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2) 기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매매예방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없지만 전북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매우 다양하다. 2005년 12월 전라북도청에 등록된 단체 수가 372개에 이르며, 그 회원 수는 약 4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성사회단체의 경우도 2005년 3월 현재 202개 단체에 약 44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이들 양가간의 단체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전체 합과 회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충분히 많은 단체와 회원들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여성단체의 경우 직접 간접적으로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와 관련을 맺고 있고, 성매매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와 관련된 일부 여성단체를 제외하면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은 성매매예방활동에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핵심 요소는 물론 전문성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단체는 자신의 전문영역과 관련된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매매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경우 함께 동참하고 예방과 근절(축소)에 필요한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예방 및 홍보활동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 3 절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이상에서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성매매의식이나 행위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고,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실태와 탈성매매 가능성을 표본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가 암시하는 메시지는 성인 남성의 성매매의식이나 행위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여성의 경우에 성매매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앞으로 어떤 해법을 갖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가지 측면에서 성인 남성의 성매매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1.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통한 성매매 홍보활동 강화

1) 여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여성가족부의 범정부적 차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12개 부처의 차관 및 국장이 참여하고 12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내에서 성매매 문제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협의회 구성이 있어 관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관보다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회가 계속해서 존속한다면 무엇보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새롭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즉 전라북도의 경우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하여 유관 국장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성매매방지 업무가 여성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정업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회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다는 기획혁신전략본부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전라북도협회의 경우 성매매방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

하여 성폭력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성매매방지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방지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현재 협의회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경우 지금보다 협의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거나 혹은 협의회 내에 성매매방지점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성매매방지 및 예방활동을 점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전북지역 사회지도자의 성매매근절 운동 접화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리사회 성매매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성매매방지법이 정착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성매매단속이 성매매집결지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그 단속마저 느슨해지면서 성매매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집결지 뿐만 아니라 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여성부가 발표한 기업의 접대문화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접대 이후 성구매나 퇴폐업소로 이어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 성매매방지 및 근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그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출발이 지역사회 지도자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정치-경제-사회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성매매근절’ 선포식과 함께 지속적인 운동에 힘을 실어 준다면 사회전역에 거쳐 그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각 기관이 참여하는 ‘수요회’가 구성되어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어 이 기회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모임에서나 혹은 모임 이후 별도로 성매매근절 선포식을 갖고 행동지침을 작성하여 사회지도자가 먼저 실천하고 그 행동지침이 각 기관에 전달되어 그 구성원이 실천에 옮기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정치지도자 혹은 다른 사회지도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홍보활동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최소 4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그 활동 영역 또한 매우 다양하다.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가 하나의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표가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성매매근절과 같은 문제는 공통의 목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는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근절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전라북도는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예방 홍보활동에 ‘릴레이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혹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성매매방지 홍보용(차량용) 스티커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에서 성매매근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성매매근절 홍보용 차량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지도자들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에게 일차적으로 배포하고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우리사회의 성매매는 일회성의 홍보활동이나 단속으로 근절될 수 없는 매우 뿌리 깊은 관습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일시에 해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선도 등 일련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정부의 정책노선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성매매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 성매매근절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 강화

1) 학교와 직장에서 성매매예방 교육 강화

성매매여성 가운데 일부는 청소년기에 유입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청소년 또한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고 성매매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특별 강좌를 마련하여 홍보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매매근절을 위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이 직장에 도입되어 정착되는 효과를 거두었듯이 성매매근절 교육 또한 직장에 도입되어 성매매에 따른 유해성과 피해 등을 홍보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언론매체를 통한 성매매방지법 홍보활동 강화

아직도 성매매방지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이 40% 수준이며, 더욱이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은 남성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것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성공적이라고 믿는 남성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남성이 40-50% 수준으로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를 계속한 남성 중에는 정부의 성매매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남성과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하지 않은 남성, 성매매방지법 홍보물을 보고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다는 남성이, 그리고 성매매 유인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갖고 있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경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취지가 아직도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인 남성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홍보나 설득논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성매매에 따른 유해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매매의식과 관련해서 지난 1년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여성의 자발성과 업무에 따른

불가피성, 그리고 성매매의 용이성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남성이 동의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논리개발과 그것의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성매매방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입찰 제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매매가 업무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남성이 부정하는 남성보다 많으며, 그리고 성구매 원인분석에서도 회식이나 친구 등과의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성구매를 한 남성이 60-7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최근 기업의 접대문화를 조사한 여성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의 접대 혹은 회식 이후 성구매 혹은 퇴폐업소로 이어지는 기존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아직도 그러한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5). 기업의 성매매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매방지법 위반 기업에 대해 정부의 물품구입이나 각종 사업에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구성원 가운데 일정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 의해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그 기업은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물품 구입에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4)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병행

성매매근절을 위한 대안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강화를 지적한 남성이 60-70% 수준으로 매우 많았다. 성매매방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남성 또한 성구매 경험이 없는 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구매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한 남성도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성매매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처벌 강화와 더불어 성매매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 또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성을 구매하다가 처음 적발된 남성에게 기소유예 대신 재범방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존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존스쿨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확보와 함께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여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순 성구

매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심화교육을 통해 상습적인 성매매구자가 되지 않도록 훈육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과 성노예화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즉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까지 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통해 성매매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과 착취문제를 묵인하거나 혹은 조장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성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4년 성매매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분명 우리사회에 성매매업소 및 여성의 감소,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공개적인 성매매의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음성적인 성매매 확산과 그에 따른 성매매 규모 파악 어려움, 성매매업소 및 종사여성의 저항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 함께 남기고 있다.

1)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유예조치 검토 필요성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단속이 끝난 2004년 11월 이후 성매매집결지를 중심으로 사회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되살아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여성의 저항이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정부의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가 다시금 불을 밝히고 영업을 재개하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매매집결지의 폐쇄 혹은 정비를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정부와 성매매집결지 업주/여성 사이에 물리적 충돌과 갈등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성매매집결지에서 성구매가 불법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집결지 업주/여성과의 협의를 거쳐 성매매집결지 정비 일정을 마련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성매매여성의 건강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사업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성구매가 불법화되면서 성매매여성의 건강도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되어 성매매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더욱이 성매매여성의 건강검진도 없어지면서 제도권의 성매매여성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감독 감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성매매여성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성을 구매한 남성의 건강문제와도 연결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여성의 경우 건강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여성부의 탈성매매여성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비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현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탈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탈성매매여성의 안정적 정착 수단으로서 그룹홈 제공

지자체는 여성부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탈성매매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 및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으로서 그룹홈(group home) 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탈성매매여성의 경우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이 된 경우 일정기간 사용료를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탈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고혜성,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001)
- 김은경,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현황 및 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 _____,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토론문』, 한국여성개발원 25차 여성정책포럼(2004)
- 김효선, 「회사원 생활을 통해서 본 한국남성의 적응과 소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7)
- 박 민, “성매매방지법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보고서”, 성매매방지법 조지정착을 위한 전북시민연합, 『성매매방지법 조지정착을 위한 긴급토론회』(2004)
- 박영란·윤덕경·황정임·이찬진,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 제도개선방안 연구』, 여성부(2004)
- 변화순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 여성부, 『성매매 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2004)
- 변화순 “남성의 사회적 연결망,”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7)
-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8)
- 변화순·백경진·이채금·임미영·전남숙·정제유,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모형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2004)
- 변화순·황정임·허나운·최은영,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성부(2002)
- 송경숙, “성매매방지법시행 이후 제기되는 현장의 문제점”, .성매매방지법 조지정착을 위한전북시민연합, 『성매매방지법 조지정착을 위한 긴급토론회』(2004)
- 윤덕경, “성매매처벌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5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2005)
- 여성부, “기획특집|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③ 성매매방지법 주요내용.” 『여성과 정책』(2004 봄호)
- _____, “성매매방지법 여론조사 결과(2004. 12)
- _____, 보도자료(2005.6.27)
- _____, 브리핑 자료(2005.12.14)

- 이근식, “음란퇴폐문화의 경제적 영향,” 『언론과 비평』(1989 8월호)
- 이기숙, “성포력과 성매매의 사회적 과장”,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자료집(2005)
- 이영자, “자본주의와 성(Sexuality), 『여성연구』, 제9권(1991, 2호)
- 장필화·조형.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8집 (1991)
- 조국 편,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 : 사람과 생각(2004)
- 조아미·이명화, “성매매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1)
- 조진경,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토론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25차여성정책포럼(2005)
- 정경숙,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한국여성개발원 25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2005)
- 전북성매매여성인권센터, 『전북성매매실태조사자료집』 (2002)
- 전북여성단체연합, 『성매매에 대한 남성의식 조사자료』 (2002)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
- 한국여성민우회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실효성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진단! 윤락행위 등 방지법 자료집』 (1996)
- 한상희,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자료집(2005)
- 황정임, “성매매 경험있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대책현황과 과제”,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원조교제의 실상과 예방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1)
- 현대사회연구소, 『퇴폐 윤락문제 대책 방안 연구』 (1984)
- 황필호, “현대사양철학에서의 성,” 『한국여성학』, 제5집 (1989)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07196호)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212호).
- Barry, K.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 New York Univ. Press(1995).
- Devlin, Partick, *The enforcement of Morals*, (1965).
- Durkheim, E. *Suicide, A Study of Sociology*, New York: Free Press(1951)
- Malinowski, B.. (1932). *The Sexual Life of Savage in North-western Melanesia*, Routeledge and Kegan Paul, London.
- Millett, K, *Sexual Politics*, London : Hart-Davis(1951)
- Truong, Thanh-Dam,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in Southeast Asia*, London: Zed Books Ltd.(1990)

<http://www.kwdi.re.kr>

<http://www.moge.go.kr>

전발연 2005-R-18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연구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
지

전화:(063)286-9201 팩스:(063)286-9206

<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